

2020년도
**중견기업
지원사업
가이드북**

이 책자는 2020년 4월 기준 중견기업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운영기관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3조(전문기관)

2020년도
**중견기업
지원사업
가이드북**

Contents

I. 중견기업 정의

1. 중견기업	4
2. 특례대상 중견기업	5
3. 중견기업 후보기업	5
4. 중소기업 유예기간	8
5. 중소기업의 경과조치	8
6.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	9
7. 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보호대상 중견기업)	9
8.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11
9.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12

II. 중견기업 현황

1. '19년 중견기업 통계 ('18년 결산기준)	15
2. '19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18년 결산기준)	20

III. 중견기업 지원사업

1. 코로나19 특별지원('20. 10. 8. 최신화)	25
1) 금융분야	27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 지원	27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27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	28

자동차부품기업 해외법인 자금지원	28
주력산업 등 유동화회사보증(P-CBO)	29
코로나19 대응 유동화회사보증(P-CBO)	29
회사채·기업어음(CP) 등 차환발행 지원	30
자동차부품기업 상생특별보증	31
대출 만기연장 지원	31
기업 설비투자 지원	32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33
2) 고용분야	35
코로나19 환자 및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35
고용유지지원금	36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	37
가족돌봄휴가비 긴급지원	38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39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지원	40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41
3) 수출분야	42
기업인 출입국 지원	42
코로나19 대응 화상상담	43
산업별 온라인 상품관 신설	44
긴급지사화서비스	45
단기수출보험 한도 무감액	46
해외법인 운전자금 보증	46
선적전 보증 만기연장	47
보험·보증료 50% 할인	48
긴급 수출안정자금	49

Contents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50
매출채권 조기현금화	51
中企 신용조사 무료제공	52
특례인수위원회를 통한 특별지원	53
4) 기타분야	54
국세 및 지방세 세무행정 지원	54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지원	55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유권해석	56
2. 일반지원	57
1) 금융분야	59
KDB Global Challengers 200	59
KDB 경영·재무전략 컨설팅	60
KDB 동반성장대출	61
KDB 온렌딩대출	62
KDB 정책성 특별자금	64
KDB-CIB 융합 프로그램	66
IBK 강소기업대출	67
IBK 동반성장협력대출	68
IBK 산업구조고도화지원 설비투자펀드	69
IBK 시설투자대출	70
IBK 신재생에너지 상생보증부대출	71
IBK 토지분양협약대출	72
IBK 환경안전 설비투자펀드	73
KE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자금대출)	74
KE 상생금융 프로그램(해외 파트너십)	75
KE 수입금융(수입자금)	76

KE 수출금융(수출성장자금)	77
KE 수출금융(수출촉진자금)	78
KE 해외사업자금대출	79
KE 해외투자자금대출	80
KE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81
KE 환위험관리 지원 프로그램	82
KE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83
우리 중견기업 금융지원 및 특화서비스	85
M&A 보증	87
매출채권보험	89
시설자금보증	91
유동화회사보증	92
이행보증	94
기술보증	96
혁신성장산업 지원	98
담보부사채 발행지원	100
2) 고용분야	101
중견기업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	101
병역지정업체(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인원배정	102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	104
내일채움공제	105
청년내일채움공제	106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108
근로자 휴가지원	109
일학습병행	111
고용안정장려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	114
고용안정장려금(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	116

Contents

고용안정장려금(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117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	118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120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122
고용창출장려금(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124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 적합직무)	125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126
고용창출장려금(청년 추가고용)	128
장년고용안정지원금(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130
일자리창출기업 우대지원	131
제조기업 디자인 인력지원	133
중소·중견기업 계약학과	135
3) 수출분야	136
중소·중견 Plus+보험	136
KOTRA 아카데미 교육·연수	138
글로벌 파트너링(Global Partnering) 지원	140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141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142
서비스기업 거점지원 서비스	143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144
신규 수출기업화 지원	145
한국우수상품전	146
해외IT지원센터	147
해외물류지원(공동물류)	148
해외지사화	150
글로벌 역량 진단(GCL Test)	152
해외비즈니스 출장 지원	153

해외시장조사	154
해외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	155
글로벌 M&A 진출 지원	156
YES FTA 컨설팅	157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159
OK FTA 현장방문 컨설팅 지원	161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전략 지원	163
중국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	164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166
의료 수출전문 기업육성	168
해외건설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	169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	171
4) 기술혁신분야	173
온라인 기술문제 해결 플랫폼(K-TechNavi)	173
소재부품 글로벌투자연계 기술개발	175
수출연계형 자동차부품 기술개발	177
월드클래스300프로젝트기술개발(R&D)	180
중견기업 상생혁신 R&D	183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	185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	187
기술 분쟁 조정·중재	190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운영	192
기술보호 상담·자문	193
기술상용화지원	194
기술지킴서비스	196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197
스마트 마이스터	199

Contents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지원	200
중소·중견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	202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203
표준특허 창출지원	205
방산 중소·중견기업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207
5) 기타분야	209
중견기업 확인제도	209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211
중견기업 사업전환 지원	213
중견기업 특허 출원료 등의 감면제도	215
우수조달제품 지정제도	216
그린크레디트	218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지원	219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220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	221
온실가스 감축 정책지원	222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223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제도	224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226

IV. 중견기업 지원사업 관련기관

1. 산업통상자원부	229
2. 중견기업 전문기관	229



2020년도
중견기업 지원사업 가이드북

I

중견기업 정의

중소·중견·대기업 비교(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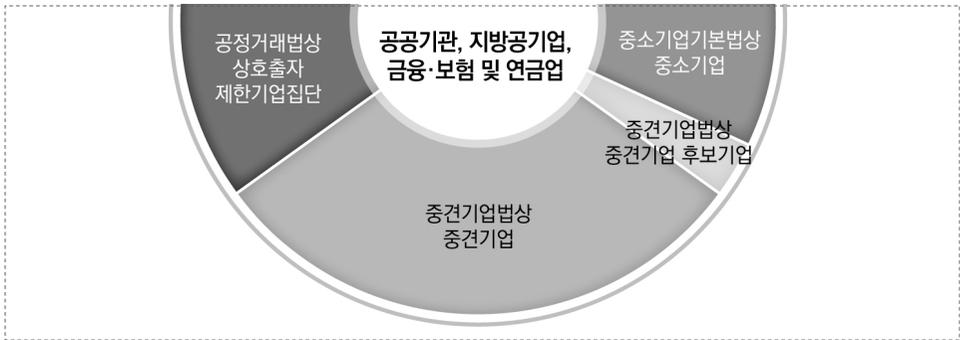
2020. 4. 1. 기준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규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매출액등이 주된 업종별 규모기준 이하 AND • 자산총액 5천원억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매출액등이 주된 업종별 규모기준 초과 (금융 및 보험업 제외) OR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독립성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닐 것 ('20. 6. 11.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닐 것으로 확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닐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OR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이 아닐 것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이 아닐 것 (지배기업으로 외국법인, 비영리법인 포함)	
	관계기업 합산 평균매출액등이 주된 업종별 규모기준 이하일 것	관계기업 합산 평균매출액등이 주된 업종별 규모기준 초과일 것	
확인방법	중소기업 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	편입 및 제외(공문)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중견기업 정보마당 (www.mme.or.kr)	기업집단포털 (www.egroup.go.kr)
담당 및 문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www.mss.go.kr - 지방청)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www.ftc.go.kr)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통계분석과 (www.mss.go.kr)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www.motie.go.kr)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알기 쉽게 요약하여 작성하였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중견기업 정보마당(www.mme.or.kr)에서 확인 가능함

1. 중견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아니면서, 그 밖에 자본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의미하며, 아래 ‘중견기업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을 말함



〈중견기업 제외대상〉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있는 기업 포함)
 -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⑤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⑥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⑦ 기업 또는 법인(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외국법인 포함)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3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 ⑧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코드 84에 해당하는 기업(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 ※ 단,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견기업 제외대상>이 아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주주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최대출자자인 기업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 최대출자자인 기업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중견기업 정보마당, www.mme.or.kr)받을 수 있음

2. 특례대상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한하여 인정되는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게 함

〈특례대상 중견기업 요건〉

- ①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일 것
-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일 것
- ※ 단, 특례별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상이하므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9조의8을 확인하기 바람

- 특례대상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중견기업 정보마당, www.mme.or.kr)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시 특례대상 확인여부에 ‘예’를 선택하여 신청하기 바람
- 이미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중견기업 정보마당 담당자’에게 특례대상 확인여부 추가를 유선으로 문의하기 바람

3. 중견기업 후보기업

-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을 의미하며, 아래 조건 중 ①&② 또는 ①&③&④ 또는 ①&③&⑤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함

〈중견기업 후보기업 조건〉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일 것
-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던 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③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
- ④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에 관하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값이 100분의 15 이상인 기업
- ⑤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

- 중견기업 후보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받아야 함

[참고]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 주된 업종별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중견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중견기업 후보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초과	매출액 1,000억원 이상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초과	매출액 700억원 이상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초과	매출액 550억원 이상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중견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중견기업 후보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초과	매출액 550억원 이상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초과	매출액 400억원 이상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초과	매출액 300억원 이상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 비교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초과로 한다.

※ 출처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주된 업종별 매출액의 규모 기준 (제2조제4항제2호 관련)

4. 중소기업 유예기간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통계분석과)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업종 변경, 중소기업 간의 합병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지원혜택의 중단에 따른 경영전략 수립 등의 준비기간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을 부여함

〈중소기업 유예기간 제외사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주어지지 않으며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남은 유예기간이 소멸됨

- 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②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유예 등)'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③ 중소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속하는 경우
- ④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유예 등)이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최종 검토 및 판단하여 부여되고 있는 사항임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발급받아야 함

5. 중소기업의 경과조치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통계분석과)

- 종전의 규정으로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규모 등의 변화가 없음에도 개정된 규정의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법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중소기업의 지위를 인정하는 경과규정을 적용함

(경과조치 사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5302호, 2014. 4. 1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15. 1. 1.)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이 영 시행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시행하며, 이 영 시행 전에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었거나 그 기간에 있는 기업이 이 영 시행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에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횟수에 관계없이 이 영 시행 후 1회에 한정하여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음

6.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중견기업 진입 1~3년차)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함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특례 요건〉

-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연도까지 연속하여 3년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을 것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 미만일 것

-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로 문의하기 바람

7. 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보호대상 중견기업)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중견기업으로 **주된 업종별 연간 매출액이 동법 시행령 제7조의4에서 정하는 금액(제1호의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미만인 중견기업**을 말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의 제1항~제10항까지의 규정은 주된 업종별 연간매출액 기준을 충족한 중견기업이 아래 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함
 -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견기업**은 제13조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 제21조, 제23조제2항, 제24조의4제1항, 제25조의2, 제33조를 적용할 때에는 **수급사업자로 봄**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원사업자) 요건〉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② ‘①’에 따른 회사가 아닌 사업자로서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

*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원사업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될 예정

- 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중견기업 정보마당, www.mme.or.kr) 받을 수 있으나, 동 확인서 내 ‘주된 업종별 연간매출액 충족여부’는 명시되지 않으므로, 관련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기 바람

[참고] 수급사업자로 보는 중견기업(보호대상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별 연간매출액 기준

제조등의 위탁을 받는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연간매출액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3,000억원 미만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2,000억원 미만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제조등의 위탁을 받는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연간매출액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1,200억원 미만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800억원 미만
39.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0. 교육 서비스업	P	

※ 비교

- 해당 중견기업의 주된 업종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다.
- 해당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으로 한다.
- 제1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중견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중견기업의 연간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 출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주된 업종별 연간매출액(제7조의4 관련)

8.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법인세제과 등)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직전 3개사업연도 평균매출액 3천억~5천억원 미만, 업종 제한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의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조세특례마다 자격요건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관련 법령을 확인 또는 관할 기관에 문의바람

* 조세특례 :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등의 중과세(重課稅)

- 「조세특례제한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중견기업' 범위를 규정할 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준용하고 있음
 - 따라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조세특례를 받지 못할 수 있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는 매년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알기쉬운 중견기업 조세제도' 책자를 발간하고 있으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www.fomek.or.kr) 또는 중견기업 정보마당(www.mm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9.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고용정책총괄과 등)

- 「고용보험법」에서는 산업 분류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 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는 기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기준을 초과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인정함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제외함
-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참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 [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 및 창고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200명 이하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비교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문의 : 각 정의별 소관부처 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업2팀(02-3275-2994)

2020년도
중견기업 지원사업 가이드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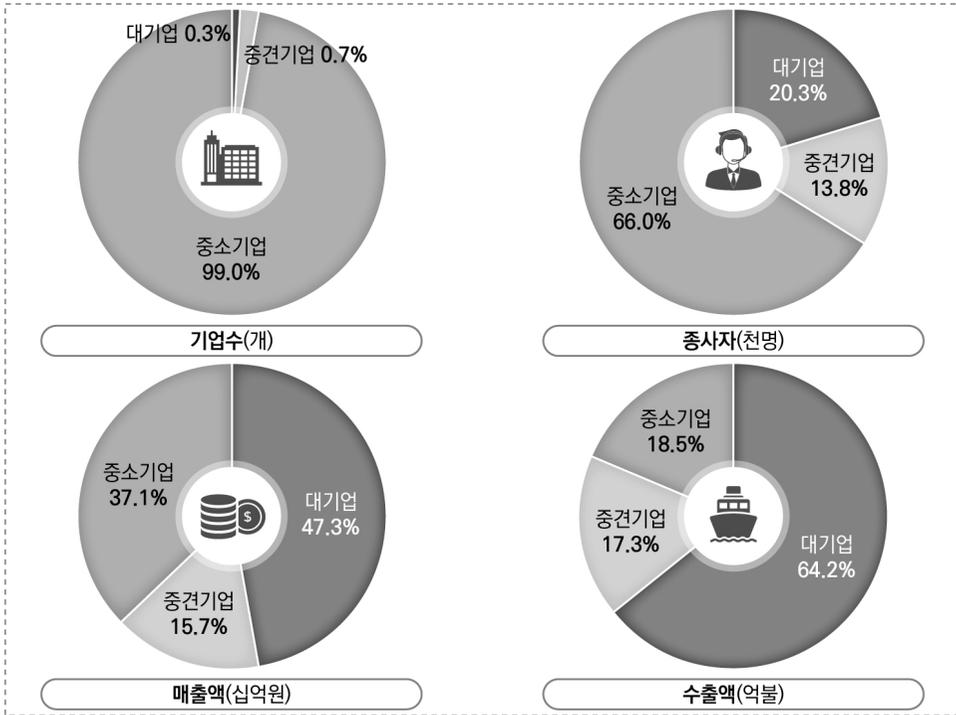
II

중견기업 현황

◆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중견기업 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및 중견기업 정보마당(www.mme.or.kr)에서 확인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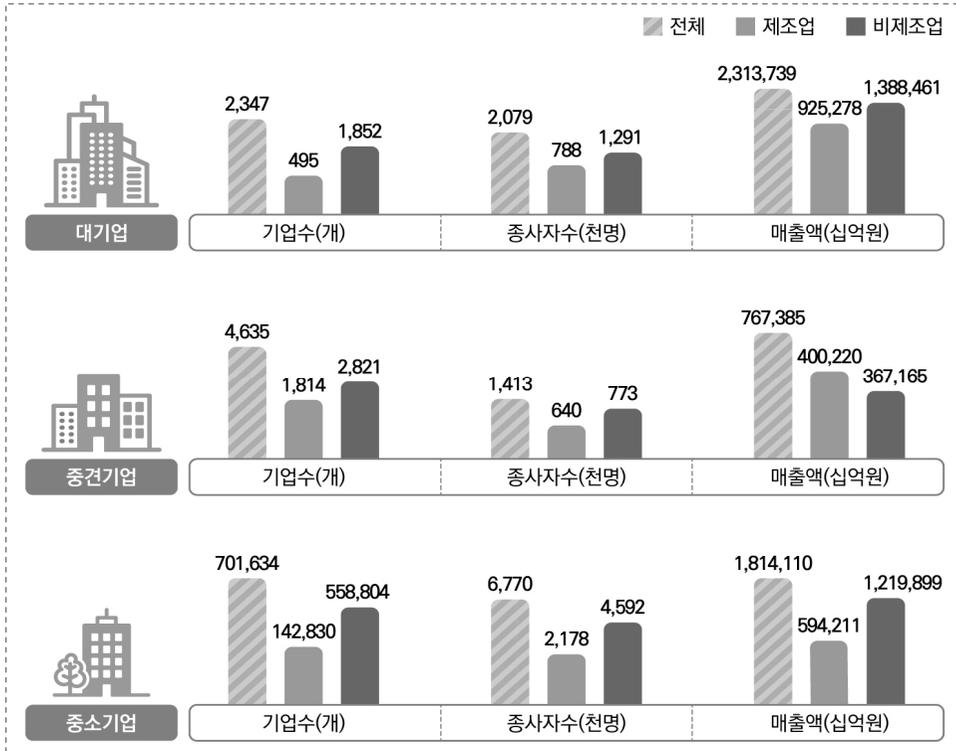
1. '19년 중견기업 통계 ('18년 결산기준)

● 기업규모별 주요 항목 현황



기업규모	기업수(개)	종사자(천명)	매출액(십억원)	수출액(억불)
전체 (구성비,%)	708,616	10,262	4,895,234	5,413
	100	100	100	100
대기업	2,347	2,079	2,313,739	3,476
	0.3	20.3	47.3	64.2
중견기업	4,635	1,413	767,385	937
	0.7	13.8	15.7	17.3
중소기업	701,634	6,770	1,814,110	1,000
	99	66	37.1	18.5

● 기업규모별·산업별 주요 항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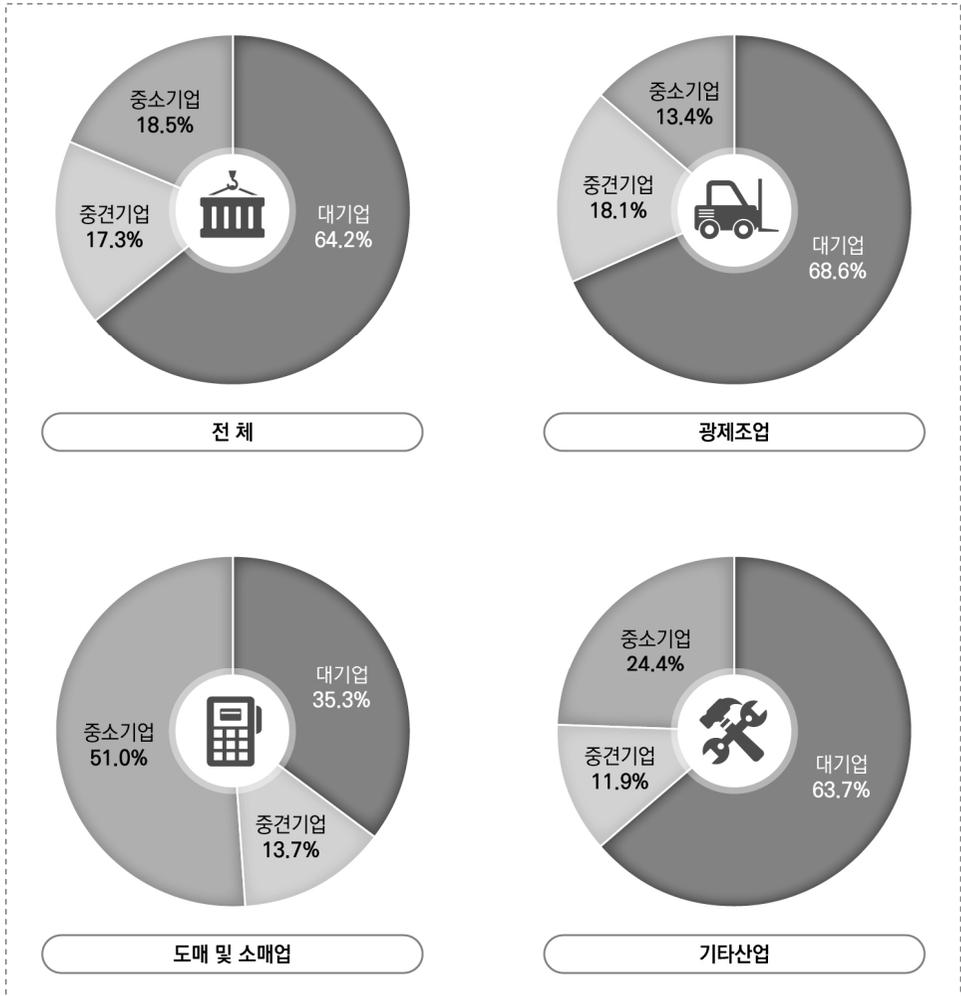


산업	기업규모	'18년 결산 기준		
		기업 수(개)	종사자 수(천명)	매출액(십억원)
전체	합계	708,616	10,262	4,895,235
	대기업	2,347	2,079	2,313,739
	중견기업	4,635	1,413	767,385
	중소기업	701,634	6,770	1,814,110
제조업	대기업	495	788	925,278
	중견기업	1,814	640	400,220
	중소기업	142,830	2,178	594,211
비제조업	대기업	1,852	1,291	1,388,461
	중견기업	2,821	773	367,165
	중소기업	558,804	4,592	1,219,899
농림어업	대기업	18	1	485
	중견기업	43	2	989
	중소기업	11,707	34	8,324
광업	대기업	3	3	717
	중견기업	9	1	211
	중소기업	943	9	2,499

산업	기업규모	'18년 결산 기준		
		기업 수(개)	종사자 수(천명)	매출액(십억원)
전기가스업	대기업	80	62	138,168
	중견기업	63	6	15,983
	중소기업	6,897	8	4,239
건설업	대기업	80	100	98,275
	중견기업	304	67	69,887
	중소기업	99,574	759	257,167
도소매업	대기업	362	252	237,825
	중견기업	700	150	145,517
	중소기업	171,719	954	542,890
운수업	대기업	121	129	77,871
	중견기업	238	57	35,563
	중소기업	27,144	437	69,838
숙박음식업	대기업	42	102	21,798
	중견기업	101	59	7,679
	중소기업	11,626	135	15,320
정보통신업	대기업	186	134	78,450
	중견기업	381	105	34,342
	중소기업	42,612	377	58,226
금융보험업	대기업	553	311	660,161
	중견기업	46	5	3,068
	중소기업	17,870	49	21,768
부동산업	대기업	140	30	33,522
	중견기업	358	34	25,113
	중소기업	52,826	206	90,778
전문과학기술업	대기업	113	26	12,804
	중견기업	190	53	9,432
	중소기업	54,577	475	58,108
사업서비스업	대기업	86	109	11,391
	중견기업	211	204	12,062
	중소기업	34,501	893	51,559
기타*	대기업	68	33	16,995
	중견기업	177	28	7,319
	중소기업	26,808	257	39,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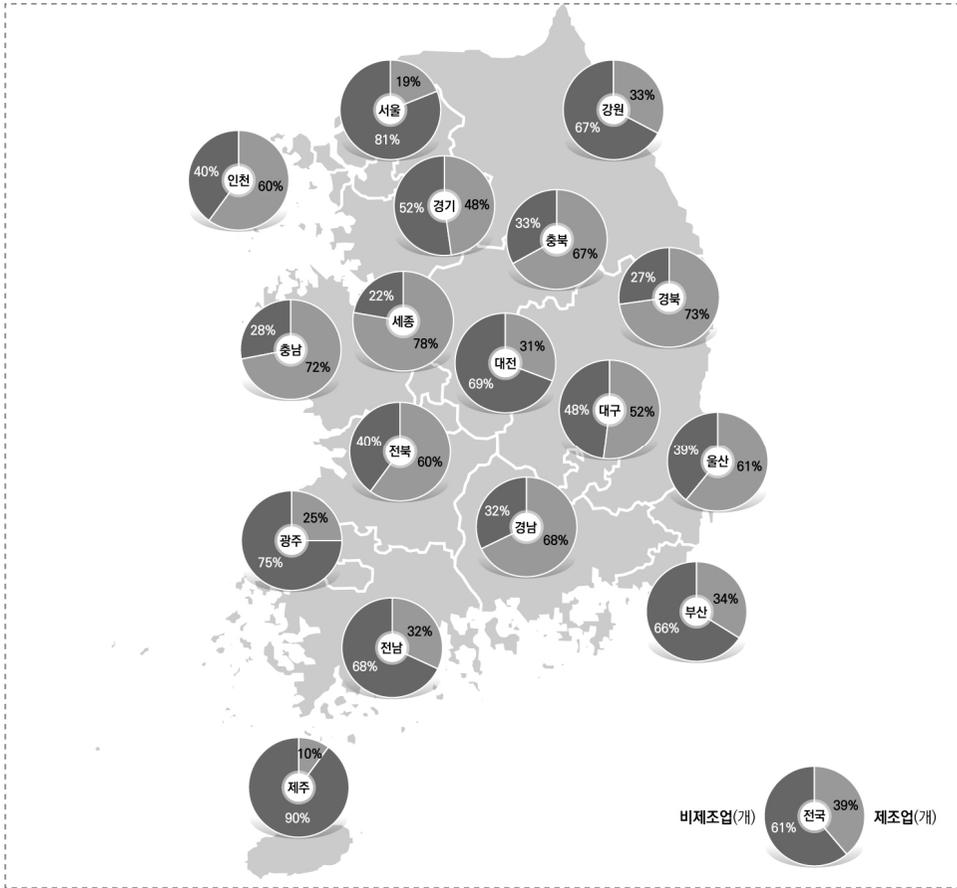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E, P, Q, R, S 산업

● 기업규모별·산업별 수출 현황



구분		전체	광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기타산업
수출액 (억불, %)	전체	5,413	4,542	677	193
	(구성비)	100	100	100	100
	대기업	3,476	3,114	239	123
		64.2	68.6	35.3	63.7
	중견기업	937	820	93	23
		17.3	18.1	13.7	11.9
	중소기업	1000	608	345	47
		18.5	13.4	51.0	24.4

● 지역별 중견기업 현황



(단위 : 개)

구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제조업	23	468	160	132	32	58	23	93	335
비제조업	47	511	75	48	96	53	52	177	1,431
합계	70	979	235	180	128	111	75	270	1,766
구분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전국
제조업	14	46	101	29	48	3	141	108	1,814
비제조업	4	29	68	63	32	26	56	53	2,821
합계	18	75	169	92	80	29	197	161	4,635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7) 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업2팀(02-3275-2103)

2. '19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18년 결산기준)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17년 결산기준) 국내 중견기업 4,468개사 대상
- 기준시점 : '18년 12월 말 (* '18년 1월~12월 말일까지의 기업 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
- 조사기간 : '19년 7월 18일 ~ 10월 4일 (52일간)
- 조사방법 : 면접, 전화, 팩스, 이메일 조사 병행 (표본조사)
- 조사문항 : 총 9개 부문 78개 문항*으로 구성
 - * 기업일반현황(10문항), 중견기업 진입 및 성장(9문항), 기술혁신(14문항), 투자현황(3문항), 금융 및 자금조달(6문항), 인재 확보(11문항), 국제화 촉진(14문항), 수위탁거래 및 동반성장(6문항), 기업의 사회적 책임(5문항)
- 유효표본 : 총 1,400개사
- 작성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문항별 조사결과 분석

① 투자

- **(실적)** '18년 투자는 **32.2조원으로 전년대비 3.2조원(10.8%) 증가**
 - 분야별로 연구개발투자는 8.0조원으로 전년대비 0.8조원 증가, 설비 투자는 24.2조원으로 전년대비 2.4조원 증가하였음
- **(계획)**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8.0조('18), 8.4조('19^o), 8.7조('20^o))**
 - 전체 투자계획 금액 중 연구개발투자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24.9%('18), 26.0%('19^o), 27.0%('20^o))

② 수출

- **(수출여부)** 제조 중견기업 중 '18년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의 비율은 **68.8%**로 전년대비 **3.7%p 증가**
 - 비제조업 포함 전체 중견기업 중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의 비율은 36.2%로 전년대비 3.6%p 증가
- **(수출국)** 중견기업이 수출하는 국가는 **중국(56.5%), 미국(39.2%), 일본(33.1%), 베트남(24.0%), 인도(12.9%)** 순으로 응답함
 - '18년에 신규로 수출을 시작했다고 응답한 국가는 중국(13.0%), 베트남(12.6%), 멕시코(9.6%), 인도네시아(8.8%), 러시아(8.7%) 순

③ 기술혁신

- **(주력기술)** 해당 분야 세계 최고수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5.8%**로 매년 증가 중
 - 세계 최고수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은 1.3%('15), 2.5%('16), 3.3%('17), 5.8%('18)로 증가 추세
- **(지적재산권)**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년대비 **7.8%p** 증가한 **50.5%**
 - 평균적으로 비제조기업(20.2건)에 비해 제조기업(91.6건)이, 내수기업(19.8건)에 비해 수출기업(98.0건)이 월등한 것으로 조사됨
- **(산학협력)** '18년에 대학, 연구소 등과 산학협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년대비 **3.5%p** 증가한 **15.9%**
 - 참여한 활동은 연구·기술개발(71.6%), 교육훈련(26.2%), 인적교류 및 정보교환(18.6%) 순
- **(신사업)** 중견기업의 **17.4%**가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비제조업(11.5%)보다 **제조업(26.6%)**, 내수기업(10.6%)보다 **수출기업(29.4%)**이 **신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것으로** 파악됨

④ 인력

- **(채용실적)** '18년 중견기업 채용인원은 **18만 392명으로** 조사됨
 - 청년(만 15~34세) 채용인원이 11.2만명으로 62.5%를 차지함
- **(직무별 분포)** 전체 종사자 중 생산직 비중이 44.8%로 가장 높음
 - 생산직(44.8%), 사무관리직(24.7%), 영업직(11.2%), 연구개발직(5.4%) 순
- **(대졸 신입사원 연봉)** 전년대비 **135만원** 증가한 **3,282만원**
 - 비제조업(3188.2만원)보다 **제조업(3427.6만원)**이, 내수기업(3173.8만원)보다 **수출기업(3471.6만원)이 높음**

⑤ 기타

- **(가업승계)** 가업승계 기업이라고 응답한 중견기업은 **6.7%**
 - 10.3%는 가업승계 예정, 82.9%는 가업승계계획이 없다고 응답함
- **(수탁기업과 동반성장)** 수탁기업과 동반성장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위탁 중견기업은 **65.5%**로 전년 대비 **6.1%p** 증가
 - 활동 내용은 협력계획 및 매뉴얼 수립(38.8%), 직원교육 및 교류(36.1%), 전담조직 구성 및 대응(31.1%) 순
- **(회귀검토경험)**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검토한 중견기업은 **5.1%**
 - 회귀요인은 조세혜택(62.2%), 금융지원(15.8%), 판로규제(13.4%) 순

[참고] 간략하게 알아보는 '19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 간략하게 알아보는 '19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

중견기업의 투자실적은 얼마나 될까요?

평균 127.0억원



2018년 전체 R&D 투자금액
8조 422억원
2018년 전체 설비 투자금액
24조 2,368억원

평균 37.2억원



비제조업

약 3.4배



제조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견기업에 종사하고 있을까요?



비제조업이 제조업보다 약 1.2배
종사자 수가 많네



직무별 인력 분포



* 참고_2017년 영리법인 행정 통계 기준
제조업: 82만 9천명, 비제조업 72만 9천명

중견기업의 채용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2018년 전체 채용인원
180,392명

2018년 평균 채용인원
40.4명

25.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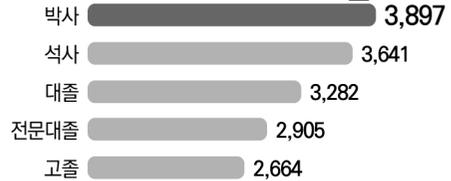
남자

15.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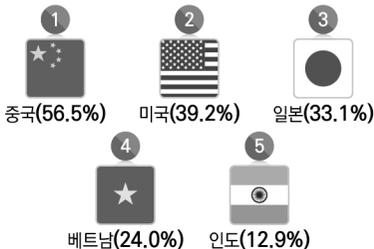
여자

학력별 신입사원 임금 초입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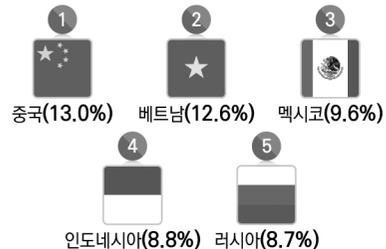


중견기업의 수출지역은 어디일까요?

2018년 주요 수출 국가 Top5



2018년 신규 수출 국가 Top5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7) 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업2팀(02-3275-2103)

2020년도
중견기업 지원사업 가이드북

III

중견기업 지원사업

2020년도 중견기업 지원사업 가이드북

코로나19 특별지원

(20. 10. 8. 최신화)



한국산업은행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 지원

- **(지원대상)** 코로나19 등 질병, 자연재해 등 국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 기업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도 포함)
- **(자금용도)** 운영자금
- **(한도)** 기존 대출한도 외 일정범위내 특별한도 부여 (중견 최대 500억원, 중소 최대 250억원)
※ 특별한도 : 매출액 등에 따른 기존 운영자금 대출한도 외 추가한도 부여
※ 기한 전 상환 수수료 면제
- **(우대조건)** 최대 0.90%p 금리 우대, 심사절차 간소화 등
- **(자금 지원기간)** 3년 이내
- **(문의)** 한국산업은행 전국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1500)

한국산업은행 등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 **(지원대상)** 기간산업안정자금 지원대상 업종(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항공제조, 정유, 석유화학) 내 협력업체로, 원청기업·관계부처가 선정한 중견·중소기업
※ 원청기업 및 기존 거래은행에 지원대상 선정여부 확인, 복수은행을 통한 대출 불가
- **(자금용도)** 운영자금 (기존 대출 상환 용도로 활용 불가)
- **(한도)** 기존 대출한도 외 추가로 한도를 부여 / 은행별 한도 소진 기업도 이용가능
※ 다만, 금융부채 연체, 세금체납 등 코로나19 이전부터 부실화된 기업은 제외

[예시] 코로나19 이전부터 구조적 취약 요인이 있던 기업

금융부채 연체, 조세 체납 | 완전자본잠식 | 최근 3개년 연속 당기순손실(기간 중 최소 1회 당기순이익 시현 필요) | 법인의 지급불능상태 또는 청산·해산·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 주채권은행 관리절차 개시 등 구조조정 절차 개시 | 어음, 수표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 대출기관의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상 채무의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 발생

금융

고용

수출

기타

- (대출기간) 2년 (1년차 20%, 만기시 80% 분할상환)
- (금리) 은행별 대출금리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고정금리
- (문의) 한국산업은행 등 취급 금융회사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산업, 기업, 수협, 씨티, SC

한국수출입은행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대기업 일부 포함)
- (자금용도) 수출입·해외진출 사업 지원

구분	지원대상	우대 조건	규모
운영자금지원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 금리우대 : 중소 0.5%p 중견 0.3%p	2.0조
긴급경영자금 지원	수출입계약·실적없거나 대출한도 소진기업	• 평년매출액 일정비율 한도 • 금리우대 : 중소 0.5%p 중견 0.3%p	2.0조
수출실적 기반자금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혁신성장·소부장 부문	• 기업별 과거 수출실적의 80% 지원	2.0조
수출입·해외진출 보증	수출입 또는 해외진출 기업	• 보증료 우대 : 중소 0.25%p 중견 0.15%p	2.5조

- (문의) 한국수출입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3779-6114)

한국수출입은행

자동차부품기업 해외법인 자금지원

- (지원대상) 자동차부품산업을 영위하는 중견·중소기업의 해외법인(베트남, 현재 인도네시아 소재 법인만 가능)
- (지원대상) 현지 자금조달이 어려운 현지법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해외자산(해외공장 부동산, 기계장비 등)을 담보로 대출
 ※ 부품업체의 현지법인은 통상 모기업(부품업체) 연대보증을 통해 국내은행 대출이 가능했으나, 수은의 해외법인을 통해 부품업체 해외법인의 보유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도록 추진

신용보증기금

주력산업 등 유동화회사보증(P-CBO)

- **(지원대상)** 주력산업·연관업종, 코로나19 피해업종 중소·중견기업
- **(한도)** 중소기업 200억원, 중견기업 350억원
- **(문의)**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02-2014-0221~7)

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대응 유동화회사보증(P-CBO)

-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업종 중견·대기업
- **(한도)** 대기업 1,500억원, 중견기업 1,050억원
 ※ 계열한도 중견기업 1,500억원, 대기업 2,500억원
- **(문의)** 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02-2014-0221~7)

※ **최저 편입가능등급(BB-) 이상* 기업 중 신보 내부 심사를 거쳐 편입이 결정되며, 신청 후 자금수령까지 약 1.5개월 소요**

* 상담·신청 → 신청사 회사채 등급 평가** → 보증심사 → 보증승인

** 중소기업은 신보 자체등급 평가

※ **발행스케줄(예정)**

신청기한	7/17	8/21	9/22	10/23	11/13
발행일	8/21	9/25	10/30	11/27	12/18

※ **발행조건 : 만기 3년, 고정금리, All-in-cost***

* All-in-cost : (대 기업) 개별(등급) 민평금리 + 후순위채 1%(年)

(중견기업) 신보 내부기준에 의한 금리 + 후순위채 0.5~1.3%(年)

※ **유의사항**

* 최근 불승인·감액 사례 : 관계사 매출 차감시 매출액한도 저축, 부채비율 과다, EBITDA 이자보상배수 1 미만, 매출액 대비 차입금 과다, 관계기업 대여금 과다, 주력기업 부실 등

금융

고용

수출

기타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회사채·기업어음(CP) 등 차환발행 지원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회사채·CP 등 차환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대기업
- **(매입기준)**
 - 회사채 : A등급 이상 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등급이 하락(투자등급 이상)한 기업
 - 기업어음(CP) : 우량등급(A1) CP 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등급이 하락한 기업(신용보증기금 신용보강 통해 지원)

구 분		회사채	CP	채안편드	국책은행 차환·매입지원	회사채 신속인수	SPV
투자 등급	우량	AA	A1	●	●	-	●
	비우량	A	A2	제한적 매입	●	●	●
		BBB	A3	-	-	●	●
투기 등급	투기	BB	B	-	-	-	제한적 매입

* 시장안정조치 차원에서 기업의 발행수요 등에 따라 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등을 운영하지 않음

※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 **매입기준** : 투자등급 회사채·CP는 모두 매입대상에 포함하되, 비우량채(A~BBB등급) 중심으로 매입
 - * 투기등급(BB등급)중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이후 신용등급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 (fallen angel)도 매입대상에 포함
 - **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 기업은 매입대상 제외
- **만기** : 회사채는 3년 이내, CP·단기사채는 만기 3~6개월 이내

- **(문의)**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전국 영업점

기술보증기금

자동차부품기업 상생특별보증

- **(지원대상)** 자동차부품산업을 영위하는 중견·중소기업
 - 완성차 출연 자원(1,200억원)은 완성차업체 추천기업을 우선 지원, 정부 재정(1,500억원)은 전체 자동차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 **(보증한도)** 최고보증한도 대상으로 '최대' 70억원까지 지원 가능

구분	'중견기업' 보증별 최고보증한도	한도(억원)
①	신/기보 일반보증 + 보증재단 보증 + 본 특례보증	70
②	① + 신/기보 투자금액	100
③	② + 신/기보 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금액	350

한국산업은행 등

대출 만기연장 지원

❖ 산은·수은·기보

- '21년 3월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대출에 대해 신청시 원금 만기연장 시행
 - ※ 온렌딩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포함 (중개금융기관으로 신청)

❖ 5대 시중은행

- '20년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중견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존 대출에 대해 최대 1년 만기 연장 시행
 - ※ 5대 시중은행(신한·우리·국민·농협·하나) 우선 시행 후 추가 확대 검토

❖ 신보·기보

- '21년 3월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쏠 대출보증에 대해 신청시 상환없이 원금 만기연장 지원

금융

고용

수출

기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기업 설비투자 지원

- ❖ **신규 설비투자 촉진 프로그램 (1년간 한시 운영)**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설비투자 등
 - (지원규모) '20년중 4.5조원(산은·기은 각 2조원, 수은 0.5조원)
 - (내용) 최저 1.5%의 특별우대금리 적용
 - (문의)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전국 영업점

- ❖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 (지원대상)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등) 및 신성장분야 중소·중견기업
 - (지원규모) '20년중 3조원(산은 2조원, 기은 1조원)
 - (내용) 최대 0.7%p 금리우대 등 지원
 - (문의)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전국 영업점

농협 등 11개 시중은행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시중은행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
농협 (1.3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 의원·여행·숙박·공연업종 등 소상공인 ▷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입원·격리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당 최대 5억원, 개인당 최대 1억원 신규대출 • 신규대출에 대해 최고 1% 금리감면(농업인 최고 1.7%), 최장 12개월 이자납입 유예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1661-3000
신한 (1.3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 우려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총 1천억원 규모)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 신규·기한연장에 대해 최고 1% 금리감면 • 지역신보 특별출연을 통한 대출지원(5,100억원) 	1577-8000
우리 (2.3.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 음식·숙박·관광업 등 내수 피해 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대출 및 대출 기한연장(총 1,000억원 규모) • 최고 1.3% 금리감면 • 지역신보 특별출연을 통한 대출지원(5,500억원) 	1588-5000
하나 (2.6.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중견·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 최고 1.3% 금리감면 	1588-1111
국민 (1.3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우려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리금 정상 납입 시 연체이자 면제(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사실 확인 기업) • 최고 1% 금리감면 • 지역신보 특별출연을 통한 대출지원(4,600억원) 	1588-9999
대구 (2.4.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발생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국외 확진 발생지역과 수출입 거래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 숙박·음식점업 등 간접 피해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총 1천억원 규모) • 기존대출 기한연장 • 최고 1.5% 금리감면 	1566-5050

금융

고용

수출

기타

시중은행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
부산 (1.31. 시행)	▷ 피해우려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총 1천억원 규모) • 신규대출에 대해 최고 1.0%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1588-6200
광주 (2.3. 시행)	▷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 우려 중소기업·개인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총 500억원 규모) • 대출 기한연장(총 500억원 규모) •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 최고 1.3% 금리감면 	1600-4000
제주 (1.30. 시행)	▷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당 최대 3억원 신규대출(총 1백억원 규모) • 기존대출 기한연장 	1588-0079
전북 (2.5. 시행)	▷ 여행·숙박·음식점·수출입 등 피해 예상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총 1천억원 규모) • 신규대출에 대해 최고 1.0%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1588-4477
경남 (1.31. 시행)	▷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우려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신규대출에 대해 최고 1.0%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1600-8585

국민연금공단

코로나19 환자 및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 **(지원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13만원을 지원
-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위반자 제외)

※ 지원 제외대상

-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 ② 정부, 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 ③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포함)가 특정 목적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인건비 등 운영비 전체를 예산으로 지원받는 기관 등

- **(지원기준)** 근로자별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 13만원 적용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 26일
- **(유급휴가 기간)** 입원·격리기간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퇴원) 된 날까지의 기간
- **(지원금액 산정)** 1일 과세급여액(최대 13만원) × 유급휴가 기간
- **(신청시기)** 격리자 : 격리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입원자 : 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방법)** 지역별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문의)** 지역별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 또는 국번없이 1355

민
용

고
용

수
출

기
타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 **(지원개요)** 코로나19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6.6만원(월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 실시,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사업장은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1.29.~)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예외적 신규채용 허용 : 휴업·휴직 후 대체 고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나, 신규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10%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

- **(지원금액)**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 비율을 한시적 상향*
(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일반 업종의 휴업·휴직수당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고용유지조치기간	2020.1.1.~1.31.	2.1.~3.31.	4.1.~9.30.	10.1.~
중견기업	50%(1/2)	67%(2/3)	67%(2/3)	50~67%(1/2~2/3)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3.16.~9.15.) 동안의 휴업·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3/4 → 9/10, <중견기업> 2/3 → 2/3~3/4

- **(신청방법)** 온라인 고용보험(www.ei.go.kr) 또는 지역별 관할 고용 노동센터
- **(문의)** 지역별 관할 고용 노동센터 담당자 또는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

- **(지원개요)** 중소·중견기업에 유연근무제 활용촉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사업주 노무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
-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유형)**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

시차 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 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 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 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지원요건)**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를 마련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이며,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해야 함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재택근무'는 이메일, 모바일 메시지를 통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인정

- **(지원금액)**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520만원 지원

기준	연간 총액		1주당 지급액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 **(신청방법)** 온라인 고용보험(www.ei.go.kr) 또는 지역별 관할 고용 노동센터
- **(문의)** 지역별 관할 고용 노동센터 담당자 또는 국번없이 1350

민
용

고
용

수
출

기
타

가족돌봄휴가비 긴급지원

- **(지원개요)**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일당 5만원, 최대 10일간(부부합산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20.1.20.(국내 첫 코로나19 확진판정일)부터 비상상황 종료시까지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대기업, 공공기관 포함)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코로나 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등
- **(지원기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5일 이내 지원
 - 외벌이도 지원(5일 이내), 맞벌이(최대 10일), 한부모(10일 이내)
- **(지원금액)** 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 지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단, 4시간 이하는 2.5만원 일괄 지원)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지역별 관할 고용 노동센터
- **(문의)** 지역별 관할 고용 노동센터 담당자 또는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 **(지원개요)** 코로나19 대응 재택근무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견기업 대상 사업주가 투자한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내용)**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에 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및 설비·장비의 설치, 개선, 교체하는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형 그룹웨어,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등
서비스 사용료	웹 기반 ERP, 클라우드 서비스 등
보안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컨설팅 등	취업규칙 변경, 제도 도입 컨설팅 등
교육비	인사 담당자 교육, 훈련 비용

* 단, 건물·토지를 구입·임차하는 등의 부동산 비용과 PC·노트북 등 통신장비를 구입하는 비용 제외

- **(지원요건)** ①고용센터에 사업신청 및 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계획 인원의 50% 이상 재택근무 활용, ③사용의무기간(3년) 준수
 - *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또는 매각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시설 용도변경·매각 승인 신청서' 제출 및 사전 승인 필수
- **(신청방법)** 온라인 고용보험(www.ei.go.kr) 또는 지역별 관할 고용 노동센터
- **(문의)** 지역별 관할 고용 노동센터 담당자 또는 국번없이 1350

금
용

고
용

수
출

기
타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지원

- **(지원개요)** 코로나19에 따른 개학연기로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을 상향하여 지원(최대 1년)
- **(지원대상)** 모든 기업의 근속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
- **(지원내용)**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전일제 근로를 시간제근로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적용기간)** '20. 3. 1. ~ 12. 31. (10개월) 단축근무자 한시 적용
- **(지원요건)** ①전환제도 도입, ②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35시간으로 단축, ③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④근로자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
- **(지원수준)**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수준 (근로자 1인기준)	
		현행	인상
임금감소보전금	모든 기업	15~25시간: 월 40만원 이내, 25~35시간: 월 24만원 이내 임신근로자(35시간 이하): 월 40만원	15~25시간: 월 60만원 이내, 25~35시간: 월 40만원 이내 임신근로자(35시간 이하): 월 60만원
간접노무비	중소·중견기업	월 20만원	월 40만원
대체인력지원금	모든 기업	중소: 60만원 이내 그외: 30만원 이내	중소: 80만원 이내 그외: 30만원 이내

- **(지원절차)** 단축제도 도입, 근로시간 단축근무에 대한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결과를 첨부하여 매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신청서 제출
- **(신청방법)** 지역별 관할 고용 노동센터
- **(문의)** 지역별 관할 고용 노동센터 담당자 또는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직하여 취업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취업촉진 지원 대상

- ① '20.2.1. 이후 이직한 자로써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 ②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③ '20.2.1. 이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에 있었던 자 중 사업 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 **(지원내용)** 최대 6개월간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중견기업 8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의 80% 한도 내 지원) 지원

- **(지원기간)** ~ 2020. 12. 31.

- **(지원조건)**

-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 가입 등
-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 제한

*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 **(문의)** 지역별 관할 고용 노동센터 담당자 또는 국번없이 1350

민
용

고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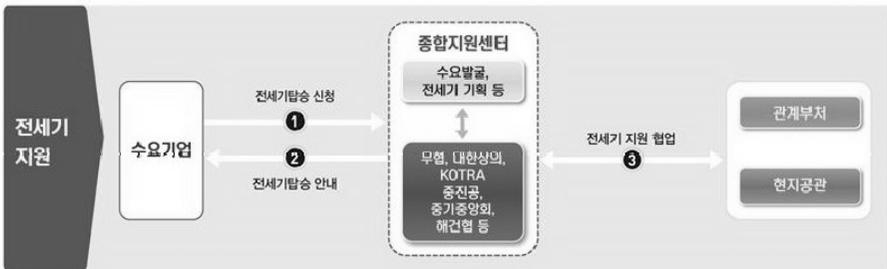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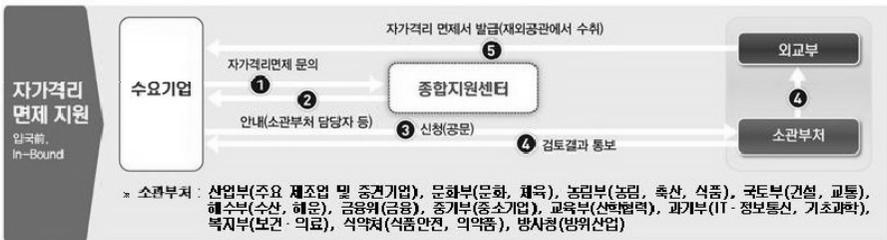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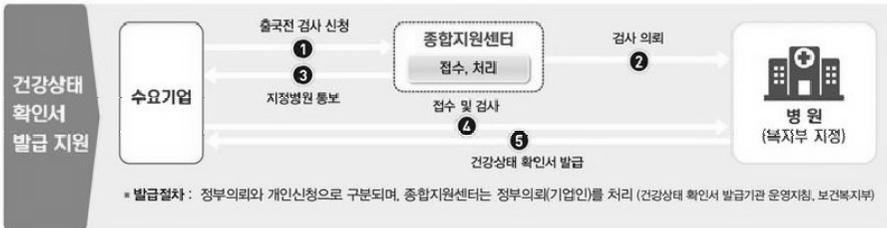
수
출

기
타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기업인 출입국 지원

- (지원대상) 사업상 목적으로 출국 또는 입국하고자 하는 기업인
- (지원내용) 국가별 기업인 출입국 종합안내,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 격리면제 관련절차, 기업인 출국 시 전세기 지원 등



- (문의)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www.btsc.or.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로나19 대응 화상상담

- **(지원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수출판로 개척에 애로가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우리 해외무역관을 활용하여 품목 맞춤형 바이어 매칭 및 화상상담을 무료로 지원
- **(지원내용)** KOTRA 지방지원단 및 해외 중점무역관에 화상상담 소프트웨어를 확대하여 해외바이어와 화상상담 진행 지원
 - 해외바이어 발굴 및 상담주선
 - 바이어와의 1:1 화상상담 지원 (화상상담 솔루션 무료 제공)
 - 화상상담을 위한 통역 무료 지원
 - * 화상상담 솔루션에 익숙치 않은 기업은 KOTRA 본사(사이버무역상담실) 또는 KOTRA 지방지원단 사무실에서 진행 가능
- **(신청방법)**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코로나19 대응 화상상담 - 지원 가능 사업 조회 - 사업신청
- **(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600-7119) 또는 KOTRA 화상상담 지원데스크
 - 디지털무역팀 : 최홍희 대리(02-3460-7432)
 - 기간제조팀 : 이준섭 사원(02-3460-7768)
 - 소재부품팀 : 장효선 사원(02-3460-7654)
 - 지식서비스팀 : 광영실 사원(02-3460-3389)
 - 의료서비스팀 : 심재원 사원(02-3460-7628)
 - 융복합산업팀 : 정순이 과장(02-3460-7464)

금융

고용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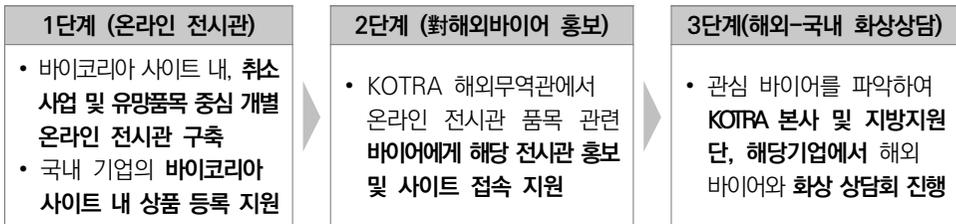
기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별 온라인 상품관 신설

- **(지원개요)** 코로나19 대응 및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마케팅 지원을 위해 buyKOREA에 온라인 상품관을 구성하여 우리 기업 제품의 홍보, 구매오피 발굴, 1:1 화상 상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주요 산업분야의 국내 중소·중견기업
* 주요 산업분야: 전력, 조선, 자동차 부품, 전자전자 부품, 중장비, 소비재, ICT 솔루션, 에듀테크, 공공조달
- **(지원내용)** ① 온라인 상품관을 통해 국내기업 상품을 전시(해외바이어에게 홍보), ② 바이어가 선택한 국내 기업의 경우 Buying offer 수신 가능, ③ 바이어가 1:1 상담 희망 시 상담 지원(상담장 및 통역 지원 가능)

〈추진 절차〉



- **(참가비용)** 무료
- **(신청방법)** buyKOREA(www.buykorea.or.kr) - 상품 정보 등록 및 업데이트 - '모집 중인 행사' 내 해당 상품관 참가신청
- **(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600-711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긴급지사화서비스

- **(지원개요)** 코로나19에 따른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로 인하여 해외 현지 마케팅에 애로가 있는 기업을 위해 KOTRA 무역관에서 업무를 대행
- **(지원대상)** 홍콩, 이스라엘, 쿠웨이트 등 해외 출장이 어려운 국가의 현지 마케팅 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대면 수행이 불가피한 해외마케팅 업무*에 KOTRA 현지 무역관 전담직원을 긴급 투입하여 안정화 시점까지 대행

* 샘플 시연 상담, 거래선 관리, 인허가 취득 지원, 현지 유통망 입점 점검 등

〈현지 마케팅 대행 확대 내용〉

구분	기존	확대(기존+긴급 마케팅 대행 추가)
지원내용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지원, 물류 통관 자문, 출장 대행지원, 기존 거래선 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 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현지 법인 설립 지원	
가입기간	1달 이상	즉시 가입
서비스기간	1년	3개월(필요시 분기별 연장)
참가비	300만원(지역별 차등)	75만원(지역 상관 無)

- **(수행기간)** 3개월, 필요시 분기 단위로 연장 가능
- **(신청기간)** 3.2.(월)~
- **(신청방법)** KOTRA 유망기업팀(moouuk@kotra.or.kr) 메일 신청
- **(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600-7119)

금융

고용

수출

기타

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 한도 무감액

● (지원개요)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주력시장* 소재 수입자 앞 무신용장 거래와 관련한 단기수출보험 한도 무감액
대상기업	단기수출보험 이용 수출기업
적용기간	'20년말까지

* 총 33개국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마카오, 영국, EU 27개)

- (문의) 한국무역보험공사(1588-3884)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법인 운전자금 보증

● (지원개요)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해외 현지법인 운전자금 지원
대상기업	대기업과 동반 진출한 중소, 중견기업
대상요건	국내 본사의 지급보증 필수, 공사 및 대출은행이 정한 신용등급 충족
대출한도	5백만불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전문 컨설팅기관의 사업성검토 보고서 제출시 최대 1백억원)
대출기간	3년 이내
상환구조	원금균등 분할상환
운영기간	'20.12.31까지

- (신청방법) 현지 대출취급은행과 상담 (해외사업금융보험 담보부 대출 가능여부 확인)
- (문의) 한국무역보험공사 플랜트금융1부(02-399-7026, 6954)

한국무역보험공사

선적전 보증 만기연장

● (지원개요)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재책정 시 무감액 연장 처리
대상기업	수출신용보증(선적전) 한도를 보유한 모든 기업
자금용도	수출계약이행을 위한 운전자금
보증요율	연간 0.6% ~ 2.0% 내외 (수출자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 공사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절차)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지사에 상담 후 신청



● (문의)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기획팀(02-399-6830)

금
영

고
영

수
출

기
타

한국무역보험공사

보험·보증료 50% 할인

● (지원개요)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보험·보증료 할인
대상기업	수출 중소기업
할인율*	50%**
적용기간	'20.4.15~'20.12.31

* 다른 지원 프로그램 등에서 정하는 할인율과 경합하는 경우 유리한 할인율을 적용하되 중복적용은 배제

*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지역의 수출기업의 경우 지자체 지원을 통해 보험료 부담 없도록 추진

● (할인종목)

종 목	할인율 기준일	할인율
단기수출보험 (중소중견Plus·농수산물패키지 제외)	선적일	50%
중소중견Plus+, 농수산물패키지보험	한도책정일	
수출신용보증(매입)	한도책정일	
수출신용보증(선적전)	한도책정일	
수출신용보증(Nego)	한도책정일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대출예정일	
수출신용보증(공급망)	대출실행일	

● (문의)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기획팀(02-399-6784)

한국무역보험공사

긴급 수출안정자금

● (지원개요)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간편·신속 심사를 통한 무역금융 신속 지원 (지원총량 1천억원, 업체당 최대 2억원 內)
대상기업	수출실적(또는 수출계약) 보유한 중소기업
자금용도	수출계약이행을 위한 운전자금
보증요율	연간 0.6% ~ 2.0% 내외 - 수출자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 공사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절차) 무역보험공사 영업지사에 상담 후 신청



● (문의)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기획팀(02-399-6830)

금융

고용

수출

기타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 (지원개요)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외상수출 이행 후 대금결제 이전에 미리 수출채권을 조기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입외환 대출용 보증서 제공
대상기업	수출실적(또는 수출계약)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보증한도	수출·입자 신용도, 수출입자간 결제실적 등 감안하여 책정
보증요율	연간 약 0.4%~0.7% (특별할인 적용시) 내외 - 수출자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 공사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절차) 무역보험공사 영업지사에 상담 후 신청



● (문의)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기획팀(02-399-6951)

한국무역보험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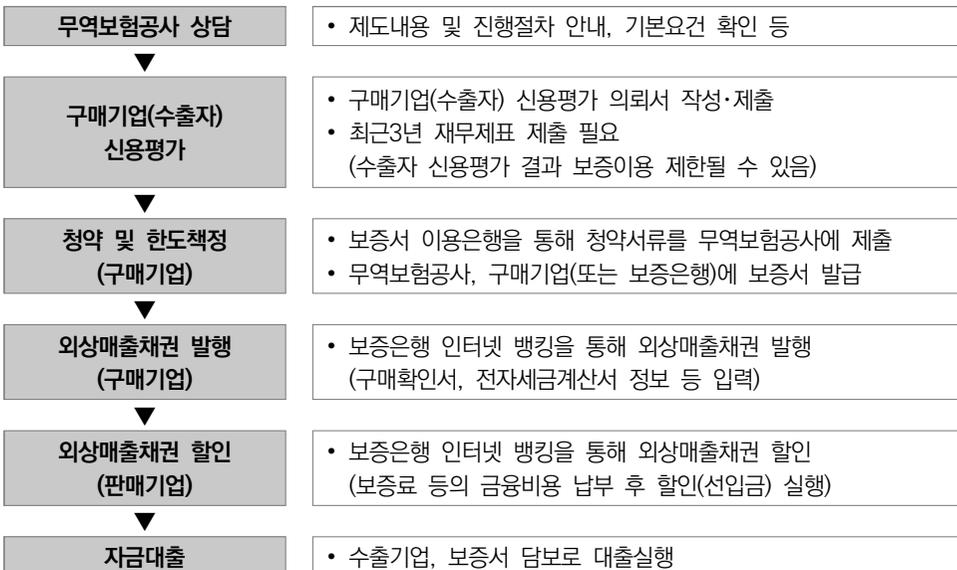
매출채권 조기현금화

● (지원개요)

구분	내용
지원내용	수출용 원·부자재 및 완제품을 외상 판매한 기업이 은행을 통해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신청대상	수출용 원·부자재를 외상으로 구매하는 구매기업
지원대상	판매기업(은행에 매출채권을 비소구 조건으로 할인)
대상거래	결제기일 90일 이내 구매확인서 발급 거래
보증요율	연간 약 0.02%~0.07% (특별할인 50% 적용시) 내외 - 구매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공급망 보증 비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대비 공급망 보증은 KTNET을 통한 매출채권 정보 공유, 외상기간 단축(180→90일), 비소구 조건으로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기 활성화에 기여 가능

● (신청절차) 무역보험공사 영업지사에 상담 후 신청



● (문의)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기획팀(02-399-6784)

금융

고용

수출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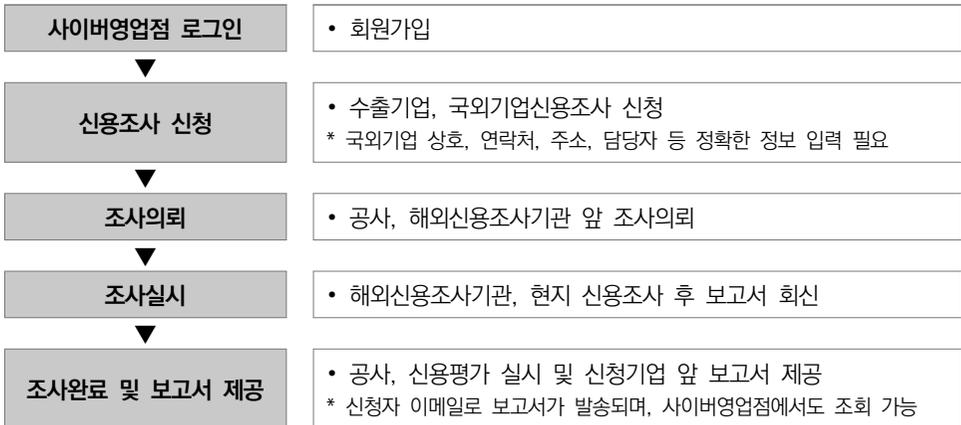
한국무역보험공사

中企 신용조사 무료제공

● (지원개요)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무료 제공
대상기업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건수	5건
적용기간	'20.04.09 ~ '20.12.31(신청일 기준)

● (신청절차) 공사 사이버영업점(cyber.ksure.or.kr)에 접속하여 신청



● (문의) 한국무역보험공사 조사부 신용평가팀(02-399-6898)

한국무역보험공사

특례인수위원회를 통한 특별지원

● (지원개요)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인수위원회*를 통해 수출자금 및 이행보증 특별지원 * 외부위원(금융·회계·학계·법률 등 전문가)으로 구성 - 지원가능한도를 소진한 기업에 추가 자금 지원 - 신용도가 낮아서 지원이 제한된 기업에 특별 자금 지원
대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성장* 및 수출초보/급증 중소기업 * 혁신성장금융센터 선정 혁신성장품목 업종 영위 기업 - 신용도가 낮아서* 정상 지원이 불가한 기업도 포함 * 부채비율 등 재무지표 불량, 자본잠식, 감사의견 한정 등으로 인한 지원이 제한된 등급
대상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보증보험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30억원 이내 • 수출보증보험 U\$15백만 이내

- (문의) 한국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을 통해 별도상담 요망

금융

고용

수출

기타

국세청

국세 및 지방세 세무행정 지원

❖ 국세

①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고지된 국세에 대해 최대 9개월까지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체납처분 집행 최장 1년까지 유예
- * 대상 : ①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등 ②중국 현지 지사·공장 운영, 기타 현지 생산중단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 ③매출급감 등으로 기업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

② 세무조사 유예 등

-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하고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

③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설치·운영

- 국세청 본청 및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전담대응반 설치·지원

❖ 지방세

①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 신고·납부기한 최대 1년까지 연장, 고지된 지방세에 대한 징수 및 체납처분 최대 1년까지 유예
- * 대상 : 신종 CV 확진자 및 격리자, ②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② 세무조사 유예 등

-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진행 중인 경우에도 중지 또는 연기

해양수산부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지원

- ① **(긴급경영자금 지원)** 코로나19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외항화물운송선사(정기, 부정기)에 대해 총 900억 원 규모(업체당 최대 50억원)의 긴급 경영자금 지원
- ② **(운항 인센티브 제공)** 부산항을 중심으로 중국·일본 역내에 국한하여 기항하는 정기 컨테이너선에 대해 총 50억원 내에서 운항 인센티브 제공
 - 개별 선사의 부산항 입항 횟수 비율에 따라 선사별 배분
- ③ **(친환경설비 설치기한 연장)** 당초 '20.3월말까지였던 선박의 친환경설비 설치기한을 감염경보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후까지 연장
- ④ **(임대료·사용료 감면)** 항만운송사업자와 부대사업체가 항만이용에 따라 항만당국에 지급하는 사용료·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50% 감면
 - 터미널운영사, 부두운영회사 등의 경우, 전년 동 분기 대비 물동량 15% 이상 감소가 입증될 경우 6개월간 10% 또는 정액을 감면
 -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6개월간 임대료의 10%를 감면
- ⑤ **(상생펀드 지원)** 4개 항만공사(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가 운영 중인 상생펀드의 규모를 현재 147억 원에서 280억 원까지 확대 지원

금융

고용

수출

기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유권해석

- **(해석내용)**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었고 다수의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금번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유권해석
 -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민간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의 공정한 계약을 위하여 국토부가 고시하는 표준적인 계약내용과 계약조건
- **(적용조건)**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표준도급계약서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서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가 발생하여 건설공사가 중단된 경우
- **(적용내용)**
 - 민간 발주자에게 공사기간의 연장 요구 가능
 - * 민간발주자는 요구받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계약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 실시
 - 변경된 공기, 변동된 자재 가격 등을 토대로 계약금액 조정 →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에 따라 일반관리비와 이율 등 변경
 - 공기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부과 불가
 - 완공 후 코로나19 비상상황이 해제된 날부터 3일까지 준공검사 기한 연장
- **(기타)** 공기연장, 공사중단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이 있을 시 건설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분쟁 중재 예정

2020년도 중견기업 지원사업 가이드북

일반지원



한국산업은행

KDB Global Challengers 200

❖ 지원개요

-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중견기업과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예비 중견기업) 200여개사를 선정 및 중점 지원하여 세계 일류 기업으로 육성
 - * 예비중견기업 : 설립 7년 초과 및 매출액 300억원 초과 중소기업

❖ 지원대상

- 중견기업 및 예비중견기업

❖ 지원내용

대출	▷	전용자금 2.5조원 및 고객우대
투자	▷	투자펀드 등을 활용한 투자 지원
M&A	▷	M&A 자문 및 인수금융 등 제공
채권발행	▷	채권발행 Coaching 및 투자자 Matching
파생	▷	현물환수수료 우대 및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무역금융	▷	환가료율·수수료 우대, 외국환 인증업무 지원
컨설팅	▷	경영컨설팅(경영·재무, 해외진출 등) 제공
연수	▷	산은아카데미 연계 금융연수 제공
자금운용	▷	예금금리 등 우대 제공

❖ 문의

- 한국산업은행 여수신기획부 : 02-787-6926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KDB 경영·재무전략 컨설팅

❖ 지원개요

- 기업경영 컨설팅 관련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가 네트워크 및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최적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중견·중소기업

❖ 지원내용

- 비전 및 중장기경영전략 수립
- 제품/사업별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 Pre-M&A, PMI 등 M&A관련 컨설팅
- 사업 및 재무상태 진단
- 재무재조정 방안, Work-out Plan 수립
- 신규 사업의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 문의

- 한국산업은행 영업점 및 고객상담실 : 1588-1500

한국산업은행

KDB 동반성장대출

❖ 지원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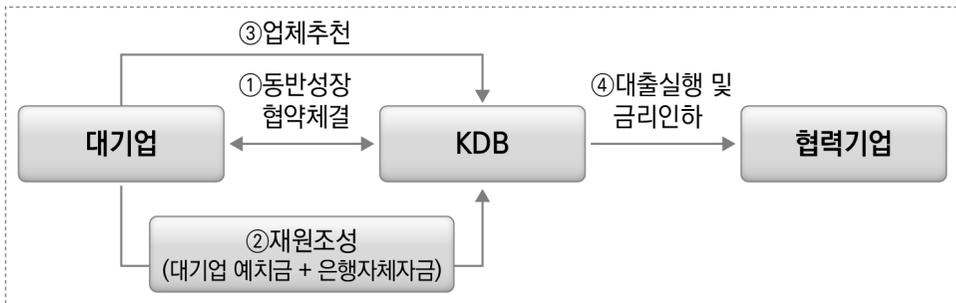
- 대기업과 한국산업은행이 매칭펀드를 조성하여 대기업 협력 중견·중소기업에 대하여 저리자금 지원

❖ 지원대상

- 펀드 조성 대기업 협력 중견·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원자금, 기간, 한도금액 : 대기업별 협약사항에 따라 다름
- 금리우대 : 예탁금 이자수익분을 감안하여 금리 감면
- 지원구조



❖ 문의

- 한국산업은행 영업점 및 고객상담실 : 1588-1500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한국산업은행

KDB 온렌딩대출

❖ 지원개요

- 전통산업은 물론 신성장동력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은행이 중점 운영중인 국내 대표 중소·중견기업 정책금융제도로, 중개금융기관이 대출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하고 산업은행의 장기·저리자금을 전대받아 해당 기업을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금감원 기업표준 신용등급 체계상 6~11등급)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 (금감원 기업표준 신용등급 체계상 7~11등급)

❖ 지원내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년 이상 10년 이내 (거치기간 최대 3년)
 - 운영자금 : 1년 이상 3년 이내 (거치기간 최대 6개월)
 - 리스자금 : 1년 이상 5년 이내 (거치기간 최대 6개월)
- * 중개금융기관 요청시 KDB산업은행이 온렌딩대출 한도의 60% 이내에서 신용위험을 분담
- 대출한도

구분	기업규모	대출한도(단위:억원)			비고	
		건별		기업별		
		시설	운영			
원화일반온렌딩	중소	50	20	100	-	
	중견	150	60	300	-	
외화자금온렌딩(만USD)	중소	400	200	800	-	
	중견	1,500	600	3,000	-	
특별온렌딩	신산업육성 수출기업지원 지역경제활성화	중소	150	60	300	-
		중견	200	100	400	-
	스마트공장보급지원	중소	100	50	200	-
		중견	200	100	400	-

❖ 신청방법

- 희망 기업은 한국산업은행을 별도로 방문할 필요 없이, 국내 시중·지방은행 등을 통하여 온렌딩 대출 신청

❖ 문의

- 한국산업은행 홈페이지(www.kdb.co.kr) - 기업금융정보
- 한국산업은행 온렌딩금융실 : 02-787-0573, 0575, 0576, 0580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한국산업은행

KDB 정책성 특별자금

❖ 지원개요

- 경기 활성화 등의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중견·중소기업 대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

❖ 지원내용

-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지원분야	전통 주력산업의 업그레이드 신성장 분야 창출 등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투자
지원방법	대출 및 투자
금리우대	원화(최대) △0.7%p, 외화(최대) △0.3%p

- 환경·안전투자 지원프로그램

지원분야	환경·안전설비 환경·안전 분야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노후설비·건축물 노후화된 기계·기구 교체, 사업장·공장 개선 관련 민간의 생활 SOC 투자 문화·체육, 관광, 노후산단, 신재생에너지 등
지원방법	대출
금리우대	△1.0%p(조정금리인하형)

● 설비투자 붐업(Boom-up) 프로그램

지원분야	국내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시설투자 ① 공장부지 등을 구매하거나 분양(예정)받은 기업의 시설투자 ② 해외시설의 국내 이전에 따르는 시설투자 ③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에 대한 시설투자 단, ①~③에도 불구하고 아래 용도는 지원 불가 - 기존시설 유지·보수 - 공장 등 시설 신축계획 없이 토지만 구매 - 이미 지어진 시설 구매 - 기존 대출 대환
지원방법	대출
금리우대	*기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20년 중 기표분에 대하여 '2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최저 연 1.5% 특별금리 적용

❖ 문의

- 한국산업은행 영업점 및 고객상담실 : 1588-1500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한국산업은행

KDB-CIB 융합 프로그램

❖ 지원개요

- 장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중견기업을 조기에 발굴하여 기업성장단계별 최적의 금융지원 모델 제공을 통해 글로벌 우량기업으로 육성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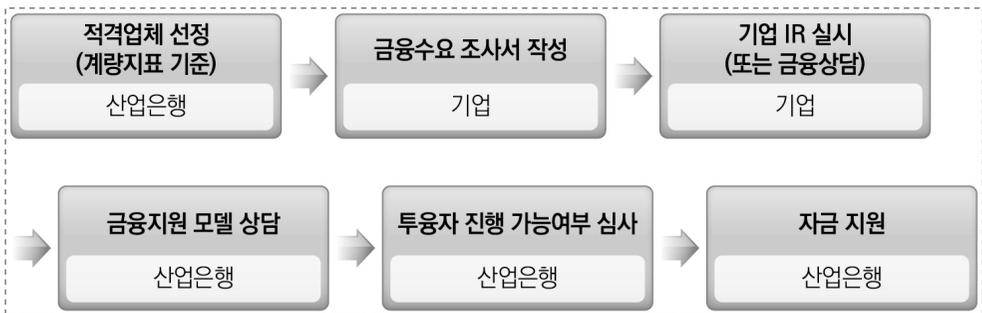
- 「KDB-CIB 융합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우량 중소·벤처·중견기업

❖ 지원내용

기업성장단계	CIB 융합 지원 모델*
초기술벤처	투자 + 대출(테크노뱅킹, R&D) + M&A
성장 중소·벤처	투자 + 대출 + 외부 VC투자 연계 + 컨설팅
Pre-IPO·예비중견	투자 + 대출 + IPO 주간사 연계 + 해외진출
중견	투자 + 대출 + 회사채 발행 주선 + 구조화금융 + 컨설팅 + M&A + 해외진출

* 기업성장단계별 대표적인 금융서비스를 기재한 사항이며, 기업이 원하는 경우 타서비스 이용이 가능

❖ 지원절차



❖ 문의

- 한국산업은행 신산업금융실 : 02-787-5625, 02-787-5622
- 한국산업은행 영업점 및 고객상담실 : 1588-1500

IBK기업은행

IBK 강소기업대출

❖ 지원개요

- 수출·기술·문화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우수 중소·중견기업에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 또는 중견기업

부문	대상기업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실적이 USD 1,000,000불(연간) 이상인 수출기업 • 상기 요건 충족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강소기업(IBK), 글로벌 강소기업(중기부),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대상기업(중기부), 코스닥 라이징스타(KRX), 글로벌 전문기업(산업부), AEO공인획득기업(관세청),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지원대상 기업(KOTRA)
기술	IBK강소기업 등 우수 기술력 보유기업
문화콘텐츠	문화콘텐츠강소기업(IBK)

❖ 지원내용

- 지원 분야 : 운전자금, 시설자금
- 대출 기간
 - (운전자금) 일시상환 1년 이내, 기한연장 시 5년 이내로 운용
 - (시설자금) 일시상환 3년 이내, 분할상환 15년 이내로 운용

❖ 문의

-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 02-729-7494
-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으로 문의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IBK기업은행

IBK 동반성장협력대출

❖ 지원개요

-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중소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예탁금을 재원으로 우량 협력 중소·중견기업 및 가맹점에 대출 지원

❖ 지원대상

- 협약기관과의 “동반성장협력 협약”에 따라 협약기관의 추천을 받은 신용등급 BB+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 * 단, 전액담보(80% 이상 신용보증서 포함)인 경우에는 신용등급의 제한이 없음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은행이 정한 소요자금 한도산정 금액 범위 내에서 업종, 상환능력, 자금용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신용보증서 담보의 경우 신용보증서상 대출금액 범위내

❖ 문의

- 기업은행 고객센터 : 1588-2588
-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으로 문의

IBK기업은행

IBK 산업구조고도화지원 설비투자펀드

❖ 지원개요

- 주력산업 및 신성장 분야에 대한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중소·중견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

❖ 지원대상

- 주력산업 및 신성장 분야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동일기업당 최대 25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동일기업 당 최대 250억원 이내
 - 운전자금 : 동 상품으로 지원받은 시설자금의 20% 이내로 동일기업 당 최대 3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일시상환방식 : 1년 이내(단, 기업은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3년), 기한 연장시 당초 대출기간 포함하여 최장 5년 이내
 - 분할상환방식 : 5년 이내
 - 시설자금
 - 일시상환방식 : 3년 이내(단, 기한연장 시 당초 대출기간 포함하여 최장 8년 이내)
 - 분할상환방식 : 15년 이내(거치기간 설정가능)

❖ 문의

- 기업은행 고객센터 : 1588-2588
-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으로 문의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IBK기업은행

IBK 시설투자대출

❖ 지원개요

-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및 시설투자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 지원대상

- 정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 등을 위하여 시설자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

❖ 지원내용

- 대출대상기업에게 사업장부지자금, 사업장매입자금, 경락부동산자금, 건물자금, 기계자금, 수입기계자금, 사업장임차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구분	내용
사업장부지자금	자가사업장 마련을 위하여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물 착공이 가능한 부지구입(분양포함)자금(토지정리비 및 토지조성비 포함)
사업장매입자금	기존 사업장의 매입자금 및 건설·분양중인 사업장(아파트형공장 포함)이 분양자금
경락부동산자금	법원(한국자산관리공사 포함), 경매(공매 포함), 부동산(기계기구, 설비 및 준부동산 포함) 매입자금
건물자금	건물(구축물 포함)의 신축 및 증·개축과 기타 이에 준하는 수선 또는 변경 등을 위한 개·보수자금
기계자금	기계자금(중고 기계기구 포함), 설비 및 준부동산의 구입 및 설치자금
수입기계자금	국외에서 기계기구, 설비 및 준부동산을 신용장방식(D/P, D/A포함) 또는 송금 방식으로 수입·결제하고자 하는 자금. 다만, 수출입공고에서 관련부처장관이 수입제한품목으로 고시한 품목은 제외
사업장임차자금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임차(대출취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임차 사업장 입주가 가능한 경우를 말함)하는 자금

- 용자범위 : 소요시설자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장 15년 (단, 사업장임차자금은 3년 이내에서 계약기간 범위 내)
- 상환방법 :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 문의

- 기업은행 고객센터 : 1588-2588

IBK기업은행

IBK 신재생에너지 상생보증부대출

❖ 지원개요

- 대기업, 발전사, 은행이 공동으로 “신재생에너지 상생보증 펀드”를 조성하여 보증기관에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재생에너지산업 영위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

❖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 상생보증펀드 운영규칙”에 따라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로부터 보증추천을 받고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90% 부분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신용보증서 상 대출금액
- 대출기간 : 신용보증서 상 보증기한 이내

❖ 문의

- 기업은행 고객센터 : 1588-2588
-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으로 문의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IBK기업은행

IBK 토지분양협약대출

❖ 지원개요

- 기업은행과 토지분양자금대출 협약을 맺은 분양기관 또는 분양시행사가 분양하는 토지의 수분양자에게 “토지분양대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취득하고 중도금 및 잔금 납부에 필요한 자금 또는 사업장 건축자금을 지원하는 상품

❖ 지원대상

- 기업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분양기관 또는 분양시행사가 분양하는 토지의 수분양자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 토지분양대금 납부대상 기업 : 토지분양계약금(토지분양대금의 최소 10% 이상)을 납부하고 분양기관 또는 시행사의 대출추천서(또는 협조문)를 받은 기업
 - 사업장 신축기업 : 건축자금 지원협약을 체결한 분양기관 또는 시행사가 분양하는 토지를 신규 분양(전매포함)받고 토지분양대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취득하여 해당 토지에 사업장을 건축하려는 기업

❖ 지원내용

구분	내용
대출과목	• 기업 :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일반시설자금대출
대출기간	• 기업 : 15년 이내 • 일시상환방식 : 3년 이내
대출한도	• 토지분양대금의 80% 이내로 분양기관 추천서상 추천금액 중 작은 금액 이내 •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 본부 승인금액 이내

❖ 문의

- 기업은행 고객센터 : 1588-2588

IBK기업은행

IBK 환경안전 설비투자펀드

❖ 지원개요

- 환경안전분야에 신규 투자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설비투자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하는 대출

❖ 지원대상

- 환경안전분야에 신규 투자하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동일기업당 최대 200억원 이내
 - 시설자금 : 동일기업 당 최대 200억원 이내
 - 운전자금 : 동 상품으로 지원받은 시설자금의 20% 이내로 동일기업 당 최대 4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일시상환방식 : 3년 이내(단, 기한연장 시 당초 대출기간 포함하여 최장 8년 이내)
 - 분할상환방식 : 15년 이내(거치기간 설정가능)

❖ 문의

- 기업은행 고객센터 : 1588-2588
-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으로 문의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KE 상생금융 프로그램(상생자금대출)

❖ 지원개요

-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상생대기업(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포함)이 추진하는 수출 프로젝트에 지원대상 물품을 공급하는 협력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상생대기업이 거래관계를 확인한 협력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지원대상거래
 - 상생대기업의 현지법인에 지원대상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상생대기업 앞 수출물자나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거래
 - 상생대기업의 해외수주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수출하는 거래
 - 상생대기업 중 공공기관이 법률 및 마케팅 등 경영지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수출물자나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거래
- 지원상품 :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출이행자금대출, 수출이행성보증
- 우대사항 : 정책조정률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 대출조건 : 각 여신상품별 지원조건에 따름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 처리절차 : 중소·중견기업 대출신청 → 상생대기업으로부터 협력 거래관계 확인 → 대출 심사 → 대출승인 → 대출집행 → 사후관리

❖ 문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297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2부 : 02-3779-6304

한국수출입은행

KE 상생금융 프로그램(해외 파트너십)

❖ 지원개요

-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상생대기업(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포함)과 해외에 동반진출한 협력 중소기업·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상생대기업과 해외에 동반진출한 협력 중소기업·중견기업

❖ 지원내용

- 지원상품 : 해외투자자금대출,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해외사업금융보증, 해외사업이행성보증, 수출팩토링
- 우대사항 : 정책조정률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 대출조건 : 각 여신상품별 지원조건에 따름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 처리절차 : 중소기업·중견기업 대출신청 → 상생대기업으로부터 협력 거래관계 확인 → 대출심사 → 대출승인 → 대출집행 → 사후관리

❖ 문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297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2부 : 02-3779-6304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한국수출입은행

KE 수입금융(수입자금)

❖ 지원개요

- 국민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의 수입자금을 지원

❖ 지원대상

- 국가경제의 성장, 국민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을 수입하는 국내기업 (단,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과세 물품 등 제외 / 에너지 물품은 포함)

❖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대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금액 또는 수입선급금액의 8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우대중견기업 및 연구기관의 경우 90% 이내 •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대상물품 등에 대한 과거 수입실적(개발수입 및 시설재수입 실적 제외) 기반으로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기간 6개월 : 수입실적의 90% 이내 - 대출기간 1년 : 수입실적의 60% 이내
대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수입거래 및 시설재수입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 - 단, 시설재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상의 고정자산 내용연수 이내 • 그 외 거래 : 2년 이내 • 실적기반 지원시 : 6개월, 1년
상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단, 대출기간 1년 이하인 경우에는 만기 일시상환 가능) • 개발수입거래 및 시설재수입거래 : 거치기간 3년 이내

❖ 지원절차

- 신청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 처리 절차 : 대출상담 → 신용평가 → 대출신청 → 대출승인 → 대출계약 체결 → 대출집행

❖ 문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297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2부 : 02-3779-6304

한국수출입은행

KE 수출금융(수출성장자금)

❖ 지원개요

- 물품 등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일괄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우대지원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 적용 물품 등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지원내용

- 대출금액

구분	주요내용
대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기간 6개월 : 수출실적의 8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우대중견기업의 경우 90% 이내 -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산업과 관련된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 • 대출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 : 수출실적의 5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우대중견기업의 경우 70% 이내 -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산업과 관련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 • 단, 기업별 대출한도 350억원(중소기업 250억원, 유예중소기업 350억원) 이내로 운용하고, 수출규모 등에 따라 600억원(중소기업 400억원, 유예중소기업 600억원) 까지 증액 가능
대출기간	• 6개월, 1년 이상 3년 이하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 지원절차

- 신청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 처리 절차 : 대출상담 → 신용평가 → 대출신청 → 대출승인 → 대출계약 체결 → 대출집행

❖ 문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1부 : 02-6255-5297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2부 : 02-3779-6304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한국수출입은행

KE 수출금융(수출촉진자금)

❖ 지원개요

-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거나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기술개발, 해외시장개척활동자금 및 수출기업 인수 등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수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수출기업 인수를 추진하는 국내기업, 해외판매를 목적으로 콘텐츠의 제작·공급·유통을 추진하는 기업,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 기업

❖ 지원내용

- 자금용도 : 시설투자, 수출물품의 개발 또는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해외시장개척활동, 수출기업 인수 및 제작자금 용도 등
- 대출금액 : 실소요자금의 90% 이내
- 대출기간
 - 시설투자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5년 이내
 - 기술개발, 수출기업 인수, 제작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
 - 그 외 자금용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단, 3년 이하의 대출은 일시상환 가능)
 - 거치기간 3년 이내

❖ 지원절차

- 신청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 문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297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2부 : 02-3779-6304
- 한국수출입은행 서비스산업금융부 : 02-6255-5270

한국수출입은행

KE 해외사업자금대출

❖ 지원개요

- 국내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의 설립 없이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필요한 설비의 신설·확충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지원대상

- 해외에서 사업(해외투자 제외)을 영위하는 국내기업

❖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자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자금 • 운영자금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대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자금의 80% 이내 - 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습득을 위한 대출의 경우 90%,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100% 이내
대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 그 외 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상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거치기간 3년(대출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5년, 10년 이상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7년) 이내

❖ 지원절차

- 신청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 처리 절차 : 대출상담 → 신용평가 → 대출신청 → 대출승인 → 대출계약 체결 → 대출집행

❖ 문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297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2부 : 02-3779-6304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한국수출입은행

KE 해외투자자금대출

❖ 지원개요

-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여금을 주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

❖ 지원대상

- 해외투자를 추진하는 투자예정업종에 대한 사업경력 3년 이상인 국내기업

❖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자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직접투자 •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출기간 1년 미만의 대출
대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자금의 80% 이내 - 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습득을 위한 대출의 경우 90%,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100% 이내
대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에서 사업의 특성, 자금 실소요기간을 감안한 기간
상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거치기간 3년(대출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5년, 10년 이상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7년) 이내

❖ 지원절차

- 신청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 처리 절차 : 대출상담 → 신용평가 → 대출신청 → 대출승인 → 대출계약 체결 → 대출집행

❖ 문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297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2부 : 02-3779-6304

한국수출입은행

KE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 지원개요

-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투자 또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국내기업의 해외자회사(현지법인)

❖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자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자금 • 직접투자자금 • 운영자금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대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자금의 9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100% 이내 - 운영자금의 경우 설립 5년 이상 대기업 매출액의 30%, 5년 미만 설립초기 및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한도 우대
대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 그 외 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상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거치기간 3년(대출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5년, 10년 이상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7년) 이내

❖ 지원절차

- 신청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 처리 절차 : 대출상담 → 신용평가 → 대출신청 → 대출승인 → 대출계약 체결 → 대출집행

❖ 문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 02-6255-5297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2부 : 02-3779-6304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KE 환위험관리 지원 프로그램

❖ 지원개요

- 중소기업의 환위험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금융서비스

- ① 통화전환옵션 : 대출 취급 후 대출만기 1개월 전까지 대출통화를 '외화 ↔ 원화' 또는 '외화 ↔ 여타 외화'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무상으로 부여
 - 실행절차 : 약정체결(대출승인시점) → 대출집행 → 통화전환 요청(만기 1개월전까지) → 옵션행사/통화전환 → 대출상환(전환통화)
- ② 선물환거래 : 중소기업의 수출/수입계약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hedge)함으로써 고객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
 - 실행절차 : 한도거래신청(신청서 제출) → 한도승인 및 약정체결 → 선물환거래 신청 → 선물환계약 체결 → 계약이행

- 비금융서비스

- 환위험관리 컨설팅 : 환위험관리 전문기관의 전문가가 고객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업체의 환위험을 진단하고 맞춤형 환위험관리 방안 제시
- 고객기업 대상 환위험관리 설명회 개최

- 해외투자정보

- 국제지역정보 : 해외진출에 필요한 주요 신흥국의 경제, 산업 및 투자환경 등의 정보 제공
- 산업경제정보 : 조선, 플랜트, 신재생에너지, IT, 서비스산업 등에 대한 산업정보 제공
- 해외투자통계 : 우리기업의 해외투자 현황 제공

❖ 문의

- 금융서비스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
- 비금융서비스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히든챔피언팀 : 02-6255-5293
- 해외투자정보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02-3779-6667

한국수출입은행

KE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 지원개요

-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 금융서비스·맞춤형 경영 정보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육성하여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수출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맞춤형 서비스제공
 - 금융서비스
 - “제품개발→생산→해외판매” 등 기업의 해외시장진출 전반에 걸친 맞춤형 금융 제공
 - 지원대상기업에 대해 대출금리 우대
 - 수출성장자금 취급시 수출실적 인정한도 확대
 - 맞춤형 비금융서비스
 - 기업의 성장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외부 전문 기관과 협업하여 제공
 - 성장전략코칭, 환위험컨설팅, 국제계약 법률자문,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 ※ 지속적인 사후관리
- 매년 육성기업의 경영성과 및 사업참여도를 평가하여 부진기업에 대해 선정 취소 등

❖ 지원절차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 기업신청
 - 신청자격 :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 4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이고, 수출액 20억원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 또는 월드클래스 300 사업 선정기업(단, 외감 법인에 한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
 - * 은행 지정 우대지원산업 영위 기업은 매출액 자격기준 완화 가능
 - 신청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 및 여신부점
 - 선정시기 : 선정시 모집공고를 수출입은행 홈페이지에 게시
- 심사 및 육성기업 선정
 - 기업의 기술력, 성장잠재력, CEO 역량, 재무건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망 중소기업 선정
 - 선정평가 : 히든챔피언 적합도(기술력, 성장잠재력, CEO역량) + 재무안정성

❖ 문의

-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1부 히든챔피언팀 : 02-6255-5293, 02-3779-6435

우리은행

우리 중견기업 금융지원 및 특화서비스

❖ 우리 중견기업 α 통장

- 개 요 : 중견기업 전용 입출식 금리우대 통장 출시. 단기유동자금에 대한 혜택 강화
- 한 도 : 1조원
- 대 상 : 우량 중견기업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要)
- 금 리 : 최대 0.5% (기본 0.1% + 우대 0.4%)

❖ CUBE론-X

- 개 요 : 스마트 산업단지 입주 기업과 수출입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 한 도 : 1.5조원
- 대 상 : 우리은행 자체 신용등급 BB+ 이상인 예비 중견기업, 우량 중견기업
- 금 리 : 산출금리 대비 1.5% ~ 2% 수준의 대출금리 우대

❖ 우리 소재·부품·장비기업 지원대출

- 개 요 : 소재·부품·장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해당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여
- 한 도 : 제한없음
- 대 상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대상 업종 中 신용등급 BB+(소호5)등급 이상 중견기업(중소기업 포함)
- 금 리 : 기존 우대이율 + 소재·부품·장비 특화 금리우대 신설

❖ 무소구 L/C 포페이팅

- 개 요 : 수입업체의 지급 불이행에 대해 수출기업에게 상환청구를 하지 않는 무소구 조건 상품 출시. 우량 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 대 상 : 수출 중견기업 (당행 등급 BBB 이상 외감기업)
- 특 징 : 신용장 방식 수출환어음 매입 건에 대해 인수통지 접수시 무소구 전환 (차입금 미계상)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 혁신 성장 펀드

- 개요 : 단순 대출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발굴 → 투자 → 육성을 통해 은행과 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
- 규모 : 3조원(하위 펀드 포함)

구분	직접투자	혁신(모험)펀드
주관	우리은행	우리은행, 정부
투자대상	스타트업, 벤처기업	혁신성장 중소/중견기업
투자형태	대출, 메자닌(CB, PCPS 등), 지분 투자 등	

❖ 중견기업 특화 서비스

중견기업 전담 조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지점장, RM 총 152명 • 기업영업지원팀 운영(12개) - 기업업무처리 특화 지점
글로벌 투자지원 솔루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직접투자 및 기타 자본거래 전반에 대한 컨설팅 •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등 관련법률서비스
해외진출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연계 사업 지원 • 26개국 477개 해외 네트워크 활용 해외진출 및 발전 지원
수출입 특화 금융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 서류인수시 확정지급보증 발행 • 연지급신용장 추심 후 매입전환 확대 및 환가로 우대

❖ 문의

- 우리은행 홈페이지 : www.wooribank.com
- 우리은행 기업고객부 : 02-2002-3926, 02-2002-3472

신용보증기금

M&A 보증

❖ 지원개요

- 기업이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병, 주식인수 및 영업양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

❖ 지원대상

- 인수기업 및 피인수기업은 다음과 같이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상법상 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개인기업 및 협동조합으로 한정

- 합병 : 상법상 회사간 합병만 인정하고, 피인수기업이 채무초과기업*인 경우는 제외
- 주식인수 : 피인수기업이 주식회사인 경우에만 가능
- 영업양수 : 피인수기업이 채무초과기업인 경우는 제외
- * 기업의 총부채가 총자산을 초과하여 기업의 순자산이 부의 상태인 기업

- 인수기업 및 피인수기업이 관계기업이거나 신보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보증금지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에 해당할 경우 보증대상기업에서 제외

※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을 보증대상기업으로 운용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보증대상채무
 - 인수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M&A 소요자금(피인수기업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M&A 대금과 중개기관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포함)을 차입하는데 따른 대출금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M&A에 소요되는 자금에 한정

- 피인수기업과 계약을 통하여 진행되는 국내기업간 M&A
- 경영권 획득이 수반되는 합병, 주식인수 및 영업양수
- 피인수기업의 기술, 자산 등을 활용하여 최소한 1년 이상 영업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M&A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 보증한도 및 우대사항

구분	주요내용
보증한도	•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이내에서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운용 ① M&A 소요자금의 60~80%(인수기업의 미래성장등급별로 차등 적용) ② 인수기업 자기자본의 3배 ③ 인수예정인 피인수기업 지분에 대한 평가금액
우대사항	• M&A보증 금액은 장기, 고액보증의 기준이 되는 금융성 운전자금에서 제외 등

❖ 문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 지원개요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외상으로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한 보험

❖ 지원대상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가입 제외 대상

- 다음과 같은 기업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부실처리한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등
- 다음과 같은 기업에 대한 채권(외상매출금+받을어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관계기업, 해외소재기업, 보험인수심사일 현재 매입채무의 변제를 연체중인 기업, 신용도 미달 기업 등
-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은 '보험계약 제외 업종'으로 운용함
 - 도박·게임, 사치·향락, 주류·담배 관련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보험인수 20조 2천억원으로 운용('20년 기준)
 - 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보험인수를 통해 기업의 외상 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구매자의 폐업, 이행지체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 또는 어음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 가입금액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
 - 단, 실제 상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매출채권(또는 어음)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예) 자금유통을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 실거래가 없는 가공의 매출채권
- 지원한도
 - 매출채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0억원(어음보험 포함)
 - 어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억원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 지원절차

-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을 통해 지원
- 제출서류
 - 매출채권보험 : 매출채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4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근보험), 세금계산서 사본(개별보험),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 어음보험 : 어음보험 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어음 및 세금계산서 사본,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

신용보증기금

시설자금보증

❖ 지원개요

- 사업의 확장, 신설 등을 위해 사업용 공장, 고정적인 기업 설비의 취득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지원을 위한 보증

❖ 지원대상

- 사업장 신축, 분양 등 시설 및 설비를 준비중인 일반기업

❖ 지원내용

구분	내용
보증대상채무	토지, 건물, 사업용 공장, 기계 등의 구입 및 조성에 사용되는 시설자금에 대한 대출금
보증한도	소요자금 범위내 (최고 100억원)
보증비율	준공 또는 시설취득 후 보증금액 전액해지조건의 경우 100%까지 가능
보증료	보증금액 전액해지조건의 시설자금은 최대 0.2%p 차감조정 가능하며, 50%이상 해지조건의 시설자금은 0.1%p 차감
보증기간	금융기관 시설자금 대출기간 이내

❖ 문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신용보증기금

유동화회사보증

❖ 지원개요

- 기업이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제도

❖ 지원대상

- 다음의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는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A 감사보고서 보유 : 신보의 미래성장성등급 K10 이상 • CPA 감사보고서 미보유 : 신보의 미래성장성등급 K9 이상
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등급 BB- 이상

❖ 제도개요

-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유동화회사(SPC)가 매입하여 유동화자산(기초자산)을 구성한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 발행
 - 유동화증권은 선순위증권과 후순위증권으로 구분 발행
 - 선순위증권에 대하여 신보가 원리금에 대한 신용보증 제공
- 신보의 보증으로 AAA등급으로 상향된 선순위증권은 직접금융시장에 매각하고, 후순위 증권은 회사채 발행 기업이 매입

❖ 지원한도

- 신용등급별 최고한도

(단위 : 억원)

중견기업	회사채등급	BBB이상		BBB-	BB+	BB	BB-	B+
	편입한도	350		300	250	170	100	50
중소기업	미래성장성등급	K3이상	K4,K5	K6	K7	K8	K9	K10
	편입한도	200	170	140	80	50	40	30

● 매출액, 자기자본 및 차입금 한도

매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 및 유망·특화서비스기업 : 추정매출액의 1/3~1/4 이내 그 밖의 업종 영위기업 : 추정매출액의 1/4~1/6 이내
자기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채등급 BB 이하인 기업(미래성장기업군Ⅲ군)의 경우 자기자본의 3배 이내
차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번 편입금액을 포함한 총 차입금이 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범위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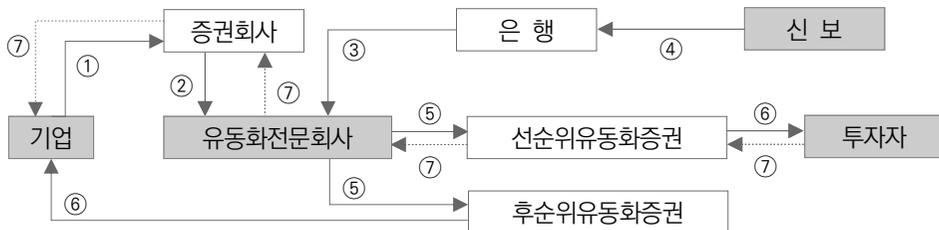
❖ 발행금리

- 중견기업 발행금리 : 신용등급별로 2.46(BBB+등급)~4.01%(BB-등급) 수준
 - 상기 금리수준은 '20.04.01.일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한 시가평가수익률 기준으로 발행시점의 수익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후순위채 연율 0.5~1.5% 범위내에서 별도 인수

❖ 지원절차

- 중견기업은 유동화보증센터를 통해 편입 신청

❖ 구조



〈세부 지원절차〉

- ①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증권회사(자산보유자)가 인수(매입)
- ② 증권회사는 다수 회사채를 집합(Pooling)하여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
- ③ 은행이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선순위증권에 대해 신용보강
- ④ 신보가 은행의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약정에 신용보증
- ⑤ 유동화전문회사가 선·후순위증권 구분 발행
- ⑥ 선순위증권은 민간투자자에게 매각, 후순위증권은 회사채 발행기업이 인수
- ⑦ 유동화증권 매각자금으로 기업에 자금 지원

❖ 문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신용보증기금

이행보증

❖ 지원개요

-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용역계약을 위한 계약(입찰 포함)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각종 보증금의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 지원대상

- 중소, 중견 및 대기업

❖ 지원내용

- 보증대상채무

상품	대상채무
이행입찰	경쟁입찰시의 『입찰보증금』의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이행계약	계약체결에 대한 『계약보증금』의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이행차액	예정가와 낙찰가 차액에 대해 부담하는 『차액보증금』의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이행지급	발주처가 공급하는 선금금 등의 지급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급보증금』의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이행하자	일정기간동안 하자보수 또는 보완책임을 부담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 보증한도 : 최고 70억원

상품	보증금액	한도금액
이행입찰	입찰명세서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 또는 입찰금액에 대한 입찰보증금률 해당액	입찰금액
이행계약	계약(예정)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률 해당액	계약금액의 30%
이행차액	예정금액 - 낙찰금액(계약금액)	【예정가격 - 낙찰(계약)금액】× 200%
이행지급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증금률 해당액	계약금액의 30%
이행하자	주계약에 따른 지급보증 소요금액	주계약에서 정한 금액과 운전자금 보증 한도 중 적은 금액

- 보증비율 : 100%(고정비율)
- 보증료
 - 이행입찰보증 0.1%(최저보증료 5,000원), 이행계약·차액·하자보증 0.6%(최저보증료 5,000원)
 - 이행지급보증은 일반보증과 같이 미래성장성등급별 보증료율이 적용됨
- 보증상대처
 - 정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회, 대법원,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및 그 소속기관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

❖ 문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홈페이지 : www.kodit.co.kr)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 지원개요

-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해 드림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상시종업원 1,000인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000억원 이하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 * 상기대상기업중 “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한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만, 기업 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 및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에 대하여는 상위 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만 제외

❖ 지원내용

분야	주요내용
대출보증	금융기관 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
어음보증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담보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
이행보증	기업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시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용
무역금융보증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전자상거래보증	기업간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자금에 대한 보증
구매자금용보증	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금융방식에서 구매기업에 직접금융을 제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토록하는 제도로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에 대한 보증

❖ 지원절차

- 접수기간 : 연간 상시 접수

- 접수방법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또는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단계별	취급자	주요 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 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 제출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 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 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 조사 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 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 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 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 영업점 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문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기술보증기금

혁신성장산업 지원

❖ 지원개요

-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 기업 육성을 위해 혁신성장 산업 혁명 관련 사업(기술) 영위기업을 우대 지원

※ 혁신성장산업의 분야

‘혁신성장산업’이란 정부에서 육성하고자 발표하거나, 시장수요와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선정된 것으로, ‘혁신성장 공동기준’에서 정하는 ‘9대 테마, 45개 분야, 300개 품목’을 말함

* 9대 테마 : 첨단제조·자동화, 화학·신소재,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건강·진단, 정보통신, 전기·전자, 센서·측정, 문화·콘텐츠 테마

❖ 지원대상

분 야	대 상 기 업
인더스트리4.0 퍼스트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oT, AI,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기술) 영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 또는 펍리스 기업 - (일반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B이상
4.0스마트팩토리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도입 및 공급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신청기업(또는 기선정)으로 확인된 기업, 자체 구축기업으로 구축수준을 확인받은 기업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에 납품이력 보유기업(예정포함)

❖ 지원내용

분 야	주 요 내 용	우 대 사 항
인더스트리4.0 퍼스트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상품 대비 지원조건 및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우수기술을 보유한 핵심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비율 : 핵심기업 95%, 일반기업 90% • 보증료 : 핵심기업 0.3%p 일반기업 0.2%p 감면
4.0스마트팩토리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전과정(신청 및 선정 단계)에서 ‘공급기업’과 ‘도입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비율 우대(90%~100%) • 보증료 0.3%p감면~고정0.5%p

❖ 지원절차

- 접수기간 : 연간 상시 접수

- 접수방법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또는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단계별	취급자	주요 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 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 제출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 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 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 조사 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 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 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 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 영업점 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문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보부사채 발행지원

❖ 지원개요

- 캠프코의 신용공여를 통해 자체적인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의 담보부사채 발행을 지원

❖ 지원대상

-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담보부사채 발행기업
 - 재무구조개선 : 기업의 유동성비율 또는 자기자본비율을 증대시키거나 부채규모를 줄이는 등의 일련의 과정(부채상환 목적의 자금용도 포함)
 - 담보부사채 :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라 발행한 회사채

❖ 지원내용

- 지원구조
 - 담보부사채 발행시 신탁부동산의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해 회사채에 대한 부분 신용 공여(지급보증)를 제공
 - 캠프코 신용공여분은 AAA등급으로 발행
- 신용공여한도
 - min[300억원, 회수가능액의 80%, 사채 발행금액의 80%]
- 보증수수료
 - 발행기업의 무보증사채 발행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결정

신용등급	BBB+ 이상	BBB0	BBB- 이하
수수료율	0.3%	0.5%	1%

❖ 문의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투자금융처 : 051-794-3935
- 홈페이지 : www.kamco.or.kr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

❖ 지원개요

- 중견·중견후보기업이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도모

❖ 지원대상

- 중견(후보)기업 및 재직자

❖ 지원내용

- 교육비 75~100%이내 지원(중견기업 AI 디지털 혁신 포럼은 무료)

구 분	과 정		주요 내용
① 글로벌 기술혁신 역량 강화	• 해외시장 진출 역량 강화	해외시장 개척	전문인력 부족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개별기업 여건 및 역량에 따른 맞춤형 교육
		글로벌 인재 역량강화	해외주재원 역할 및 파견예정 지역의 효과적인 현지 사업관리를 위한 해외진출국 사례 중심의 교육
	• 지식재산권 역량강화		중견기업 지재권 현안이슈를 발굴 하는 등 문제 해결형 교육 제공 및 사례 중심 교육 진행
② 지속성장 경영역량 강화	• 준법경영 실무역량 향상		기업 경영과 관련된 노사관계, 불공정거래 행위, 환경 등 각종 규제 이슈 중심의 교육운영
③ 리더십 역량강화	• 중견기업 AI 디지털 혁신 포럼		4차 산업혁명·디지털 격변 시기 대응을 위해 기술 전문가가 아닌 경영자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의 개념, 기술, 전략을 중점 논의

❖ 지원절차

- 홈페이지를 통한 개별 신청(<http://academy.fomek.or.kr>)

❖ 문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업1팀 : 02-3275-2107

금
용

고
용

수
출

기
술
혁
신

기
타

병역지정업체(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인원배정

❖ 지원개요

- 중견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선정된 기업에 제조·생산 인력을 일정 군 복무 기간 동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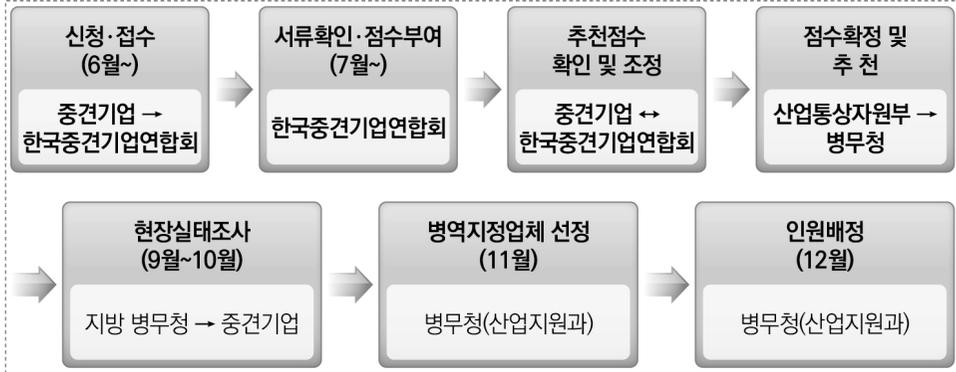
❖ 지원대상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 법인 (공업, 광업, 에너지 분야)
- * 동일법인내 다수의 공장(사업장)이 있는 경우 한 개 공장(사업장)만 신청가능

분 야		요 건	
		공통사항	
공 업	제조업	※ 아래항목 모두 충족 ① 선정희망 공장 및 사업자등록이 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10인이상 기업 ② 동일법인내 다른 공장 또는 사업장이 병역 지정업체로 미선정된 기업 ③ 공장(사업장)의 제조·사업시설이 타 기업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기업 ④ 제조·매출 실적이 있는 기업	•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섬유, 시멘트·요업, 신발, 생활용품 업종
	통신 기기		• 통신기기 제조업종
	정보 처리 관련업		※ 아래사항 모두 충족 •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된 기업 • S/W개발이 주된 사업인 기업으로 S/W개발 실적이 전체 매출의 30% 이상인 기업
	광업	• 광물(석탄 제외)의 채굴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이상 기업 • 선광·제련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연간 1만 2천톤 이상의 석탄 채굴기업	
	에너지	•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원절차

- 신청기간 : 6월 중
- 신청방법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주소 : (04151)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79 (대흥동, 상장회사회관) 4층



❖ 문의

- 신청접수 및 추천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02-3275-2210)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 병무청 (042-481-2813)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

❖ 지원개요

- 청년 석·박사, 기술전문 경력인을 R&D인력 부족문제를 겪고 있는 초기 중견기업에 공급함으로써 산업성장 촉진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매출 3천억 미만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견기업
 * 소재부품장비 6대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자전기, 기계금속, 기초화학), 산업통상자원부 3대 신산업분야(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 신청자격

구분	자격
청년 석·박사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자('20년 8월 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청년기준 : 만 19~39세)
기술전문 경력인	이공계 출신의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 연구경력이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자

❖ 지원내용

- 초기 중견기업이 청년 석·박사 및 기술전문 경력직 연구인력 채용 시 R&D인력 인건비를 최대 3년간 지원

구분	①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지원		②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석사	박사	기술전문 경력 연구인력
정부지원액/年	계약연봉 대비 40% 이내 지원		
최소 기준연봉	3,400만원 이상	3,600만원 이상	
지원한도	1,600만원	2,000만원	2,800만원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성장팀 : 02-6009-3541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 : 044-203-437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 지원개요

- 중견·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 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소·중견기업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중견·중소기업 근로자(핵심인력)

❖ 지원내용

- 가입 기간 : 5년(최초 가입시), 3~5년(재가입시 선택가능)
- 공제 납입금 : 사업주과 핵심인력이 5년간 2,000만원 이상(매월 34만원 이상) 공동적립 -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 최소 가입금액 : 5년간 2,000만원 이상
- 공제 금리 : 2.09% (2019년 2분기 이율 기준, 분기별 변동)

※ 가입혜택

- (중소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 인정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
- (중견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 인정
- (핵심인력)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의 근로자소득세 중소 50%, 중견 30% 감면

❖ 지원절차

- 지역본(지)부를 방문 또는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

❖ 문의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

❖ 지원개요

- 자산형성 방식의 청년 직접지원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로 취업을 촉진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인적자원 투자여지가 있고 경쟁력 있는 기업의 우수인재 채용과 장기 고용유지를 지원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및 '채용 기업'
 - 청년 : 만 15~34세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이면서,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총 12개월 이하인 청년
 - 기업 : [2년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제외)
[3년형]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 「부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리기업'만 가입 가능

❖ 지원내용

- 가입기간 동안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 [2년형] 2년 근속 시, 1,600만원 목돈 마련
 - ① (청년 본인)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 납입(매월 12.5만원)
 - ② (정부→청년) 취업지원금 2년 900만원 적립(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분할적립)
 - ③ (기업→청년) 정부로부터 채용유지지원금 2년 500만원 지원받아, 그 중 청년 장기 근속 기여금 2년간 400만원 적립(기업 순지원금 100만원)
(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분할적립)
 - [3년형] 3년 근속 시, 3,000만원 목돈 마련
 - ① (청년 본인) 청년 본인은 3년간 600만원 납입(매월 16.5만원)
 - ② (정부→청년) 취업지원금 3년 1,800만원 적립
(1·6·12·18·24·30·36개월 등 3년간 7회 분할적립)

- ③ (기업→청년) 정부로부터 채용유지지원금 3년 750만원 지원받아, 그 중 청년 장기
 근속 기여금 3년간 600만원 적립(순지원금 150만원)
 (1·6·12·18·24·30·36개월 등 3년간 7회 분할적립)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에서 참여신청 → 승인 및 선발(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금
용

고
용

수
출

기
술
혁
신

기
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지원개요

- 청년근로자, 중견·중소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 시 성과 보상금 형태로 3천만원 이상(세전)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 지원대상

- 중견·중소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소·중견기업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중견·중소기업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15세~34세 이하) 근로자(핵심인력)

❖ 지원내용

- 가입기간 : 5년
- 공제 납입금
 - (청년) 5년간 720만원 이상 적립 (최소 월 12만원 × 60개월)
 - (기업) 5년간 1,200만원 이상 적립 (최소 월 20만원 × 60개월)
 - (정부) 3년간 최대 1,080만원(정액) 적립 (3년간 7회 분할적립)

※ 가입혜택

- (중소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 인정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
- (중견기업)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 인정
- (핵심인력)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의 근로자소득세 중소 50%, 중견 30% 감면

❖ 지원절차

- 지역본(지)부를 방문 또는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

❖ 문의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 지원개요

-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소상공인,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

〈제외대상〉

- 근로자 참여 조건(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은 없음. 단, 아래 근로자는 참여 제외
 - 병의원 소속 의사,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세무사/노무사, 법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변리사,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위 근로자 외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는 참여가능)
-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은 참여 제외
단,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은 대표자만 참여 제외

❖ 지원내용

- 참여기업
 - (전체)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성과공유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 *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혜택 : 정부/지자체/은행 등 각종 지원사업 우대
 - * 여가친화인증(문화체육관광부) 혜택 : 정부포상, 인증기업 홍보, 문화예술 향유기회 등 제공
 - * 성과공유제(중소벤처기업부) 혜택 : 정부사업 우대, 기업홍보 등 제공
 -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노동부) 혜택 : 정기근로감독 면제, 인프라구축비 지원, 금융 우대 등
 - (우수 참여기업*) 정부포상, 차년도 우선 선정, 우수사례집 발간, 기업홍보 등
 - * 우수 참여기업 선정 기준은 추후 공지(적립금사용 실적, 휴가문화개선 실적 등)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 참여근로자

- 국내여행경비(휴가비) 지원*, 상품할인 및 이벤트 제공, 전용휴양소 운영 등

- * 휴가비 : 정부 10만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원 / 총 40만원(적립금) 조성

- * 사용기간 : 2020.4월 (적립포인트 부여시점) ~ 2021. 2월

❖ 지원절차

- (기업) 참여신청 → (공사) 참여기업 확정 → (기업) 기업/근로자 분담금 일괄 입금 및 근로자 정보 등 제출 → (공사) 정부지원금 추가적립 및 휴가# 온라인몰에 40만원 포인트 부여 → (근로자) 휴가# 온라인몰에서 포인트 사용 도식으로 표현

- * 휴가# 온라인몰(PC/모바일) : 숙박, 입장권, 교통, 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된 사업 전용 온라인몰(세부사항은 사업 홈페이지 참조)

- 신청기간 : 2020. 4.20(월) ~ 모집완료시까지 ※분담금 입금완료 기준

- 신청방법 : 기업 단위 온라인(PC) 신청 (사업 홈페이지 : vacation.visitkorea.or.kr)

- *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 참조

❖ 문의

- 전담 지원센터 : (전화) 1670-1330 / (이메일) vacation.benepia@sk.com

-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 > '자주하는 질문' 참조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병행

❖ 지원개요

-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육성을 위해 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게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체계적 교육 훈련을 제공하여 기업맞춤형 인재육성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해당 분야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

❖ 참여유형

- **(재직자 단계)** 기업 자체적으로 현장외훈련 수행 여부에 따라 단독기업형, 공동훈련센터 형으로 구분하여 참여

구분	주요 특징	관리주체	Off-JT	OJT
① 단독기업형	기업이 해당 기업에서 활용할 인재를 직접 양성	기업	기업 또는 외부 교육훈련기관* (위탁계약 별도 체결)	기업
② 공동훈련 센터형	공단이 승인한 외부 전문훈련기관 (공동훈련센터)에서 현장외훈련(Off-JT)을 제공하고, 기업에서 현장훈련(OJT) 실시	기업, 공동훈련 센터	공동훈련센터	기업
③ P-tech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수료자를 대상으로 폴리텍·전문대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중·고급 수준의 기술 훈련과정	기업, 공동훈련 센터	공동훈련센터	기업

- **(재학생 단계)** 학습근로자의 신분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모두 공동훈련센터 형으로만 참여 가능

재학생 대상	명 칭	주요 내용
<고교 단계> 특성화고 2~3학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직업교육+도제훈련 통한 현장성 제고
<고교+전문대 단계>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유니테크	전문대 중심 고교(2년)+전문대(1년반)과정 통합 운영 * 단,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유니테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 기업 모집 중단
<전문대 단계> 전문대 재학생	전문대 재학생단계	전문대 재학생(졸업반)을 대상으로 하는 일학습병행
<대학교 단계> 4년제 대학 3~4학년	IPP형 일학습병행	3~4학년 학생이 학기제(4~6月) 방식으로 일학습병행 참여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 지원내용

● '19.9.2 이후 시작한 훈련과정 적용기준(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제외)

항목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비고																												
과정개발 및 학습도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당 2개 직무까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정개발시 과정당 150만원 학습도구 개발 과정당 60만원 																												
훈련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가×시간×인원×지원율(-50~140%) - 지원율 : ①훈련대상 + ②훈련종류 + ③훈련직종 + ④기업규모 + ⑤훈련장소(Off-JT)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①훈련대상</th> <th colspan="2">②훈련종류</th> <th colspan="2">③훈련직종</th> <th colspan="2">④기업규모</th> </tr> <tr> <th>재학생</th> <th>재직자</th> <th>산업형</th> <th>기업형</th> <th>우대 직종*</th> <th>기본 직종</th> <th>중소 기업</th> <th>대기업</th> </tr> </thead> <tbody> <tr> <td>+50%</td> <td>-</td> <td>+20%</td> <td>-20%</td> <td>+30%</td> <td>-</td> <td>-</td> <td>-30%</td> </tr> </tbody> </table>		①훈련대상		②훈련종류		③훈련직종		④기업규모		재학생	재직자	산업형	기업형	우대 직종*	기본 직종	중소 기업	대기업	+50%	-	+20%	-20%	+30%	-	-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가 : OJT 4,000원 Off-JT 6,500원 대기업 :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기준 훈련장소 : 공동훈련센터에서 Off-JT시 ± 40% 				
	①훈련대상		②훈련종류		③훈련직종		④기업규모																								
	재학생	재직자	산업형	기업형	우대 직종*	기본 직종	중소 기업	대기업																							
+50%	-	+20%	-20%	+30%	-	-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직종 중 우대직종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국가기간·전략 산업 직종 (NCS 중분류 27개 기준)</th> </tr> <tr> <th>▶(기간산업)</th> <th>▶(전략산업)</th> </tr> </thead> <tbody> <tr> <td>02_철도운전·운송, 02_토목, 03_건축, 05_조경, 01_기계설계, 02_기계가공, 03_기계조립·관리, 05_기계장치설치, 06_자동차, 08_조선, 10_금형, 01_금속재료, 01_섬유제조, 01_전기, 03_전자기기 개발, 01_정보기술, 02_통신기술, 03_방송기술, 01_인쇄·출판, 05_에너지·자원, 06_산업안전</td> <td>02_디자인, 03_문화콘텐츠, 02_토목, 03_건축, 04_플랜트, 01_기계설계, 02_기계가공, 03_기계조립·관리, 05_기계장치설치, 06_자동차, 08_조선, 01_금속재료, 01_전기, 03_전자기기개발, 01_정보기술, 02_통신기술, 02_공예, 05_에너지·자원, 01_농업</td> </tr> </tbody> </table>		국가기간·전략 산업 직종 (NCS 중분류 27개 기준)		▶(기간산업)	▶(전략산업)	02_철도운전·운송, 02_토목, 03_건축, 05_조경, 01_기계설계, 02_기계가공, 03_기계조립·관리, 05_기계장치설치, 06_자동차, 08_조선, 10_금형, 01_금속재료, 01_섬유제조, 01_전기, 03_전자기기 개발, 01_정보기술, 02_통신기술, 03_방송기술, 01_인쇄·출판, 05_에너지·자원, 06_산업안전	02_디자인, 03_문화콘텐츠, 02_토목, 03_건축, 04_플랜트, 01_기계설계, 02_기계가공, 03_기계조립·관리, 05_기계장치설치, 06_자동차, 08_조선, 01_금속재료, 01_전기, 03_전자기기개발, 01_정보기술, 02_통신기술, 02_공예, 05_에너지·자원, 01_농업																								
국가기간·전략 산업 직종 (NCS 중분류 27개 기준)																															
▶(기간산업)	▶(전략산업)																														
02_철도운전·운송, 02_토목, 03_건축, 05_조경, 01_기계설계, 02_기계가공, 03_기계조립·관리, 05_기계장치설치, 06_자동차, 08_조선, 10_금형, 01_금속재료, 01_섬유제조, 01_전기, 03_전자기기 개발, 01_정보기술, 02_통신기술, 03_방송기술, 01_인쇄·출판, 05_에너지·자원, 06_산업안전	02_디자인, 03_문화콘텐츠, 02_토목, 03_건축, 04_플랜트, 01_기계설계, 02_기계가공, 03_기계조립·관리, 05_기계장치설치, 06_자동차, 08_조선, 01_금속재료, 01_전기, 03_전자기기개발, 01_정보기술, 02_통신기술, 02_공예, 05_에너지·자원, 01_농업																														
<p>현장훈련 (OJT) 비용</p> <p>현장외훈련 (Off-JT) 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JT단가(4,000원)×시간×인원×지원율(①+②+③+④) OffJT단가(6,500원)×시간×인원×지원율(①+②+③+④ ±⑤) * 공동훈련센터형(단독기업형 외 모든 유형)일 때 ⑤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별 지급. (단, 2020.1.1.부터 능력단위별로 내부평가를 Pass했을 경우 계획훈련 시간에, Fail했을 경우 출석시간에 해당하는 훈련비 지원. 평가 미 실시 또는 요건 불충족시 지원하지 않음) 연 최대 900시간 한도로 지원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별) 1인당 20만원 (종료시) 일괄지급 : 외부평가 합격자 1인당 [월20만원×훈련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훈련실시 기간 동안 지원 최대 360만원 한도로 지원 신청일 시점에 학습기업에 재직 중인 학습근로자만 산정 																												
기업현장교사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별 최대 훈련 학습근로자 수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학습 근로자수</th> <th>1명</th> <th>2명</th> <th>3명</th> <th>4명</th> <th>5명</th> <th>6명</th> <th>7명</th> <th>8명</th> <th>9명</th> <th>10명</th> <th>11명</th> <th>12명</th> <th>13명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월별 지급액</td> <td>33.3</td> <td>41.6</td> <td>50</td> <td>58.3</td> <td>66.7</td> <td>75</td> <td>83.3</td> <td>91.6</td> <td>100</td> <td>108.3</td> <td>116.6</td> <td>125</td> <td>133.3</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과 재학단계 구분하여 각각 수당 지급 		학습 근로자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이상	월별 지급액	33.3	41.6	50	58.3	66.7	75	83.3	91.6	100	108.3	116.6	125	13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당자 연수 지원(인원 한도 없음) 기업현장교사 심화교육 이수시 자격수당 추가 지급(월 10만원)
학습 근로자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이상																		
월별 지급액	33.3	41.6	50	58.3	66.7	75	83.3	91.6	100	108.3	116.6	125	133.3																		
HRD담당자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25만원 정액 지급 																														
전담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만원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기관에 지원 																												
숙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평균 5시간 이상 Off-JT를 실시하고 숙식을 제공하거나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 식비는 1일 5,000원까지, 숙식비는 1일 14,000원까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330,000원 한도 고교재학생단계 학습근로자의 경우 미지원 																												

※ 세부 지원내용은 교육훈련과정 구상 내용에 따라 다르며, 향후 제도 변경 등에 따라 지원 기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절차

- 모집시기 : 연중 상시('20.1.1. ~ 12.31.)



● 신청방법

- (단독기업형) HRD-Net(직업훈련포털) 외부행정시스템에 접속 후, 일학습병행 탭 - [참여신청서(단독)] 항목을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 * 신청서 작성완료 후 제출시 자동으로 관할 공단 지부·지사로 송부
- (공동훈련센터형 및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에 참여 중인 공동훈련센터 또는 (학교) 사업단과 협약을 우선 체결한 후, 협약기관의 지원 하에 신청서 작성

❖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기획부 : 052-714-8507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 1644-8100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고용안정장려금(위라벨일자리 장려금)

❖ 지원개요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 지원대상

- 임금감소액 보전금 : 모든 사업주
-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 대체인력 인건비 : 모든 사업주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①부동산업(68), ②일반유흥 주점업(56211), ③무도유흥 주점업(56212), ④기타 주점업(56219), ⑤기타 gambling 및 베팅업(91249)]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요건

- ① 소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지원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최근 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1시간 이상 단축
 - 근로자가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소 2주 이상 전환
 - 4대보험에 가입하고,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함 (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주 30시간 이하)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연장근로는 월 20시간 이내

②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대상 근로자의 대체인력 고용 인건비 지원

- ①의 요건을 만족하는 단축 근로자에 대하여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간 고용 유지
- 대체인력 고용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시에는 고용 관계 종료시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 제한(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단, 대체인력보다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 아님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 지원내용

- 임금감소액 보전금 : 임금감소 보전 금액 범위 내에서 다음 금액을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지원(대체인력의 인수인계기간 최대 2개월 추가 지원)(사업주 통한 근로자 지원)
 - 주15~25시간 : 월 최고 40만원
 - 주25~35시간 : 월 최고 24만원
-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해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정액) 추가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대상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체 인력 인건비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임금의 80% 한도)

※ 지원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단, 대체인력은 외국인도 지원대상임
-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금
용

고
용

수
출

기
술
혁
신

기
타

고용안정장려금(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개요

-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확대하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고용 문화를 만드는 기업에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내용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활용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
 - * 지원인원한도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단, 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지원)

기준	1주당 지급액		연간 총액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10만원	5만원	520만원	260만원

- 지원요건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내용을 규정할 것
 - ※ 선택근무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필요
 -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통상 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하여야 함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 지원개요

- 일하는 장소가 유연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택·원격근무를 시작하는 기업에 인프라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재택·원격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이행을 위해 아래 표(인프라 구축비 지원대상 시설)의 지원대상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

종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
시스템 구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웨어, 원격접속,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 취업규칙 변경, 제도 도입 컨설팅 비용 • 인사담당자 교육·훈련 비용 • 클라우드 사용료, 인터넷 통신료 등 	직접지원

* PC, 노트북 등 근로자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아래의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지원금 구분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5/10
근무혁신 인프라	근무혁신 우수기업 SS등급	8/10
	근무혁신 우수기업 S등급	6/10
	근무혁신 우수기업 A등급	5/10

❖ 지원절차

- (제출서류) 고용안정장려금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 견적서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

❖ 지원개요

-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 증가액·간접 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①부동산업(68), ②일반유흥 주점업(56211), ③무도유흥 주점업(56212), ④기타 주점업(56219), ⑤기타 갬블링 및 베틱업(91249)] 제외
- 동 사업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촉진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기업

● 지원요건

-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비정규직 근로자(단, 기간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고령자 파견 등의 경우 2년 초과자도 포함), 또는 주로 하나의 사업(또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 처우를 개선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최저임금의 110% 이상 지급
-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6,013명 (예산 181억원)
- 지원 수준 :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와 간접노무비 30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월 9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

- 인원 한도 :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수의 120% 한도. (단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인)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및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 지원개요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 출산 전후휴가·육아휴직등 기간 중 대체 인력 활용을 촉진하여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및 고용안정 도모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단, 육아휴직부여 간접노무비 지원 시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제외)

❖ 지원내용

- 지원요건
 - 1) 육아휴직 등 부여 시 간접노무비 지원 요건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 2) 대체인력 지원 요건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 동 휴가·휴직 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 * 다만, 동 휴가·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2018.7.1. 이후 동 휴가·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부터 적용)
-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지원수준

1) 간접노무비 지원

- 해당근로자 1인당 월 10~40만원 지원

지원유형	지원대상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대규모기업	월 10만원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 육아휴직 부여할 경우 10만원 추가지원(1호 인센티브)

2)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인수인계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원
-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금
용

고
용

수
출

기
술
혁
신

기
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 지원개요

- 여성가장·장애인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취업 취약자의 고용촉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경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한함)
- 지원 요건
 - 1)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구직등록이 유효한 실업자를 고용
 -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섬지역 거주자
 - 2) 구직등록은 고용센터(워크넷)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하여야 함
 -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고령자 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 3)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원내용

- 지원수준 :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유형	회차별지원액 (6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180만원	36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에서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일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수를 제외한 인원수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044-202-7218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금
용

고
용

수
출

기
술
혁
신

기
타

고용창출장려금(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 지원개요

-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

❖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국내복귀기업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후 3년 이내인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증가근로자수 = (사업 시행 후 월평균 피보험자수①)-(사업 시행 전 월평균 피보험자수②)
 - ① 사업주가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매 3개월 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피보험자수
 - ②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피보험자수

❖ 지원내용

- 지원수준 : 증가 근로자수 1인당 월30~60만원 지원

유형	회차별 지원액(3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180만원	720만원
중견기업	90만원	36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100명 이내 지원

- 지급기간 및 주기 : 2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월할 계산하지 않음)

❖ 지원절차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 적합직무)

❖ 지원개요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로 고용한 기업을 지원

❖ 지원대상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 요건
 - 1)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 2)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3)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4) 근로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 지원내용

- 지원수준 :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40~80만원 지원

유형	회차별지원액 (3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240만원	960만원
대규모기업	120만원	48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피보험자수의 30%로 제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지급 기간 및 주기 :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월할 계산하지 않음)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금
용

고
용

수
출

기
술
혁
신

기
타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 지원개요

- 주 근로시간 단축*,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일자리 순환제 도입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를 지원

* 근로기준법 개정(법 제15513호)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업 및 조기단축 기업의 지원을 위해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 신설('18년 7월)

❖ 지원대상

- 아래 4가지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기업

교대제 도입 확대	•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다만, 직전 1년 이내 시행하였던 교대제로 환원하는 경우는 제외)
실근로시간 단축제	• 실근로시간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보다 단축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간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전체 근로자의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휴일 근로시간 포함)이 2시간 이상 단축
주근로시간 단축제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18년 7월 신설)
일자리 순환제	•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거나 30일 이상의 안식휴가를 부여하는 “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사업주에게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증가근로자 인건비*), 연장근로시간이 감소된 기존 근로자의 임금감소액의 일부(임금보전비**)를 지원

* 증가한 근로자수 1인당 월 40만원~월 100만원 (1~2년간)

** 1명당 월 최대 40만원까지 (1~2년간)

- 기타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용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설비투자비의 일부(설비 투자비 용자*) 지원

* 총 투자비의 2/3 범위 내에서 최대 10억원(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이율은 우선지원대상기업 1%, 대규모기업 2%)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금
용

고
용

수
출

기
술
혁
신

기
타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청년 추가고용)

❖ 지원개요

-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사업주
 -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 지원요건

-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연말까지 다음과 같이 청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2019년 기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임
 '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함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규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함
-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 (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수로 나누어 산출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 * 30인 미만 기업은 1번째 채용 청년,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장려금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방문 신청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 관련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

❖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 044-202-7442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금
용

고
용

수
출

기
술
혁
신

기
타

장년고용안정지원금(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 지원개요

-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년 도달 근로자 고용연장 제도 도입 추진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요건

기업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제도로써 3가지 유형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 이상 재고용(재고용)
근로자	정년 도달일 직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

*다만, ① 해당 사업에서 정년의 도달일 직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1년 미만인 사람, ②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④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⑥ 월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 또는 월 임금이 6,860,000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당월에 지원제외)

❖ 지원내용

-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20.1.1.)로부터 최대 2년

❖ 지원절차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기술보증기금

일자리창출기업 우대지원

❖ 지원개요

-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신성장산업 등에 중점 보증 지원하고, 기업의 신규인력 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제도

❖ 지원대상

구분	분야	대상기업
고용창출 (Track1)	점핑잡 (Jumping-Jo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으로 1년전 대비 고용인원이 20% 이상 증가한 기업
	쉐어링잡 (Sharing-Jo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전환) 최근 1년 이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2명 이상 전환한 기업 • (여성고용) 최근 1년 이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기업 • (장애인고용)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을 추가로 고용한 기업 • (마이스터고 등 고용) 최근 1년 이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추가로 고용한 기업 • (지방고용) 주사업장이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이외)에 소재하고 과거 1년전 대비 3명 이상 고용이 증가한 기업 • (일자리안정)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혜받음 기업
고용유지 (Track2)	베스트잡 (Best-Jo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다만, 1년전 대비 고용인원이 10%이상 감소한 기업 제외

* 고용유형별로 특화 지원

❖ 지원내용

분야	주요내용	우대사항
고용창출 (Track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채용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보증지원 (일자리창출 한도가산방식) • 원자재 구입 등 운전자금과 공장신축, 설비도입 등 시설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비율 95% • 보증료 0.4%p 감면
고용유지 (Track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채용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보증지원 • 인건비 증가금액에 대해 운전자금 3억원까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비율 90% • 보증료 0.3%p 감면

❖ 지원절차

- 접수기간 : 연간 상시 접수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 접수방법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또는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단계별	취급자	주요 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 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 제출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 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 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 조사 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 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 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 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 영업점 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문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한국디자인진흥원

제조기업 디자인 인력지원

❖ 지원개요

- 디자인 투자 시 발전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전문인력 채용연계 및 인건비 보조

❖ 지원대상

- 디자인 투자 시 발전가능성이 높으며 디자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등 70개사 내외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기업
 - ‘스타트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기업(접수마감일 기준)
 -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자체브랜드 또는 자체생산상품을 보유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디자인 전분야
- 지원인력 : 디자인 등급별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디자인 인력(기업 당 1명)
- 지원기간 : 근무 시작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지원규모 : 정부예산 범위 내에서 70개사 내외 지원
- 지원금액 : 지원기간 동안 매월 아래 해당되는 정부지원금 지원

구분	총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
요건 (디자인 학사 졸업자 기준)	실무경력 20년 이상	실무경력 16년 이상 20년 미만	실무경력 12년 이상 16년 미만	실무경력 8년 이상 12년 미만	실무경력 4년 이상 8년 미만	실무경력 4년 미만
임금총계(월)	최저 5,790,000원 이상	최저 5,200,000원 이상	최저 4,490,000원 이상	최저 4,040,000원 이상	최저 3,230,000원 이상	최저 2,560,000원 이상
정부지원금(월)	2,895,000원	2,600,000원	2,245,000원	2,020,000원	1,615,000원	1,280,000원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금
용

고
용

수
출

기
술
혁
신

기
타

- ※ 임금총계는 2019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국가통계, 제448001호)를 준용한 것으로, 임금의 총 구성은 직급별 최저기준(월) 이상이 되어야함
- ※ 임금총계(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는 기본급여, 제수당, 월상여금, 월퇴직급여총당금, 월사회보험료(회사부담금)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지원인력이 수령하는 실제 급여액과 상이할 수 있음
- ※ 세부 직급, 급여 수준은 채용기업 - 채용 대상 인력간 협의 후 확정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job.kidp.or.kr - 공고보기 - 공지사항 참고

❖ 문의

- 한국디자인진흥원 제조기업 디자인 인력지원 사업 담당자 : 031-780-212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중견기업 계약학과

❖ 지원개요

-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학과 협약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학위과정을 설치하고, 근로자(학생)-중소·중견기업-대학 간 3자 협약으로 운영되는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 및 근로자(학생)의 장기재직을 유도

❖ 지원대상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 (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단,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틀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 (학생) 현 근무 중소기업·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재교육형) 또는 중소기업 채용예정자(채용조건형)

❖ 지원내용

- (학생) 학생에 대하여 등록금 지원
 - 재교육형 : 전문학사·학사과정은 등록금의 85%, 석·박사과정은 65% 이내 지원
 -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 동시채용 : 등록금 전액 지원
- (기업)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 동시채용 참여기업
 - 중소기업·중견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 인재육성형 기업지정 신청시 가점 부여
 - 정책자금 신청시 금리우대(1인 0.1%)
 - 성과공유 기업지정 신청시 가점 부여

❖ 지원절차

- 봄 학기 모집기간 11~2월, 가을학기 모집기간 6~8월에 전국 중소기업·중견기업 계약학과 운영 주관대학에 신청서 제출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055-751-9865, 9877
- 전국 중소기업·중견기업 계약학과 주관대학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중견 Plus+보험

❖ 지원개요

- 보험계약자인 수출기업은 연간 보상한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며, 보험계약자가 보험 계약기간(1년) 중 이행(선적)한 수출거래에 대하여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K-SURE는 연간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전년도(최근 1년간) 수출실적 U\$50백만 이하, 수출자 신용등급 G급 이상(K-SURE 기준) 중소기업

❖ 주요계약사항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용요건	수출실적 U\$50백만 이하 G급이상 중소중견기업 단기수출보험(포괄·준포괄·농수산물패키지) 이용업체는 제외	
담보위험	- (기본) 수입자 위험, 신용장위험 - (특약) 수입국 위험, 무역클레임 위험주 ²⁾	- (기본) 수입자 위험, 신용장위험 - (특약) 수입국 위험
대상거래	결제기간 1년 이내	결제기간 180일 이내
보험계약 대상 수입자	청약시 사전등록 (최대 50개) - 수입자 신용조사 생략 - 공사신용등급 R급(정보부족기업 제외) 또는 자본잠식 G급 수입자, 30일 이상 결제 지연 수입자, 무역클레임 등의 사유로 분쟁 또는 소송 중인 수입자, 이란 또는 고위험 인수제한국주 ¹⁾ 소재 수입자 제외	
위험별 책임금액	- 기본위험 : 최대 U\$1백만 (개별 수입자별 최대 U\$300천*) - 수입국위험 : 최대 U\$1백만 - 클레임위험 : 최대 U\$50천 - 최소책임금액 : U\$10천 *G급(자본잠식 G급제외) 또는 정보부족R급의 경우 최대 U\$100천	- 기본위험 : 최대 U\$3백만 (개별 수입자별 최대 U\$300천*) - 수입국위험 : 최대 U\$1백만 - 클레임위험 : 담보 안함 - 최소책임금액 : U\$10천 *G급(자본잠식 G급제외) 또는 정보부족R급의 경우 최대 U\$100천
보상비율	100%	90% 이내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보험료 (수입자위험)	0.8%~1.6%	1%~2.5%
기타	수 출 통 지 : 없음 보 험 계 약 기 간 : 1년 단위 체결, 갱신 보 험 료 납 부 : 연간 보험료 선납	

주1) 고위험인수제한국 : '20. 3월 기준 가봉, 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푸에르토리코 10개국이며, 청약 및 승낙 시점 이후 변경 또는 추가 지정될 수 있음
주2) 클레임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한국무역보험공사 각 영업점
- 처리 절차 : 수출자 신용조사 → 청약서류 제출 → 책임금액·거래수입자 선택 → 한도책정
→ 보험료 납부 및 증권 교부

❖ 문의

-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 : 1588-3884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아카데미 교육·연수

❖ 지원개요

- 국가별 해외시장 개척과정, 산업별 해외시장 개척과정, 역량별 해외마케팅 실무과정 등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교육과정

과정명	주요내용
글로벌 지역전문가 육성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별 진출전략 교육과정 * 중국, 미얀마,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중남미, 러시아·CIS 등
산업별 해외시장 개척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국가 내 유망산업부문 수출 마케팅 역량 강화과정 * 화장품, 자동차부품, 식품, 의료기기, 유통 등
산업별 해외시장 개척 심화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시장개척 관련 교육 및 무역실무 통합형 해외연수과정 * 글로벌 기업 본관 주재 특강, 개별상담, 해외무역관 서비스 등 제공
기업 역량별 맞춤형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초보·유망·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교육과정 * 수출첫걸음,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실무역량 강화과정 * 해외전시 마케팅, 글로벌 비즈니스계약, 영업 역량 강화과정 등
4차 산업혁명 벤처마킹 연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혁명 주도 국가들의 선진 제조 트렌드 및 스마트팩토리 성공모델 벤치마킹 연수과정
온라인 수출 마케팅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온라인 마켓 진출 희망 기업 역량 강화과정 * 주요 플랫폼(아마존 등), 검색엔진 최적화(SEO),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교육

과정명	주요내용
해외진출 컨설턴트 양성 과정	•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할 컨설턴트 양성 과정
KOTRA 글로벌 CEO 아카데미	• 중소·중견기업 CEO 대상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과정
외국인 투자유치 교육	• 지자체, 기타 공공기관 내 외국인투자유치담당자의 투자 유치 실무 역량 강화과정
취업연계형 FTA 실무인력 양성사업	• 통상·무역 전공 고졸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한 수출 실무인재 매칭 프로그램

* 교육일정 및 세부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절차

- KOTRA아카데미 홈페이지(academy.kotra.or.kr) 교육공고 및 연간일정 참고

❖ 문의

- KOTRA 아카데미 : 02-3497-1196 / 042-338-1707(대전분원)
academy@kotra.or.kr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글로벌 파트너링(Global Partnering) 지원

❖ 지원개요

- 국내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과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글로벌기업과의 비즈니스 미팅 및 핀포인트(1:1) 상담, 현지 GP센터 입주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을 희망하는 유망 중소·중견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 (제외대상기업) ①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②휴·폐업중인 기업, 비영리 법인, ③외국법인의 본·지점, ④국가, 지자체 등

❖ 지원내용

- GP 수출상담회 : 연간 약 1,000개사 대상 국내외 20회 개최 예정
 - 국내(8회), 북중미(4회), 중국(2회), 일본(1회), 신남방(3회), 유럽(2회)
- 해외 GP 센터 : 각 센터별 약 10개사, 총 70개사 내외
 - 대상 지역 : 디트로이트, 나고야, 프랑크푸르트, 상하이, 쿠알라룸푸르, 멕시코시티, 아테네
- GP 매칭 : 글로벌기업 수요 발굴 시 상시모집(핀포인트 매칭)
 - 대상 지역 : 글로벌기업 협력 수요 발굴이 가능한 전 국가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①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② “신청가능사업” 확인 후 참가 희망 사업 선택 → ③ 참가 신청 방법 참조 후 참가신청

구분	모집
GP 수출상담회	사업별 개별 공고 예정(사업일 기준 약 2개월 전)
해외 GP 센터	연간 수시 모집
GP 매칭	매칭 원하는 글로벌기업 및 품목분야를 작성하여 붙임 2 회신 (해당 기업 및 분야 발굴 시 개별연락, 연간 수시 모집)

❖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재부품팀 : 02-3460-7644 / globalpartnering@kotra.or.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 지원개요

-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역량 제고 및 해외 파트너십 발굴, 글로벌 공급망 진입 등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내 중소·중견기업
 - 소재·부품* : 완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 생산물
 - 장비 :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장치나 설비
- * 소재부품 업종 구분은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참고
(소재부품종합정보망(www.mctnet.org)→전문기업확인→소재부품정의 클릭→해당 제품 확인)

❖ 지원내용

구분	진입	발전	
사업목적	소·부·장 기업 해외시장 진출 준비	소·부·장 기업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및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 지원	
지원요건	중소기업 중 내수기업(수출경험 전무) 또는 수출초보기업 (전년도 수출 10만불 미만)	전년도 수출액 10만불 이상 중소, 중견기업	
지원한도 (바우처 총액)	2,000만원 (중소기업 부담률 : 30%)	5,000만원 (중소기업 부담률: 30%, 중견기업 부담률: 50%)	1억원 (중소기업 부담률: 30%, 중견기업 부담률: 50%)

❖ 지원절차

- 공고 → 신청·접수 → (1차)계량평가 → (2차)비계량평가(선정위원회 심사) → 선발
→ 사업설명회 → 협약체결 → 사업수행 → 정산

❖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기업화팀 : 02-3460-3499, 3496, 7539 (진입)
소재부품팀 : 02-3460-7646, 7643 (발전)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 지원개요

- 서비스분야 선도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바우처 사업

❖ 지원대상

- 서비스분야(콘텐츠융합, 에듀테크, 프랜차이즈, 보건의료, 생활편의, 데이터기반, 산업 자동화 서비스 등) 중소·중견기업 40개사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중견 5,570만원(국고보조 50%), 중소 4,230만원(국고보조 70%)
- 참여기업의 타겟지역 수출 확대를 위한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KOTRA 해외무역관의 현지 밀착지원과 특허·지재권, 홍보·광고, 전시회, 법무컨설팅, 디자인개발, 해외규격인증 등 바우처 메뉴판의 수출지원서비스 이용을 동시에 지원

❖ 지원절차

- 신청절차
 - 홈페이지 신청 www.exportvoucher.com (한글 : www.수출바우처.com)
 - 신청기간 : 매년 12월중
- 추진절차
 - 공고 → 신청·접수 → 선정 평가 → 선발 → 사업설명회 → 협약체결 → 사업수행 → 정산

❖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식서비스팀 : 02-3460-3251, 760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비스기업 거점지원 서비스

❖ 지원개요

- 서비스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KOTRA 13개 해외무역관(서비스 거점무역관)에 서비스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서비스 기업을 현지에서 연간 밀착 지원하는 서비스

❖ 지원대상

- 서비스분야 중소·중견기업
 - 콘텐츠, 에듀테크, 프랜차이즈, 산업자동화, 생활편의, 데이터기반 서비스 등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1년 (2020년 3월 ~ 2021년 2월)
- 지원방식 : 서비스 전담직원을 활용한 1:1 맞춤형 지원 서비스
 - 서비스거점 무역관에 1명의 서비스 전담직원을 배치, 전담직원 1명이 최대 10개사의 서비스기업을 담당하며 담당기업의 현지 마케팅을 밀착 지원
 - 담당기업의 사업계획서 기반 밀착지원 사업수행, 바이어발굴, 조사수행 등
- 참가비 : 서비스 거점무역관당 250만원 (수출바우처로 결제 가능)
- 운영지역

중 국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일 본	도쿄, 오사카
미 국	LA, 뉴욕
동남아시아	하노이, 호치민, 자카르타, 방콕, 쿠알라룸푸르
서남아시아	뭄바이

❖ 지원절차

- 모집공고(1월) → 참가 신청 접수 및 서비스거점 배정(2월) → 서비스 개시(3월~)

❖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식서비스팀 : 02-3460-3251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 지원개요

- 5대 소비재 및 e커머스 분야 선도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해외판로 확대 지원

❖ 지원대상

- 5대 소비재* 제조 중소·중견기업 또는 해당품목 e커머스 중소·중견기업

* 5대 소비재 : 화장품·뷰티, 가공식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의약품

❖ 지원내용

- 해외마케팅 로드맵 수립 및 수행기관 통한 수요맞춤형 서비스 제공

구분	① 준비	② 진출	③ 확대
사업목적	해외시장 진출 준비 지원	해외시장 진출 초기 단계 지원	현지 대형유통망 입점 등 정착 지원
바우처 총액	2,000만원	4,000만원	5,500만원
	국고 보조율 70%, 1,400만원 기업 부담 30%, 600만원	(중소기업) 국고 보조율 70%, 기업분담 30% (중견기업) 국고 보조율 50%, 기업분담 50%	

❖ 지원절차

- 신청절차
 - 홈페이지 신청 www.exportvoucher.com (한글 : www.수출바우처.com)
 - 신청기간 : 매년 1월중
- 추진절차
 - 공고 → 신청·접수 → 선정위 평가 → 선발 → 사업설명회 → 협약체결 → 사업수행 → 정산

❖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기업화팀 : 02-3460-3499, 7327 (준비)
소비재산업팀 : 02-3460-3347, 7737 (진출, 확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신규 수출기업화 지원

❖ 지원개요

- 내수에 머물러 있으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전년도 직수출(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한다) 실적이 없는 내수기업과 10만불 미만 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
- * (제외대상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지원내용

- 기업에게는 무역전문가를 수출전문위원(PM)으로 매칭하여 수출 과정을 지원
- KOTRA·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수출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 지원절차

- 신청방법(KOTRA, 무역협회 중 1곳 선택, 중복신청 불가)
 - KOTRA : KOTRA 홈페이지 > 수출지원 > 수출초보기업 지원 > 신규 수출기업화 사업 온라인 접수
 - 무역협회 : export2020@kita.net 메일로 아래 제출서류 송부
- 제출서류 : 참가 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02-3460-7538, 3496, 7541
- 한국무역협회 : 02-6000-5674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우수상품전

❖ 지원개요

- 신흥 유망시장, 전략시장 등 국내기업의 시장진출이 어려운 지역에서 개최되는 단독 해외 전시회로,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외 한류행사, CSR 등의 연계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

❖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선정기준
 - 전시 품목의 현지 시장성
 - 전시회 참가 후 수출 기대성과
 - 최근 3개년 개최지역 사업 참가실적
 - 고용창출우수기업 여부 등
- 지원내용
 - 기본부스 1부스
 - 전시품 운송(해상 단체 편도운송, 1CBM 한도)
 - 단체항공 및 숙박 주선(항공임 및 숙박비는 출장자 부담)
 - 바이어 상담주선 및 현지 체류기간동안 단체이동 차량 지원
- 참가비 : 1부스당 150만원(영세)(2020모스크바 한국우수상품전 기준)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글로벌전시포털사이트(www.gep.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전시팀 : 02-3460-7272, 729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IT지원센터

❖ 지원개요

- 국내 ICT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주요 ICT 거점지역(실리콘 밸리, 베이징, 도쿄)에 IT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현지화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

❖ 지원대상

- 정보통신(ICT)분야 수출역량 및 기술경쟁력 보유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현지 사무공간(임주사무실) 제공 및 현지 정착 지원
- 현지 ICT 바이어 발굴 및 소개 및 상담 기회 제공
- 국내·외 투자가 및 바이어 네트워크 구축 및 현지 ICT정보 제공 등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등

❖ 지원절차

- ①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에서 ‘해외IT지원센터사업’ 신청 →
- ② 1차 서류심사 (ICT분야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나 대기업 집단을 제외한 IT분야 중소기업, 중견기업) →
- ③ 2차 심사 (기술력, 제품성, 시장성 등을 기준, 현지전문가 심사) →
- ④ 최종 선정 및 입주 계약. 사후관리

❖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ICT·성장산업실 : 02-3460-7472, 7470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물류지원(공동물류)

❖ 지원개요

- 해외 현지에서 독자적으로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 물류 인프라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거래기반 마련, 적기납품, 물류비 절감 등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제조·유통·무역 수출영위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모집기간 : 연중 수시(선착순 모집, 마감시 자부담서비스 모집으로 전환)
- 지원기간 : 1년
 - * 1개사당 최대 5개 지역 / 무역관 소재 전지역 신청 가능
 - * 이란, 시리아 등 현지 사정에 따른 일부 서비스 불가지역 제외
- 참가비용 : 매칭펀드로 지원(기업분담 비중 30% : 국고분담 비중 70%, VAT포함)

참가비(A) 30%	국고지원금(B) 70%	한도 총액(A+B) 100%
최소 30만원~최대 300만원	최소 70만원~최대 700만원	최소 100만원~최대 1000만원

※ 한도 총액은 100만원 단위로 구분(총 10단계)

- 지원항목
 - 현지통관, 수입대행 및 물류센터의 입·출고, 보관, 포장, 반품지원 등 풀필먼트 서비스
 - * 총액초과분 및 터미널비, 운·배송비 등은 참가기업이 협력물류회사와 직접 정산
 - * 물류센터 이용 필수(통관, 수입대행, 운·배송 서비스는 필요에 따라 이용)
 - 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방안과 현지 최적의 물류수단 확보 등 물류컨설팅 제공
- 비교
 - 1개사당 최대 5개 지역까지 신청 가능
 - 무역관 소재 전지역 신청 가능
 - 이란, 시리아 등 현지 사정에 따른 일부 서비스 불가지역 제외

❖ 지원절차

- ①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에서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 참가 신청* →
- ② 지원가능 여부 검토(해외무역관) → ③ 참가업체 선정 → ④ 참가비 납부 및 가입 완료 →
- ⑤ 무역관과 협약서 체결 → ⑥ 사업지원 개시

* (경로) 사업참가신청 > 지원서비스안내 > 수출지원 > 1:1 맞춤형서비스 > 해외물류네트워크 > 해외공동물류센터

❖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유망기업팀 : 02-3460-7428, 7438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해외지사화

❖ 지원개요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 3개기관의 유사사업(KOTRA-지사화사업, KOSME-해외민간네트워크활용사업, OKTA-글로벌 마케터)을 통합('17년)하여 사업 참여기업 선택의 폭 확대

❖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 ※ 신청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지원내용

- 사업규모 : 300억원 / 5,000개사 내외
- 지원기간 :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진입 단계의 경우 6개월 지원)
 - * 연장 가입은 신규가입과 동일하게 신청·평가 단계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해 가능
- 지원한도 : 기업별로 최대 10개 지역 참여 가능
 - 정부 정책에 따른 우대 조건 충족시 최대 12건까지 참여 가능
 - * 우대 조건 항목은 사업 차수별 변동 가능

- 수행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단계	주요 지원내용	기간	기업부담금	수행기관
진입	[기초 마케팅 지원] 기초 시장조사, 잠재바이어 조사, 네트워크 교류, 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소비재 전용)	6개월	50만원	OKTA
발전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1년	250~350만원 (지역별 차등)	KOTRA 중진공 OKTA
확장	[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해외 투자유치,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법인설립), 법률자문	1년	665~1,015만원 (지역별 차등)	KOTRA 중진공 OKTA

* 기업 부담금은 각 사업 참여 건별 금액이며, 수출 바우처를 사용하여 기업부담금 납부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 www.수출바우처.com)
(경로)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 해외지사화사업 → 온라인 신청
- 신청지역
 - 진출 희망 지역별로 신청
 - 최대 15건까지 신청 가능하며 최종 선정은 10건까지 가능
 - * 정부 정책에 따른 우대 조건 충족시 최대 12건까지 선정 가능
 - * 참가 희망지역을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신청 → 기업 선정 시 기초자료 활용
- 신청기간
 - KOTRA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중진공 및 OKTA : 모집 시행 차수별 별도 신청기간 운영

❖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유망기업팀 : 02-3460-7439, 7441, 744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사업팀 : 055-751-9680, 9679, 9682
- 세계한인무역협회 해외마케팅팀 : 031-927-9218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글로벌 역량 진단(GCL Test)

❖ 지원개요

- GCL Test(Global Competence Level Test)는 기업의 수출 및 해외마케팅 부분별 세부역량을 진단하고 역량별 수출 지원 사업을 추천하는 서비스이며, 진단 결과를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 가능

❖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

❖ 지원내용

- 역량 분석 : 기업의 역량 진단을 통한 7단계 성장단계 확인 및 8개 역량별 강약점 분석
 - * 성장 단계 : 초보내수→성장내수→유망내수→글로벌초보→글로벌유망→글로벌선도→글로벌강소
 - * 8개 역량 : 비전/마인드, 인력 및 자금, 인프라, 의사소통, 판촉/마케팅, 네트워크, 시장전략, 제품
- 시장성 정보(해외시장 빅북 연계) : 국가별 시장성(접근성, 매력도, 성장성, 경쟁력), 수출입 동향 등 안내

❖ 지원절차

-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www.kotra.or.kr)에서 '글로벌역량진단' 신청 →
② GCL Test 설문 답변 → 분석 정보 확인(역량, 시장, 지원 사업) →
③ 1차 유선상담(수출전문위원) → ④ 2차 방문컨설팅

❖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진출상담센터 : 02-3460-734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비즈니스 출장 지원

❖ 지원개요

- 해외비즈니스 출장 상담 지원 요청 시 출장지 KOTRA 무역관을 통해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상담주선을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지원

❖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

❖ 지원내용

- 해외 세일즈 출장

구분	일반서비스	프리미엄서비스
지원내역	상담주선 + 사후지원(2개월)	상담주선 + 상담지원(통역·차량지원) + 사후지원(2개월)
상담방법	상담 스케줄에 따라 기업이 자체 상담	KOTRA에서 주선한 상담에 한하여 무역관직원이 상담지원
참가비	50~70 만원(3~4개사) + 부가세(10%)	100~140 만원(3~4개사) + 부가세(10%)

- 해외 투자환경조사 출장

구분	일반서비스	프리미엄서비스
지원내역	현지투자업체, 투자유관기관, 로펌 등 상담주선	현지투자업체, 투자유관기관, 로펌 등 상담주선 + 상담지원(통역, 차량지원)
상담방법	상담 스케줄에 따라 기업이 상담	KOTRA에서 주선한 상담에 한하여 무역관 직원 상담지원
참가비	50~70 만원(2개사내외) + 부가세(10%)	100~140 만원(2개사내외) + 부가세(10%)

❖ 지원절차

- ①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에서 '해외비즈니스출장 지원사업' 신청(출장 1.5달 전) → ② 해외무역관이 지원가능여부 검토(2주 소요) → ③ 출장지원 가능시 對고객 견적서 송부 → ③ 출장비 납부 및 출장준비(약 2주) → ④ 출장시행

❖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진출상담센터 : 02-3460-7334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시장조사

❖ 지원개요

-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외 잠재 바이어 파트너 발굴, 시장동향,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등 타겟 시장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제공

❖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

❖ 지원내용

서비스 유형	서비스 내용	이용료(VAT 미포함)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고객의 제품에 관심을 보인 해외 수입 업체 조사 • 발굴 해외 수입업체와의 거래교신 지원(2개월) 	30만원(2~3개사) * 先 입금 후 사전조사 착수
항목별 시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동향, 수입동향/수입관세율, 경쟁동향, 수출동향, 소매가격동향/유통구조, 품질인증제도, 생산동향, 기타 등 조사 	15만원/1항목 (예: 수요동향+경제동향=300,000원)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신청 기업의 수출을 위한 완제품 가공 및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업체 발굴 	30만원(3~5개사)
해외수입업체 연락처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존재여부, 대표 연락처확인 * 기업 신용도 및 구매담당자 연락처 제공 불가 	연간 6개사까지 무료 * 추가시 건당 1만원 부과

❖ 지원절차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해외시장조사사업’ 온라인 신청 → 사전 유선 상담(본사) → 해외무역관 조사 가능여부 검토(약 9일) → 조사 시작(3주) → 결과보고서 송부(본사) → 보고서 확인 및 A/S 신청

❖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진출상담센터 : 02-3460-7337/7213/7349/7155/734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

❖ 지원개요

- 국내 유망기업의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로드맵 기반 해외 마케팅 활동 및 실비를 지원

❖ 지원대상

-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 기업 15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참가 기업별 타깃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로드맵 기반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
-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마케팅 실비지원(기업당 최대 1천만원 한도)
- 해외 전시회 참가, 유력 바이어 방한, 현지 행사 초청, 인증 및 특허 획득 등 지원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준비 - 이메일 접수
 -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해외 마케팅 로드맵, 사업자등록증 등
 - * 신청 접수 후, 현지 무역관 평가 및 심의위원회 평가 거쳐 선정 여부를 개별 안내
- 신청기간 : 연중
- 참가비용 : 기업 당 3백만원(부가세 포함)

❖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프로젝트공공조달팀 : 02-3460-7499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글로벌 M&A 진출 지원

❖ 지원개요

- M&A를 활용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핵심기술·브랜드·유통망·생산기반의 효율적 확보를 지원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M&A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지원방식·범위 설계

구분	내용
전략수립	인수 전략 수립 및 검토
정보조사	현지 시장 및 M&A 관련 정보 조사(KOTRA 시장정보팀 협업)
매물발굴	매물 기업 발굴, 인수 후보군 탐색 및 인수 가능성 타진
실사·평가	실사 및 평가 지원, 실사단 구성 자문, 실사 이슈 검토 지원
협상 및 자금조달	인수 협상 지원, 투자 구조 수립 자문, 국내외 인수금융 알선
사후지원	해외 투자 자문, PMI 전문 기관 섭외, 인수 후 현지 인력채용 및 마케팅 지원 등

❖ 지원절차

- 참가신청(담당자와 유선 협의 후 신청서 작성) → M&A팀 전문가와 개별면담으로 지원 내용 수립 → 비밀유지협약 체결 → 연간 딜 지원 → 사후관리

❖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M&A팀 : 02-3497-1110

관세청

YES FTA 컨설팅

❖ 지원개요

- 중견·중소기업의 FTA 원산지관리 역량 제고 및 수출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FTA 활용 실적이 있는 수출(예정) 및 내수 기업

〈다음〉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월 상호출자 제한 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
- ② 직전 2년간('18~'19년) 관세청·산업부 및 지자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 수혜 이력이 있을 경우 기업선정 이후에도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 ③ 최근 2년간(접수일 기준) 관세 및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 지원내용

- 컨설팅 유형

	유형	선정 기준
A형	최초 수출·수출초보 및 거래선확대기업 FTA 활용 지원	<p>(1순위) 최초 수출예정 기업 *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 (샘플수출 및 원자재 수출 제외)</p> <p>(2순위) 거래선 확대 기업 * 최근 2년간(18~19년) 최초 수출한 기업으로서 수출 국가 또는 품목(HS 4단위 기준) 확대 예정 기업</p> <p>(3순위) 수출 초보기업 * 최초 수출로부터 3년 이하 (17.1.1.이후 최초 수출) ※ 모든 수출예정에 대한 증빙 필요</p>
B형	원산지검증 대응	<p>최근 3년간 FTA 활용 실적이 있는 기업</p> <p>* 'FTA 활용 실적'은 원산지증명서(기관, 자율) 및 원산지확인서 발급 실적을 의미함</p>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 지원금액 : 컨설팅 지원내용에 따라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
 - 기업규모(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구 분	적용기준	기업부담	비고
I 기업군	전년 매출액 20억 이하	전액 지원	
II 기업군	전년 매출액 50억 이하	지원금액의 10%	I 기업군제외
III 기업군	전년 매출액 500억 이하	지원금액의 20%	I, II 기업군 제외
IV 기업군	전년 매출액 1,500억 이하	지원금액의 30%	I, II, III 기업군 제외
V 기업군	전년 매출액 1,500억 초과	지원금액의 40%	

❖ 지원절차

- 신청 절차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공지 사항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각 시행세관(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에 e-mail 제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공지 참조)

❖ 문의

-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 042-481-3221

특허청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 지원개요

- 해외 9개국 16개소에 소재하는 IP-DESK를 활용하여 해외진출(예정) 우리 기업의 지재산권 보호 강화 및 성공적인 해외시장 정착에 기여
- IP-DESK가 소재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재산권 분쟁에 대해서도 일부 현지 지재산권 전문가를 통한 법률자문을 지원
 - * 캐나다, 대만,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캄보디아, 몽골, 호주,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아랍에미리트, 이란 20개국

❖ 지원대상

-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 현지 국가에 사업을 운영 (예정) 중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지원내용

- 지재산권 출원, 침해조사, 상담 등 법률서비스 비용을 일부 지원
(해외 상표·디자인 출원 비용 지원)

구분		IP-DESK 소재국가									
		중국	태국	베트남	미국	독일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홍콩	필리핀
지원 한도 (건)	상표	\$300	\$550	\$300	\$600	\$1,000	\$500	\$300	\$300	\$650	\$300
	디자인	\$300	\$550	\$600	\$1,000	\$600	\$500	\$200	\$300	\$650	\$300

지원비율 : 실제 출원비용의 최대 50% 지원

지원건수 : 신청기업별 연간 8건(국가별 통합)

구분		IP-DESK 미소재 국가
지원 한도	출원 지원	1건당 \$1,500이내 상표·디자인 출원 관련 비용 최대 50% 지원
	분쟁 상담	1건당 \$3,000이내 경고장 접수 등 지재산권 분쟁 발생에 따른 법률 상담 비용 최대 70% 지원 * IP-DESK 소재국가는 전담직원 및 자문 대리인을 통하여 무료 상담 제공
지원건수		신청기업별 연간 4건(국가별 통합, 출원·상담지원 통합)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피침해 실태조사 및 법률의견서 작성지원〉

구분	IP-DESK 소재국가									
	중국	태국	베트남	미국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홍콩	필리핀	
지원내용	침해 조사, 행정단속, 법률의견서(침해감정서 등 작성비용 일부 지원)									
지원한도	10,000\$(피침해 실태조사 등 일부만 진행시 \$6,000)									
지원비율	최대 70% 지원(중복지원 시 20%씩 지원비율 하락, 70%→50%→30%)									
지원건수	신청기업별 연간 3건* * IP-DESK 미소재 국가는 피침해 실태조사만 신청가능하며 연간 1건 한도									
피침해실태조사·법률의견서 작성지원 세부내용										
지원유형	기본과제 \$6,000 한도 (70%지원)					추가과제\$4,000 한도 (70%지원)				
피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 피침해 조사(증거자료수집) - 상대기업현황조사 - 실태조사 보고서 제공					- (현장)행정 단속, 법률, 세관조치 - 종합 결과보고서 제공				
법률의견서 작성지원	- 경쟁사 분쟁성향, 제품분석 - 권리심층분석(비침해, 침해 논리) - 사안별 법률의견서 제공					- 무효자료 검색 - 회피설계(신규 네이밍), 역공 지재권 발굴 등 - 종합 법률의견서 제공				

* 경고장 대응(발송)등의 업무는 사안별 법률의견서에 포함(법률분석 없는 단순 경고장 발송(대응)은 업무범위 불 포함)

- IP-DESK 미설치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분쟁(예정) 사안에 대해서 상담비용의 최대 70%(예정 사안은 50%)까지 지원가능

❖ 지원절차

- ①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지원서비스 안내 → ② 해외진출지원 → ③ 해외투자진출 → ④ 지식재산권보호 페이지 내 “지원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지재권실 : 02-3460-3351, 3357, 3359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 042-481-5085

한국무역협회

OK FTA 현장방문 컨설팅 지원

❖ 지원개요

- 중소·중견기업의 자율적인 FTA활용을 위해 품목분류에서부터 원산지판정 및 사후검증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원산지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 지원대상

- FTA 컨설팅이 필요한 전국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필수) FTA 원산지관리 컨설팅 + (선택) 비관세 분야 컨설팅
 - FTA 전문인력이 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FTA 활용에 필요한 원산지관리 컨설팅과 비관세 분야 컨설팅(인증, 지재권 등)을 제공

● 사업내용

(1) 필수 : FTA 원산지 관리 컨설팅

- 참가기업의 수요에 따라 유형별(Package, Upgrade, Starter) 맞춤형 원산지 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3~10일)

* 세 가지 컨설팅 유형 중 1개 선택

종류	지원내용	기간
Package (종합) 컨설팅	- 품목분류에서부터 원산지판정, 원산지증명(확인)서 발급,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및 사후검증 등 종합 컨설팅 제공	8~10일 [3개월]
Upgrade (개선) 컨설팅	- 사후검증 수검 대비(대응) 원산지 관리실태 점검 및 자문 - 신규 협정·품목에 FTA 활용 컨설팅 - 원산지 관리 특정 프로세스 개선 등	5일 [2개월]
Starter (예비) 컨설팅	- FTA 개요,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실무교육	3일 [1개월]

* [] 는 컨설팅 유형별(Package, Upgrade, Starter) 컨설팅 착수일로부터 컨설팅 완료 기한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2) 선택 : 비관세 분야 컨설팅

- FTA 체결국 수출 시 필요한 해외인증, 지재권, 계약서 검토 관련 맞춤형 정보와 컨설팅 서비스 제공 (1~2일

* 비관세 분야 컨설팅 희망기업은 필수 컨설팅인 FTA 원산지관리 컨설팅에 추가로 선택 가능

* 해외인증 컨설팅과 지재권·계약 컨설팅 중복 신청 가능

종류	지원내용	기간
해외 인증 컨설팅	- 해외인증 취득방법, 신청절차 등 해외인증 취득 준비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1~2일 [1개월]
지재권·계약 컨설팅	- FTA 체결국 내 지재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분쟁위험에 관한 보호방안과 분쟁 대응 등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 수출 거래 시 필요한 계약서 검토 지원	

* []는 컨설팅 착수일로부터 컨설팅 완료 기한

※ FTA 원산지 관리 컨설팅(필수) + 비관세 분야 컨설팅(선택) 최대 10일까지 지원 가능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okfta.kita.net>)에서 온라인 신청
 - ※ Package, Upgrade, Starter 중 선택하여 신청
 - ※ 신청 후 FTA종합지원센터 소속관세사와 유선 통화 필수(통화 후 확인 절차를 거쳐야 신청 완료)

❖ 문의

-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 국번없이 1380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전략 지원

❖ 지원개요

- 해외 진출(예정)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위해 지재권 전문가(특허법인 등)를 통해 해외기업과의 지재권 분쟁 예방 및 대응 전략을 제공

❖ 지원대상

- 수출(예정)기업인 중소기업·중견기업

❖ 지원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특허분쟁예방 컨설팅	수출준비 (수출실적 미보유)	수출 예정지역 분쟁위험 회피전략, 현지 권리확보전략 제공 등
	수출진행 (수출실적 보유)	수출(예정)지역 경쟁사 특허 무효화전략, 특허매입 전략, 역공격 특허 발굴 등 종합적인 분쟁대비 전략 제공 등
특허분쟁대응 컨설팅	해외기업과의 경고장 대응, 소송 대응, 라이선스, 특허 권리행사 전략 제공 등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예방	수출(예정) 시 또는 무단 해외 선등록 침해 시 상표 현지화 전략 제공 등
	대응	해외 모조품 대응 또는 무단선등록 권리 무효화 전략 제공 등
권리통합형 분쟁예방 컨설팅	제품에 적용된 특허, 상표, 디자인 전반을 검토하여 해외 IP 분쟁 예방전략 제공 등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문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예방팀 : 02-2183-5873~9, 또는 ipkoipa@koipa.re.kr
-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 홈페이지(www.ip-navi.or.kr)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중국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

❖ 지원사업

- 중국 알리바바그룹 산하 온라인 쇼핑몰 내 우리기업의 피해구제 및 위조상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대리신고 서비스를 지원

❖ 지원대상

- 조건 ①, ②를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 사업자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② 중국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외)을 보유한 한국기업
 - 출원신청서/확인서 등은 유효한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음

❖ 지원내용

- 지원 대상 사이트 : 중국 알리바바그룹 산하 온라인 쇼핑몰 6개

번호	사이트	주소
1	타오바오	www.taobao.com
2	티몰	www.tmall.com
3	티몰글로벌	www.tmall.hk
4	1688	www.1688.com
5	알리바바	www.alibaba.com
6	알리익스프레스	www.aliexpress.com

● 지원내용

-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대리신고 연간 최대 3회 지원

지원유형	지원내용	소요 기간	비고
모니터링	• 담당자-지원기업 미팅을 통한 단속대상제품 분석	약 1.5개월	1회 지원에 약 3개월 소요
	• 대상 사이트(6개) 내 유통현황 확인 및 위조상품 식별		
	• 보유지재권을 통한 단속가능여부 분석 및 단속전략 수립		
	• 모니터링 최종결과 및 분석정보(신고가능·불가능 사유 등) 제공		
대리신고	• [지원기업] 결과 검토 후 신고를 희망하는 URL 체크 및 화신	약 1.5개월	
	• URL 차단신고를 위한 신고자료 작성(중문)		
	• 알리바바 지재권 보호 플랫폼을 통한 신고 접수		
사후관리	• 단계별 신고관리 및 판매자 이의제기 대응	약 1.5개월	
	• 신고최종결과 확인 및 분석정보(단속실패사례, 기타 특이사항 등) 제공		
사후관리	• 연간 위조상품 대응 현황 리포트* 제공 * 연간 단속현황, 단속에 따른 위조상품 유통추이 변화 등	약 1개월	연 1회

- 지원규모 : 1차 지원기업 24개社 선정
- 연간 총 40개 기업 선정 및 지원 예정

❖ 지원절차

- 신청 방법 : 이메일, 우편 접수
 - E-mail : kipraglobal@koipa.re.kr
 - 접수처 :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F
- 신청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정보수집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 : 02-2183-5894, 5885, 5869, 5883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 지원개요

-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해외진출, 수출 및 해외수주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해외 타당성 조사, 해외인증 획득 지원 등을 종합 지원

❖ 지원대상

- 신재생설비 해외인증획득 지원 :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 중소·중견기업
- 해외시장개척 지원
 -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 및 협회, 전시운영 관련 업체 등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중견기업
- 신재생에너지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 :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 및 협회 등

❖ 지원내용

- 신재생설비 해외인증획득 지원
 - 소요사업비의 50~75%이내 지원(중견기업 50% 이내 지원)
 - 기업당 2건, 건당 1억원 이내 지원
- 해외시장개척 지원
 -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 소요사업비의 50~75%이내 지원(중견기업 50%이내 지원)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소요사업비의 50~75%이내 지원(중견기업 50%이내 지원)
 - 기업당 지원한도 : 15백만원 이내
- 신재생에너지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
 - 소요사업비의 50~75%이내 지원(중견기업 50%이내 지원)
 - 프로젝트당 최대 2억원 이내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우편 및 방문 접수

사업명	제출처	주소
신재생에너지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	한국에너지공단 글로벌사업실 (해외진출지원팀)	(44538)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한국에너지공단 글로벌사업실 사업담당자
신재생설비 해외인증획득 지원	한국에너지공단 글로벌사업실	
해외시장개척 지원	(신재생국제협력팀)	

- 신청 서류 : 신청서, 기업소개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대표번호 : 052-920-0111~0114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의료 수출전문 기업육성

❖ 지원개요

- 국내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분야 제조사 등 신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기업의 수요 및 역량에 따른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의료산업 수출 유망기업 20개사(의약품, 의료기기 각 1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1개사 당 1,000만원 한도 내 수출마케팅 지원
- 고객 수요에 맞춘 각종 해외마케팅 서비스 제공
 - 서비스로드맵 공동수립 등 해외 마케팅 전주기 활동 지원(해외 마케팅 방안 컨설팅, 공사 및 유관기관 사업 연결 등)
 - 공사 정형화(지사화, 지시조사, 출장 지원 등) 사업을 포함하여 지원 가능한 각종 마케팅 사업(개별 로드쇼, 현지 마케팅 활동 등) 개발, 지원

❖ 지원절차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rana@kotra.or.kr
-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기업 소개 자료 등

❖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의료서비스팀 : 02-3460-7623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

❖ 지원개요

- 해외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리스크 부담이 큰 신시장 개척 시 투입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시장다변화 및 수주확대 실현

❖ 지원대상

-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공사
-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기업(해당 공종에 한함)
-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 신청한 경우
 - ※ 제외되는 경우
 - 국내기업 하도급 사업, 타기관 지원사업과 중복 사업
 - 국내 ODA 발주 사업 등 국내기업간 경쟁사업 등

❖ 지원내용

- 지원사업

구분	내용
수주활동 지원	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현지조사, 발주기관 면담, 발주처 인사 국내초청 등 수주활동 비용 지원
프로젝트 조사·분석 지원	해외공사의 추진 필요성 또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장 및 환경분석, 경제성, 기술적용 가능성 등의 조사·분석 비용 지원
EDCF연계 목적 조사·분석 지원	대외경제협력기금 연계 타당성검토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조사·분석 비용 지원
현상공모 및 국가간 경쟁입찰 참여 지원	해외건설 또는 엔지니어링 사업의 현상공모 및 국가간 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포함)의 참여 준비 비용 지원
정책지원	법령 및 관령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해당분야 공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프로젝트 조사·분석, 진출환경 분석 또는 현지 협력활동 비용 지원

- 지원항목 : 국외활동비 및 발주처 초청비, 현지조사 및 외주 비용 등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 지원금액 : 수주활동 지원 최대 1억원, 기타 지원사업 최대 3억원
- 지원비율
 - 중소기업: 총 사업소요비용의 80%
 - 중견기업: 총 사업소요비용의 60%
 - 대기업 및 공기업: 총 사업소요비용의 50%
- * EDCF 연계목적 조사·분석 지원 및 정책지원, 현상공고 및 국가간 경쟁입찰 참여지원사업은 지원비율을 10%p 추가 지원

❖ 지원절차

-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방문접수)
 - 이메일 : gimp@icak.or.kr
 - 전 화 : 02-3406-1141, 1026
 -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13층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www.icak.or.kr) 홈페이지의「해외진출-시장개척지원-공지/자료」에서 상세내용 확인

❖ 문의

-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 02-3406-1141, 1026
-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 : <http://kor.icak.or.kr>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

❖ 지원개요

-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지원대상

- 「해외건설촉진법」에서 정한 해외건설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
 - 우선선정기업
 -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
 -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를 채용하는 기업
 - 청년층 및 정규직을 채용하는 기업
 - 국가유공자 자녀를 채용하는 기업
 - 우수 해외건설업자로 지정된 기업
 - 취업취약계층* 채용기업
-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서 정의하는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장애인, 북한이탈주자, 결혼이주여성 등

❖ 지원내용

-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중소, 중견 건설업체가 신규 채용하여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한 참여자에 대한 파견비용 및 훈련비용
- 파견비용 : 최대 200만원/인
 - 왕복항공료(1회), 파견 관련 보험료, 비자발급 수수료
- 훈련비용 : 100만원/인, 월
 - 기업, 개인 각 50만원/인, 월 지급
 - 단, 청년(OJT 시작 시점에 만 34세 이하)의 경우 월 50만원 채용 기업 추가 지급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 지원인원 : 20명 이내
 - * 단, 외국 발주기관에서 직접 수주(외국기업에서 하도급받는 경우도 포함) 및 우수 해외건설업자(국토부 선정)는 OJT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5명까지 가능
 -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하여 OJT에 참여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
 - 사업 기 참여자는 지원대상 제외
 - 나이 및 직무 제한 없음
- 지원기간 :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청년은 최장 24개월까지 지원)
 - 해외건설촉진법 제2호 제3호에 의한 해외건설엔지니어링 활동은 합산하여 3개월 이상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사업공고→신청 접수(수시)→지원기업 선정(심의위원회)→지원 협약 체결→OJT 실시→지원금 신청(분기별)→지원금 정산·지급→결과보고
 - ※ 사업 공고와 신청서 양식 등은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www.icak.or.kr)의 [커뮤니티-공지사항]에서 확인

❖ 문의

- 해외건설협회 교육훈련실 : 02-3406-1033, 1110
-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 : <http://kor.icak.or.kr>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온라인 기술문제 해결 플랫폼(K-TechNavi)

❖ 사업개요

- 중견·중소기업이 플랫폼에 등록된 외부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기술 애로 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필요기술을 적시에 확보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융·복합할 수 있는 온라인 기술문제 해결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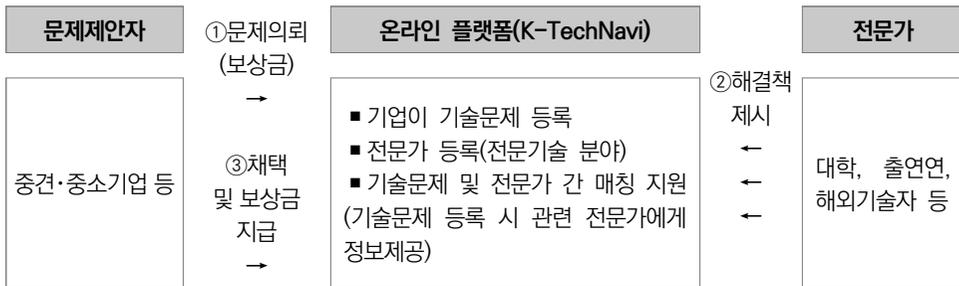
❖ 지원대상

- 중견·중소기업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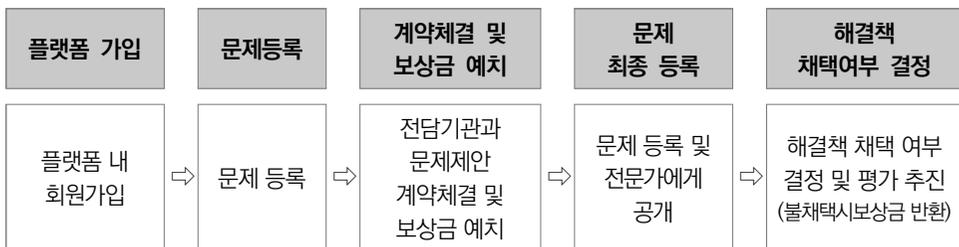
- 중견·중소기업이 의뢰한 기술문제에 대하여 출연연·대학 등 전문가들이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기업이 최적의 솔루션을 채택 후 보상금 지급

〈K-TechNavi 운영체계〉



❖ 사업 참여주체별 추진프로세스

- 문제제안기업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 전문가



❖ 문의

- (플랫폼) www.k-technavi.kr
- (전담기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업2팀 : 02-3275-2109, kjy@fomek.or.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 글로벌투자연계 기술개발

❖ 지원개요

- 중소·중견기업의 新산업분야 기술개발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고 조기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핵심기술 보유기업 발굴 및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 중소·중견기업
 -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 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2호부터 제9의4호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13대 혁신성장동력 관련 소재·부품 유관분야*

* 13대 혁신성장동력 :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 지원유형 : 해외 전략제휴를 통한 후속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구분	내용
기술획득형 (Buy R&D)	핵심기술 보유 해외기업(또는 IP)을 인수하고 사업화를 위한 추가 기술개발 지원
기술투자형 (Invest R&D)	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지분투자) 관계를 구축하고 사업화를 위한 공동개발 지원
기술연계형 (Connect R&D)	해외 투자자(전략적 또는 재무적)가 투자한 국내기업 보유기술의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 지원내용

구분	글로벌개방형기술개발
2020년도 예산(안)	30억원 이내
지원규모	6억원 이내/년(1차년도 2.5억)
지원기간	2년 5개월 이내(1차년도 5개월)
주관기관 자격	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 자격	제한없음(단,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70% 이상(권고)
평가절차	GOC(Global Open-innovation Company) 심사, 사업계획서 평가 순으로 진행
협약유형	일괄 협약
과제유형	혁신제품형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 지원절차

- GOC 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접수처로 기한내 제출
 - 오프라인(방문, 우편) :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 * 주소 : (06164)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1505호 A&D팀
 - 온라인(전자우편 goc@kitia.or.kr) 접수

❖ 문의

- (GOC 심사 관련)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A&D지원팀 : 02-6000-7952, 7956
 - *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www.kitia.or.kr) 참조
- (글로벌개방형기술개발사업 관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재료평가팀 : 053-718-8453
 - *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출연계형 자동차부품 기술개발

❖ 지원개요

- 내수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내 자동차부품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밸류체인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및 연계 마케팅 지원

❖ 지원대상

가. 수출연계형 기술개발

- 국내 중소·중견 자동차부품기업
 - 지원방법 : 주관기관 단독 또는 주관기관이 참여기관과 공동으로 지원·수행

구 분	내 용
주관기관*	· 중소·중견 자동차부품기업
참여기관**	·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지역TP 센터 등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이며,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3호, 4호 및 9의2, 9의3에 해당하는 기업·기관

나. 마케팅 지원

- 해외 마케팅 지원이 원활한 추진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 지원방법 : 주관기관(비영리기관*) 단독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의 33에 해당하는 기관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 지원내용

가. 수출연계형 기술개발

- 지원분야 :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판로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수행 가능한 연구과제 범위 >

① **(해외시장 판로개척 기술개발)** 국내 자동차부품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OEM을 타겟으로 하거나 신규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기술개발

*** 기술개발 제품군 예시**

구 분	주요 제품군
해외 OEM 타겟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체경량화) 프레임, 후드 등 충돌성능 만족 경량화부품 및 배터리팩, 실드박스 등 친환경 차량용 부품, 캐빈 인스트루먼트 패널용 경량화 부품 등 • (첨단안전) ADAS(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용 센서 및 EPS 등 안전관련 전장부품, 액츄에이터 등
해외 OEM 수요발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G 통합안테나 모듈, 음성 인식, 증강 현실 관련 부품 등

② **(해외시장 판로확대 기술개발)** 차체 및 내·외장재 부품, 편의 부품 등 기존에 이미 수출하고 있는 부품의 수출 확대와 고객 다변화를 위한 성능 개선 기술개발

*** 도어핸들, 패널 및 미러류 등 차체 및 내·외장재 부품과 시트, 클러스터 패널, 선루프 등 편의부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산성 및 성능강화, 고급화 관련 기술개발**

- 지원금액 및 조건

구 분	해외시장 판로개척 기술개발	해외시장 판로확대 기술개발
지원금액 (정부출연금)	• 과제당 350백만원 이내	• 과제당 100백만원 이내
지원규모	• 5개 과제 이내	• 5개 과제 이내
공모유형	• 자유공모	• 자유공모
기술료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 총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구 분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50% 이하	민간부담금 전체의 50% 이상
중소기업	총 사업비의 67% 이하	민간부담금 전체의 40% 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및 제25조 준용

- 지원기간 : 10개월 이내 (협약기간(안) : 2020. 4. 1 ~ 2021. 1. 31)

나. 마케팅 지원

- 지원분야 : 기술개발 과제 수행기업을 포함, 국내 자동차부품기업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마케팅 수행 지원

〈 수행 과제내용 〉

① **(타겟형 수출매칭)** 글로벌 완성차 및 부품사 수요에 대응하여, 시장 진입이 가능한 국내 부품 기업 매칭 및 관련 마케팅 지원
 * 글로벌 시장 수요조사, 공급 가능기업 선발, 수요기업-공급기업 교류 주선 등
 * 기술개발 과제 수행기업을 포함, 시장 진입 가능기업 총 10개사 내외 지원

② **(기초자료 제작지원)** 글로벌 마케팅을 위한 기업·제품 홍보물, 영상콘텐츠, 홈페이지 등의 번역·제작 및 기본 기술분석 등
 * 기술개발 과제 수행기업을 포함, 수요기업 총 10개사 내외 지원

③ **(맞춤형 지원)** 기술개발 과제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에서 필요한 상담회·전시회 지원, 국외 고객사 매칭 등 맞춤형 지원 추진

- 지원금액 : 200백만원(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 100% 지원, 기술료 비징수
- 지원기간 : 10개월 이내 (협약기간(안) : 2020. 4. 1 ~ 2021. 1. 31)

❖ 선정절차



❖ 지원절차

- 접수기간 : '20. 3. 20.(금) 09시 ~ '20. 4. 20.(월) 18시
- 접수절차 : ① 통합회원가입 ② 온라인등록 ③ 파일업로드 ④ 접수확인증출력
- 접 수 처 : 온라인 등록 (KIAT 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 별도 오프라인 제출 불가능

❖ 문의

- (사업 내용 관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 02-6009-3511 / ryu9810@kiat.or.kr
- (온라인 등록 관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74~6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월드클래스300프로젝트기술개발(R&D)

❖ 지원개요

- 월드클래스 300 기업에 대하여 성장전략서*에서 제시된 기술확보 전략을 바탕으로 중장기 미래전략 및 원천기술개발 지원

* 성장전략서 : 시장확대, 기술확보, 투자, 경영혁신·고용 분야별 향후 10년간 기업의 성장전략을 기술(월드클래스300기업 선정시 제출)

※ 월드클래스 300프로젝트

-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세계시장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여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300개의 월드클래스 기업 선정을 목표로 함)

* '18년까지 313개社 선정(현재 286개사 유효), www.worldclass300.or.kr

❖ 지원대상

- 주관기관 : 월드클래스300 중견·후보중견기업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

기업유형	자격요건
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견기업확인서
후보 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후보중견기업 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연도 매출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에 충족하는 동시에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이 15% 이상 만족 -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에 충족하는 동시에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이 평균 2% 이상을 만족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3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월드클래스300프로젝트 기술개발(R&D)
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정부출연금 10억원 이내/년 (12개월 기준)
공모유형	자유공모
지원기간**	4년 이내
비 고	기술료 징수

* 정부의 예산 상황과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신청한 지원 금액 대비 정부출연금 감액 가능

** 1차년도 협약기간(예정) : 2020. 4. 1. ~ 2020. 12. 31. (9개월)

□ 지원금 및 기술료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수행기관 ¹⁾ 유형	참여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견기업	주관·참여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후보중견기업 ²⁾	주관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참여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중소기업 ³⁾	참여(영리)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참여(비영리)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후보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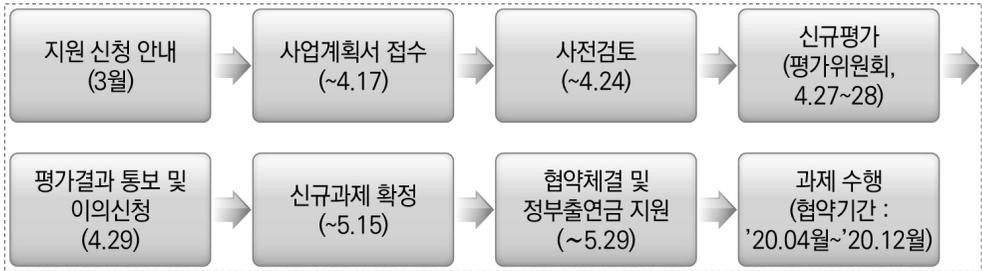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 지원절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구 분	기 간
접수기간	• 신청기간 : 2020. 3. 19(목) ~ 2020. 4. 17(금)까지 30일간
서식 교부	• 서식 교부 : 2020. 3. 19(목) ~ 2020. 4. 17(금) • 서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전산 등록 및 신청서 등 서류 제출	• (온라인) 전산 등록은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서 해당 사업을 선택하여 진행함 - 2020. 3. 19(목) ~ 2020. 4. 17(금) 18:00까지 • (오프라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제출 - 2020. 4. 3(금) ~ 2020. 4. 17(금) 18:00까지 - 전산 등록을 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및 제출서류만 제출했을 때는 접수하지 않음(반드시 전산 등록을 선행해야 함)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온·오프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이 불가함

❖ 문의

- (사업 내용 관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팀 : 02-6009-3543
- (온라인 등록 관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74~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 상생혁신 R&D

❖ 지원개요

- 초기 중견기업(주도) - 중소기업(참여) 컨소시엄의 신제품, 신기술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산업 전후방간의 성장사다리를 강화하여 상생협력 모델 확산

❖ 지원대상

- 초기 중견기업(주관기업) - 중소기업(참여기업) 컨소시엄

***주관기업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이며, 초기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이하)**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하여야함

***참여기업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상생R&D (국내형) 분야의 경우 국내 중소기업 1개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지원분야

- 주력산업* 및 신산업** 분야

※ 「중견기업 비전 2280」중견기업 유망품목 지원

* 주력산업 : 자동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섬유, 철강, 조선

** 신산업분야 : 바이오헬스, IoT가전, ICT융합, 유통, 항공드론, 로봇, 에너지 신산업

❖ 지원내용

- ① (개요) 초기 중견기업 - 중소기업 컨소시엄의 상생R&D기획 및 상생R&D 단계별 지원
 - 1단계 과제기획과 평가를 거쳐, 2단계 R&D 선정 및 본격 지원 추진
- ② ①단계(R&D기획) : 네트워크(컨소시엄) 구성, 성과배분 계약, R&D 과제의 기술성·시장성 등을 구체화할 수 있는 사전기획 지원
 - 지원내용/기간 : 컨소시엄(과제)별 3천만원 이내/5개월
 - 필수사항 : 참여기관간 성과에 대한 공유계획 마련 및 등록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 ②단계(R&D지원) : ①단계 R&D기획과제를 대상으로 중견-중소기업간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국내형) 및 해외기업의 구매수요가 있는 중견기업(글로벌형)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내용/기간 : 컨소시엄(과제)별, 최대 2년 10억원 이내/24개월

유형	① 국내형	② 글로벌형
지원 대상	중견-중소기업 컨소시엄 * 대학, 연구소 추가 참여 가능	중견기업 * 컨소시엄 구성시 선정 우대
특징	상생협력 중시	사업화 연계(수출) 중시

- 필수사항 : 성과공유제 등록 및 확인(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 : 044-203-4375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팀 : 02-6009-354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

❖ 지원개요

-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지역의 자립적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 중견기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및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구심체로 육성

❖ 지원대상

- 지원대상분야 : 전 산업분야
- 신청자격 :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중견기업
 - * 지원 조건 : ① 신청기관(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의 지자체(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제외)로부터 후보기업 추천을 받은 경우
 - ② 직전년도 R&D집약도 1% 이상 또는 직전년도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이 10% 이상

❖ 지원내용

- **(R&D지원)** 지역 중견기업 단독 R&D(기업단독형) 또는 중소기업·대학·연구소 등과의 공동 R&D(컨소시엄형) 지원(자유공모)
 - 개발기간 2년, 최대 연 (국비)4억원(12개월 기준)
 - * 상반기 협약 시 1차년도 지원비(1차년도 : 2019.6.1.~2019.12.31, 예정)는 협약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12개월분 중 9개월분 반영 예정(2019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정부출연금은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과제형 R&D 편성기준))
 - * 주관기관(중견기업)은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민간부담금 매칭
 - * 공동 R&D(컨소시엄형) 과제 신청 또는 (지역 산업정책을 고려하여)국가혁신클러스터 입주(예정) 기업 또는 국가혁신클러스터 핵심 R&D과제 수행기관인 기업 우대
- **(비R&D지원)** 지자체는 추천한 기업이 신청한 정부출연금(국비)의 20% 이상 지방비를 매칭(지자체 현금 출자 협약서로 같음)하고, IP전략 수립 및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등 지원
 - * 지방비 매칭(납부) 방법은 연차별 분납(총 2회) 또는 일시납(총 1회, 2년차) 중 선택
 - * 지방비가 매칭 되지 않을 경우 주관기관이 자부담(R&D과제의 사업비 상 민간부담금 아님)하여 비R&D 사업비 선 집행(필수)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 **(연계지원)** 향후 ①산업부의 정부지원 사업에 우대가점 부여 및 ② 월드클래스300 패키지 지원시책(14개 내외) 준용

〈 월드클래스300 패키지 지원시책 〉

- ① (수출) KOTRA(월드챔프)·한국특허전략개발원(글로벌기술 IP) 등을 통한 해외 시장진출
- ② (금융) 산은·수은등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컨설팅·우대금리·요건면제 등의 금융 지원
- ③ (인력) 잡페스티벌(고용지원), 한국디자인진흥원(인건비 분담) 등을 통한 인력 지원
- ④ (컨설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전략개발원 등을 통한 기술·특허·지재권 컨설팅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혁신과 : 044-203-4375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팀 : 02-6009-3545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

❖ 지원개요

-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연구 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인정요건〉

구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원창업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 연구전담요원, 독립된 연구공간 및 연구시설에 대한 상세기준은 시스템 참고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 지원혜택

● 조세 및 관세지원

지원제도	세부내용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의 일정률을 법인세에서 공제(당기분 또는 증기분 중 선택) - 당해연도 발생금액의 25%(중견기업은 8%, 대기업은 0~2%) - 또는(당해연도-직전연도)×50%(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25%)	■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출시 자체 연구개발비용에 한하여 해당 연구개발비의 30%~최대 40%(대기업의 경우 20%)를 세액공제	■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신기술사업화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6% 세액공제(대기업은 1%, 중견기업 3%)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 - 중소기업: 연구소용 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취득세 60%, 재산세 50%) - 대기업: 연구소 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35% (단, 과밀억제권역내 설치하는 연구소는 제외)	■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중소·벤처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	■	■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80%를 감면	■	■

● 인력지원

지원제도	세부내용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전문연구요원제도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규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하여 배정된 T/O 한도 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함(사업신청자격 부여) * 자연계 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확보(중견기업의 경우 5인 이상)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사업	연구경험을 보유한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	■	■

● 자금지원

지원제도	세부내용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특정연구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또는 가점부여)	■	▲
우수기술연구센터 사업(ATC)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ATC로 지정하여 총 사업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센터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사업신청자격 부여)	■	

❖ 설립/신고절차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先 설립 後신고
 - 기업내에서 먼저 설립요건을 검토하여 설립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 관리시스템 (www.rnd.or.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 1379 / 080-555-9114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 www.koita.or.kr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 www.rnd.or.kr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 분쟁 조정·중재

❖ 지원개요

- 기업 간 기술분쟁 발생 시 조정·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분쟁해결 :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또는 중재로 분쟁 해결을 지원
 - * 중재의 경우, 당사자 간 서면으로 중재부의 판정에 따른다는 합의가 필요
 - 분쟁비용 지원 : 법률대리인 선임비, 특허심판비, 소송비 지원

지원유형	지원내용	지원금액
법률대리인선임비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한 기업의 법률대리인(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500만원 이내
특허심판비	조정 중 제기된 특허심판(특허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에 대해 지원심사를 거쳐 비용지원	최대 500만원 이내
소송비	조정 불성립 사건이 소송으로 연계되는 경우, 지원심사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	최대 1,000만원 이내

- 지원규모 : 제한 없음

❖ 지원절차

- 상담 후 이메일(solomon@win-win.or.kr) 및 우편으로 신청
 - ※ 상담 : (전화) 02-368-8787
(방문)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4층
- 신청 서류 :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

❖ 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홈페이지 : <https://www.win-win.or.kr>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운영

❖ 지원개요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해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중소·중견기업과 일대일로 매칭하여 심층적인 법률자문을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사전예방 : 중소·중견기업 기술 보호
 - 계약서 작성, 기술보호 관련 서류작성 지원 등
- 사후구제 : 기술유출·분쟁대응 관련 법률 자문
 - 법률 대응방향 제시 및 분쟁·소송·행정심판 등 해결방안 마련 등
- 비용 : 무료
- 지원규모 : 200개사 내외(예산 소진 시까지)

전문가 매칭	지원시간	지원기간	기업부담금
법무지원단 전문가 Pool 내에서 매칭	기업당 최대 30시간 (750만원 수준)	최대 6개월	무료

❖ 지원절차

- 이메일 접수 : ultari@win-win.or.kr

❖ 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홈페이지 : <https://www.win-win.or.kr>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 상담·자문

❖ 지원개요

- 기술보호 전문가가 중소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보안수준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기술유출 등 피해예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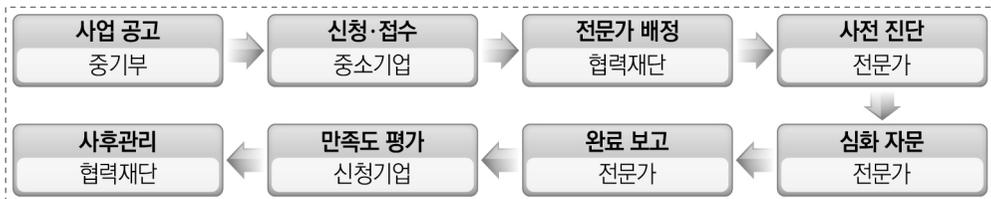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지원내용

- (상담·신고센터) 보안, 법률, 지원제도, 기술유출 신고 등을 전문가(변호사, 변리사, 보안 전문가)와 유선 및 방문상담 할 수 있도록 지원
- (현장자문) 기업이 희망하는 기술보호전문가를 기업현장에 파견하여 최대 10일 이내 보안진단, 교육, 보안 개선방안 지원
 - * 법률자문은 3일 이내로 하되, 심층자문이 필요한 경우 법무지원단 사업으로 연계
- (비용) 무료
- (규모) 1,650개사 내외

❖ 지원절차



❖ 문의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 : www.ultari.go.kr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방문상담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4층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한국전기연구원

기술상용화지원

❖ 지원개요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적 애로해소 및 사업화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지원내용

- 총사업비 : 약 20억원 내외(인건비, 간접비 포함)
- 프로그램 구성

명 칭	지 원 내 용	지원 형태	과제 규모	과제 기간
기술 개발형 지원	- 중소·중견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이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	R&D + 기술이전	실소 요액	11개월 이내 원칙*
사업화 촉진형 지원	- KERI 보유기술 이전 후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을 추가 제공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지원 - 3년 이내 이전되었거나, 2개월 이내 이전 예정인 기술의 사업화 지원(중복지원 불가)	기술이전 + 기술지원		
문제 해결형 지원	-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현장 밀착형으로 지원 - 신기술·신제품 개발, 생산공정 개선, 설계, 성능 평가·개선, 신기술정보 제공 등 중소·중견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지원	기술지원	30백 만원 이내	6개월 이내
정부신기술 인증 지원	- 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해 NEP, NET, 조달우수, 녹색인증 등 정부인증 획득 지원	기술지원 + 컨설팅		

※ 필요 시 기술개발형 지원(1년)+사업화촉진형 지원(1년), 기술개발형 지원(2년), 사업화촉진형 지원(1년)+정부신기술인증 지원(6개월)과 같은 다년도 구성 허용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이메일과 우편 중 택1 하여 제안서 및 부속서류 제출
 - 이메일 : jskang@keri.re.kr
 - 우 편 : 641-120 경상남도 창원시 불모산길 10번길 12, 한국전기연구원 기술사업화부
중소기업지원실 제안서 접수 담당
- 부속서류 : 재무제표(4종),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문의

- 한국전기연구원 기술사업화부 중소기업지원실 : 055-280-1182 또는 jskang@keri.re.kr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지킴서비스

❖ 지원개요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지킴서비스(보안관제, 악성코드 탐지 등 24시/365일 모니터링)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지원내용

- 보안관제서비스
 -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24시간 실시간 이상징후 모니터링 및 대응,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 진단 및 취약점 분석, 보안사고 상황 전파 및 대응, 신규취약점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보안업데이트 권고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 기업 내부 자료의 유형별(USB, 메일, 메신저 등) 이동에 대한 탐지 및 분석, 이상징후 발생 시 상황 전파 및 대응, 기업 당 30User 라이선스 제공
- 악성코드·랜섬웨어 탐지서비스
 - 감염으로 인한 기술 유출 예방 및 암호화 방지 지원, 기업 당 15User 라이선스 제공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 접속 → 신청서 다운로드 → 내용 작성 후 인쇄 → 인감날인 → 스캔 후 이메일(monitor@kaits.or.kr)전송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05
-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02-3489-7050~3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 지원개요

- 방산수출 촉진을 위해 내수용으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무기체계*의 수출용 개조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 개발된 우수 무기체계의 신속한 개조/개량 및 업체 주도 연구개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무기체계분류 기준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14조 및 별표2에 따름

❖ 지원대상

- 대상 과제 : 수출용 개조를 위한 무기체계 연구개발로 아래 요건을 충족
 - 국내 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 정부가 주관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으로 체계 개발 중이거나 체계 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 대상 기업 :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 중 아래 요건 충족 기업
 - 해당 무기 체계의 국내조달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업체
 - 상기 업체와 무기체계 관련 하도급 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
 - 국내 계약 체결 실적은 없으나, 해당 무기체계의 체계 개발 업체
 - 국내 계약 체결 실적은 없으나, 방산업체로 추가 지정된 업체
 - 국내 계약 체결 실적은 없으나, 해당 무기체계의 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업〉

1. 주관기업 신청자격 및 신청 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2.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이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부채비율이 1,000% 이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3.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지원내용

구분	개발 기간·지원한도	정부지원	비고
보조금 지원	최대 3년 지원 3년 간 최대 100억 원	75% 이내	보조금과 방산육성자금 중 택1
방산육성자금	이자 차액 보전(지원한도 및 출연 비중 없음)		

금융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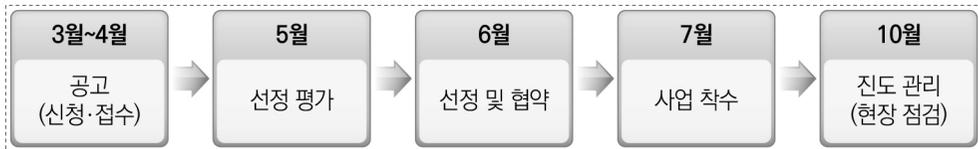
수출

기술혁신

기타

- 중소기업 우대(지원 비율 75%, 현금 부담 비율 10% 이상)
 - 대기업(지원비율 50%, 현금 부담 비율 15% 이상)
 - 중견기업(지원비율 60%, 현금 부담 비율 13% 이상)
 -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지원비율은 예산 사정에 따라 축소될 수 있으며, 사업 공고를 통해 최종 확인바랍니다.
- 개발 성공 시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중 택일하여 기술료 징수
 - 방위사업육성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30조

❖ 지원절차



❖ 문의

- 방위사업청 국제협력총괄 담당관 : 02-2079-6362
- 국방기술품질원 수출지원총괄팀 : 055-751-5743

대한상공회의소

스마트 마이스터

❖ 지원개요

- 대기업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 전문가(스마트 마이스터)를 파견하여 스마트 공장 순과정(계획-실행-운영) 지도 및 제조 노하우 전수

❖ 지원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 * 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선정된 기업 우선 지원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유흥, 향락업, 숙박, 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등 부적합 업종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대기업 출신 전문가(400명)을 선발하여 6개월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스마트 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기업에 3개월간 파견(800개사)
 - 스마트공장 도입애로를 현장에서 즉시 해결 (현장개선, 기술애로 해결, 구축 순과정 지도 등)
- 지원조건 : 마이스터 3개월 인건비의 90%(837만원) 지원

마이스터 인건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100%(930만원)	90%(837만원)	10%(93만원)

- 지원기간 : 마이스터 기업당 파견기간 3개월(주2일, 총 24일)
 - * 단, 파견기간 중 월 1일은 지역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교육 및 상담 등 실시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
 - 대한상의 중소기업제조혁신팀(www.sbmi.korcham.net)
 - * 단, 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신청하는 기업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서 마이스터 활용 체크로 신청 완료

❖ 문의

- 대한상공회의소 : 02-6050-3851, 3855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지원

❖ 지원개요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 센서 등 구입 지원 및 ICT를 접목한 생산현장 맞춤형 생산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 조선기자재 업체, 유턴기업, 광주형 일자리기업, 뿌리기업, 위기지역 소재기업, 일자리 안정 자금 수혜 기업, 노동시간 조기단축기업, 청년 친화형 산단,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지구 입주 기업, 소비재 수출기업, 사업재편 승인기업, 로봇 도입 관련 기업,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 정보보호 인증 기업, 스마트제조 표준 적용 기업, 여성기업, 군수품 제조기업은 선정시 가점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국제·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되는 기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지원내용

- (신규구축)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 지원
 -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고도화)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데이터 수집·저장 기능 등 포함)
 - * IoT, 5G, 빅데이터, AR·VR, 클라우드 기술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 (지원조건)
 - (정부지원) 신규구축 기업당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정부지원) 고도화 기업당 최대 1.5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상생형) 신규구축 최대 0.6억원, 총 사업비의 30% 이내
 - (상생형) 고도화 기업당 최대 0.9억원, 총 사업비의 30% 이내

❖ 지원절차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보급확산실 : 042-388-0855, 0853, 0861
- 상담센터 : 1644-1736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중소·중견기업 스마트화 역량강화

❖ 지원개요

-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중인 기업에 전문 컨설팅기관의 컨설팅 지원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성과를 제고

❖ 지원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 또는 구축 예정 중소·중견 제조기업
* 2020년도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사업 참여기업은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30억원(600개사)
- 지원내용 : 전문컨설팅 기관이 보유한 컨설팅 방법론 및 도구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과정 지도 및 현장애로 해결 지원
- 지원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중
기본 컨설팅(5일 기준)	최대 4개월, 400만원	80% 이내 (정부 50%, 지자체 30%)
심화 컨설팅(10일 기준)	최대 4개월, 800만원	
원포인트 멘토링	최대 100만원	100%(시범운영)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문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사업담당부서 : 042-388-0860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 지원 개요

- 지재권(IP)과 연구개발(R&D)을 연계한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여 중견·중소기업의 기술·시장 선점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지원 대상

- 연구조직을 보유한 국내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예비 중견기업

❖ 지원 내용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지재권전략전문가(전문위원)*와 지재권분석전문기관(협력기관)**이 팀을 구성하여 IP(특허·디자인·브랜드·서비스)종합전략 수립지원
 * R&D, IP, 디자인(브랜드)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공학박사, 변리사 등)로 구성
 ** 특허정보 분석기관, 제품디자인 개발기관, UX/UI 디자인 개발기관, 브랜드 개발기관 등

과제 유형	세부유형 지원기간	지원체계		지원내용	대상		
		전문위원 (1~2인)	협력기관 (1~3기관)		중견	중소	예비 중견
제품-서비스 융합형	제품-서비스 전략 (SPI, SBI) 28주(7월)	특허 · 디자인	특허 · 제품디자인 (브랜드) · UX/UI 디자인	제품관련 기술(특허 등)· 시장·경쟁사 분석을 통한 제품 특허·디자인(브랜드) 및 서비스 방법 특허· UX/UI디자인 개발 전략 지원	○	○	-
	서비스 전략(SI) 20주(5월)	특허 · 디자인	특허 · UX/UI 디자인	시장·사용자·경쟁사 IP분석 등을 통하여 서비스 관련 UX/UI 디자인 개발 및 IP 전략 지원	○	○	-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과제 유형	세부유형 지원기간	지원체계		지원내용	대상		
		전문위원 (1~2인)	협력기관 (1~3기관)		중견	중소	예비 중견
신제품 창출형	특허·디자인·브랜드 개발(TI) 28주(7월)	특허·디자인	특허·제품디자인·브랜드	제품에 대한 시장·디자인·기술(특허 등) 분석에 따른 토털 아이덴티티(TI)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특허·디자인·브랜드 융합 개발 전략 지원	○	○	-
	특허·디자인 개발(PI) 20주(5월)	특허·디자인	특허·제품디자인	제품 관련 IP 및 환경 분석에 기반한 품질·기능이 향상된 디자인 개발 및 IP 융합 전략 지원	○	○	-
	특허·브랜드 개발(BI) 20주(5월)	특허·디자인	특허·브랜드	제품 관련 IP분석 기반 제품 품질 향상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브랜드 개발 및 IP 융합 전략 지원 *일부 과제는 중국특화 집중 지원	○	○	-
신제품 개발형	특허(기술) 개발 20주(5월)	특허	특허	특허·시장·경쟁사 분석 등을 통한 제품·기술 관련 R&D방향, 핵심특허 선제대응, 강한 특허 선점 및 포트폴리오 구축 등 종합 특허 전략 지원 *일부 과제는 중국특화 집중 지원	○	-	○

❖ 문의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융합성장팀 : 02-3287-4338, 4369, 4383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 창출지원

❖ 지원개요

- 국제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 기업·기관에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제공하여 고부가 가치 표준특허 창출을 촉진

❖ 지원대상

- 표준특허 확보를 목표로 R&D·표준화 수행 중인 중소·중견기업, 대학(병원 포함), 공사 및 공공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소, 기타 정부 R&D 연구단 등)

과제 유형		지원 대상 과제
초기기업 (인큐베이팅)		● 국제표준 연관 기술을 개발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표준특허 제반 역량을 신속히 확보하여 표준특허 강소기업으로 도약하고자 수행하는 과제
일반 기업· 기관	R&D	● 국제표준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민간 R&D 과제
	표준화	● 정부 표준화 사업* 과제 *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사업(과기정통부),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산업부)
유망기관 (전문기관 육성)		● 국제표준화 역량*을 보유한 표준특허 유망기관의 표준개발 과제** * 표준전문기(의장단 또는 표준 활동 5년 이상 경험) 또는 표준·선언특허 보유 ** 과기정통부·산업부(국표원)과 특허청이 공동 선정한 과제를 포함함

❖ 지원 규모

- 총 35개 과제, 지원기관은 과제 유형별 일정 금액을 부담

과제유형		'20년 과제수	지원기간	정부 지원금*	지원기관 부담금(30%)	
					현금	현물**
초기기업		0개	9개월	77백만원	11백만원	22백만원
일반 기업·기관	R&D	00개		56백만원	8백만원	16백만원
	표준화	00개		35백만원	5백만원	10백만원
유망기관	1년차***	0개	6개월	28백만원	4백만원	8백만원
	2년차****	-	11개월	42백만원	6백만원	12백만원

* 과제에 직접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표준특허 창출지원을 위한 컨설팅 비용 등으로 사용

** 현물은 지원기관의 전용공간 제공, 참여연구원의 전략회의 참석 등을 의미

*** 1년차 과제는 부처 공동 선정 과제 접수 후 별도 선정절차를 거쳐 지원 예정('20년 4월 중)

**** 2년차부터는 '20년 선정된 과제를 '21년에 연속하여 지원 예정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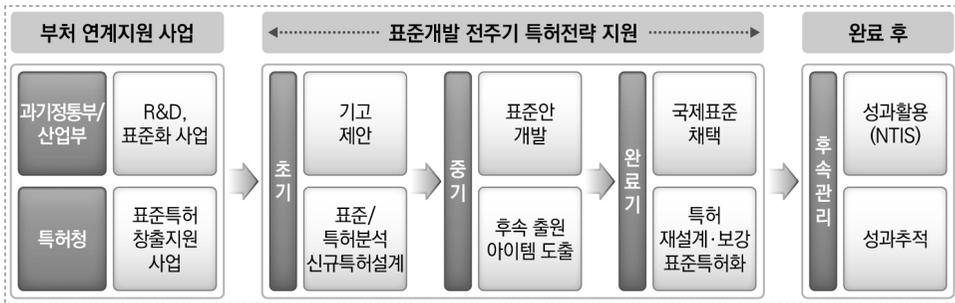
기타

❖ 지원내용

- 전담팀*이 특허·표준을 분석하여 표준특허 확보 가능한 방향으로 연구 수행, 특허 창출, 표준안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 제공

* 표준특허 전문가(PM), 표준특허 전문변리사, 표준 전문가로 구성

- 2020년 신설 과제 - 유망 기관(전문기관 육성)
 - (초 기) 신규특허 설계 및 신속 확보, 특허 기반의 기고아이템 구체화
 - (중 기) 표준제안 추가 이슈 발굴 및 후속 출원 아이템 도출
 - (완료기) 표준 변동을 고려한 특허 재설계·보강 전략 수립



❖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 042-481-8499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센터 : 02-3475-8553

방위사업청

방산 중소·중견기업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 지원개요

- 방산관련 중소·중견기업의 경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방산기술의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합보안장비 임차료를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기관”
 - 「방위사업법」 제34조에 의한 “방산물자” 및 제35조에 의한 “방산업체” 지정업체
 - “대상기관”,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 지정업체의 협력업체
 - * 군수품 조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이후 순차적으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 지원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 문란자*로 관리 중인 기업
 - * 금융질서문란자 : 신용정보관리규약(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 타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은 이력이 존재하는 기업

❖ 지원내용

- 방산관련 중소·중견기업 대상 보안관제를 위한 통합보안장비의 임차료 지원(총 12개월분, 최대 250만원 한도)
- 사업기간 : 협약을 체결한 월로부터 12개월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 지원절차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security2018@korea.kr
-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합보안장비 임차 계약서 등

❖ 문의

- 방위사업청 기술보호과 : 02-2079-6974, security2018@korea.kr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확인제도

❖ 확인개요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중견기업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서류이며, 중견기업 지원사업 참여시 활용 가능

❖ 확인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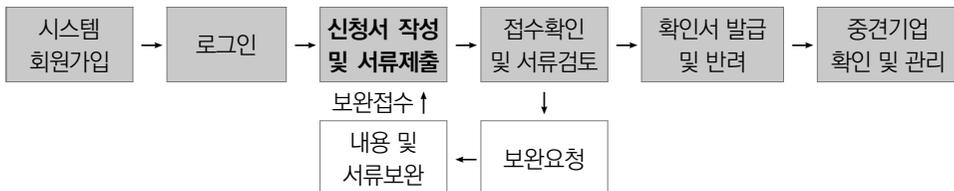
〈중견기업 제외대상〉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있는 기업 포함)
-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⑤ 「통계법」제22조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⑥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⑦ 기업 또는 법인(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외국법인 포함)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3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 ⑧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코드 84에 해당하는 기업(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 ※ 단,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견기업 제외대상>이 아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최대출자자인 기업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 최대출자자인 기업

❖ 확인절차

- 중견기업 정보마당(www.mme.or.kr)을 통해 접수 및 발급 가능



❖ 제출서류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 신청기업(일반) 제출서류

신청기업(일반) 제출서류	
1. 직전 사업연도 말 주주명부	
2. 직전 3개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신청기업이 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관계기업(신청기업의 지배·국내 종속기업)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제출바랍니다.	

● 신청기업(창업·분할·합병 등의 경우) 제출서류

신청기업(창업·분할·합병 등의 경우) 제출서류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1. 창업·분할·합병 발생 당시 주주명부	1. 창업·분할·합병 발생 당시 주주명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주주명부 및 감사보고서	2. 신청일 당시 주주명부
3.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 법인등기부 등본
4. 발생일부터 신청일까지의 월별 매출액 증빙 서류(손익계산서 등)	4. 발생일부터 신청일까지의 월별 매출액 증빙 서류(손익계산서 등)
5. 분할보고서(해당 기업만 제출)	5. 분할보고서(해당 기업만 제출)
신청기업이 창업·분할·합병 등의 경우이면서, 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관계기업(신청기업의 지배·국내 종속기업)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제출바랍니다.	

● 관계기업(직·간접 지분관계가 30% 이상인 국내외 지배기업·국내 종속기업) 제출서류

관계기업 제출서류	
관계기업(직·간접 지분관계가 30% 이상인 국내 지배·국내 종속기업)	
1. 직전 사업연도 말 주주명부	
2. 직전 3개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관계기업(직·간접 지분관계가 30% 이상인 국외 지배기업)	
1. 직전 사업연도 말 최상위 지배기업까지 지분관계 증빙 (예시) 지분구조도, 주주명부(List of Shareholders), List of Subsidiaries 등	
2. 최상위 지배기업까지 각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개별 자산규모(Total Assets) 증빙 (예시) 연간보고서(Annual Report), Financial Report, Balanced Sheet, 유가증권보고서(일본) 등	

❖ 유효기간

- 직전사업연도 결산월말 기준 3개월 이후부터 1년간의 유효기간 부여
(예) 2019년 12월 결산 → 2020년 4월 1일 ~ 2021년 3월 31일
- 유효기간이 만료된 확인서의 발급 불가하므로 유효기간 내 반드시 접수

❖ 문의

- 시스템 : 중견기업 정보마당(www.mme.or.kr)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02-3275-2986, 2994, 0107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 지원개요

-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견·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해주는 제도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 45년(공고일 기준) 이상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업력 45년 이상(공고일 기준) 이면서, 평균 매출액 등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

◇ 업력 산정기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일' 기준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 요건 충족 시 개인사업자 업력 인정

- 아래의 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은 대분류, 그 외 업종은 중분류임)
- 건설업(F), 부동산업(L68), 금융업(K64), 보험 및 연금업(K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K66)
- 중견기업의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치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직전 사업연도(명문장수기업 확인 계획 공고일 기준) 매출액이 직전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 ② 상호제한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해당 기업의 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 확인 시 우대사항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국문, 영문) 및 현판제작 부착
-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 정부포상 등 우선추천 및 방송·신문매체에 기업 홍보
- 중기부의 수출, 인력, 정책자금 등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 그 외 국가가 인정한 희소성 있는 명예로서 사회적 존경, 기업의대외 인지도 상승, 우수 인력 유입촉진, 매출 증대 등 부수적 효과 기대

❖ 지원절차



- 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에 우편제출 또는 방문접수
 - 주소 :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 지원센터(3층)
-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에 우편제출 또는 방문접수
 - 주소 :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 (대흥동, 상장회사회관) 한국중견기업 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5층)

❖ 문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 : 02-3275-0175, 3098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사업전환 지원

❖ 지원개요

- 사업전환을 하고자 하는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을 통해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비상장 중견기업 중 사업전환 희망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

❖ 신청분야

분 야	내 용
업종전환	기존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업종추가	기존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 추가된 업종의 사업비중이 다음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① 사업 시작 후 3년 이내에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이 되거나 ② 추가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총근로자 수의 30%이상이 되는 경우

❖ 지원내용

분 야	내 용
주식교환	자기주식 취득 가능, 반대주주 주식매수 청구기한 단축 등
합 병	채권자 이익제기 기간 단축, 주총 소집 통지기간 단축 등
분할 및 영업양수도	분할 및 분할합병 절차 간소화
사전컨설팅	사업전환 희망 기업 대상 사업전환 계획 진단 및 분석, 대안 제시 등 수립 전반에 대한 컨설팅 지원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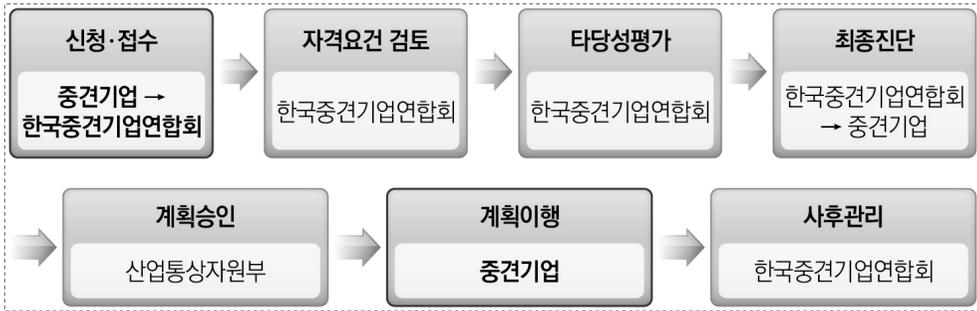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 지원절차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 3. 11.(수) ~ 12. 31.(금) (기간 중 상시)
- 신청서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 - 공지사항 - 해당 공고 확인
- 접수기관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접수
 - 주 소 : (04151)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79, 4층 (대흥동, 상장회사회관) 사업2팀
 - 이메일 : kimjh@fomek.or.kr
- * 우편송부시 등기우편으로 해야하며, 12.31.(금) 등기소인까지 유효함

❖ 문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업2팀 : 02-3275-0102

특허청

중견기업 특허 출원료 등의 감면제도

❖ 지원개요

-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 등을 일부 감면

❖ 지원대상

- 중견기업

❖ 지원내용

감면대상자	감면율	감면대상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이 계약에 따라 공동 연구·개발 통해 공동으로 특허(실용신안) 출원하는 경우 <p>*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p>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 전담조직은 적극적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료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견기업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4~9년분 등록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및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6년분 등록료

❖ 문의

-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 042-481-5083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지정제도

❖ 지원개요

-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여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초기 중견기업의 판로를 지원

❖ 지원대상

-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
 -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 인증제품(GS)
 -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매출액 규모, 중견기업이 된 이후의 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제품도 대상

❖ 지원내용

- 우수제품에 대한 지원
 - * 우수제품 전시회 참여
 - * 우수제품제도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제품목록 제작·배포
 - * 우수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개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지원사항
 -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우수조달물품클럽 운영·관리 등
- 계약을 통한 판로지원
 - *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 지정된 우수제품은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에 공급
 -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및 수의계약 법적근거 마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16.1.12. 개정)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우수제품 포함)의 구매목표비율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이상으로 하여야 함(의무사항)

* 공공기관에 우선구매요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홍보를 통한 판로지원

* 전시회 개최 등 홍보지원

- 코리아나라장터엑스포 등 우수제품 전시회 개최

- 우수제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제작·운영

* 우수제품 테마숍을 통한 홍보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우수조달물품클럽” 운영

* 우수제품의 브랜드 화

- 우수제품에 대한 이미지형성 및 우수제품을 브랜드화하여 육성

- BI(Brand Identity): 우수제품 지정마크

❖ 문의

-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 042-724-7283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그린크레디트

❖ 지원개요

- 자발적 감축사업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비규제 대상)이 대기업(규제 대상)의 지원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 투자분에 해당하는 만큼 상쇄배출권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주체 : 온실가스 감축 규제대상 기업(대기업 등)과 규제 비대상 기업(중소·중견기업 등)으로 구성된 참여기업
 - 외부사업 등록 컨설팅, 감축시설 구축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업을 포함하여 사업 신청

❖ 지원내용

- 그린크레디트 사업 : 온실가스 감축 규제대상 기업(대기업 등)이 온실가스 감축 및 상생 협력을 목적으로 조직경계 외부의 사업시행자(중소·중견기업 등)에게 기술·자금 등을 지원하고, 배출시설 또는 배출 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하는 사업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50%(최대 7,000만원) 이내
 - 사업비 구성 : 컨설팅 비용, 사업에 따른 감축설비(계측기, 모니터링 시스템 등 부대설비 포함)의 설치 및 구축 비용 등

❖ 지원절차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제출
 - 온라인 : e나라도움(www.gosims.go.kr)
 - 제출처 :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23,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에너지실
-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대표번호 : 052-920-0111~0114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지원

❖ 지원개요

- 에너지 다소비 사업체의 지속적인 에너지효율 개선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위해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스마트에너지공장 보급확산 촉진

❖ 지원대상

- 산업·발전부문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에너지경영 관련 컨설팅, 계측·제어·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EnMS 기반의 스마트 에너지공장 인프라 구축 지원
- 사업 총 투자비의 70%(중소기업) 40%(중견기업), 최대 1.5억원 이내 지원

❖ 신청절차

- (사업신청)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에서 사업신청
- (서류제출) e나라도움에서 사업신청서 작성·제출 후, 사업계획서 등 관련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대표번호 : 052-920-0111~0114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 지원개요

- 에너지절약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에너지절약형시설을 투자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융자금

❖ 지원대상

-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 대기업 ESCO(중소·중견 사업자를 에너지사용자로 하는 경우)

❖ 지원내용

세부사업명		지원 규모 (억원)	당해연도 동일투자사업장당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이자율
ESCO투자사업		3400	150억원 이내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단열 개·보수사업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절약시설 설치사업	절약시설설치사업		150억원 이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생산시설설치사업		50억원 이내	
	수요관리설비설치사업		50억원 이내	
장기사용 열수송시설개체사업		100	100억원 이내	
합계		3,500		

* 이자율 :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요령」에 따름

❖ 지원절차

- 해당사업에 대하여 공단의 자금추천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대출승인 신청(신용조사서류, 담보서류 등을 제출)하여 대출 진행

❖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대표번호 : 052-920-0114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

❖ 지원개요

- 에너지효율시장 창출을 선도하기 위하여 전력수요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설비·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절감량 성과계량을 지원

❖ 지원대상

-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및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및 비영리 법인

❖ 지원내용

- (지원 품목) 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중 전력수요절감이 예상되는 지정설비로서 2종 이상의 복수품목 지원
- (지원 조건) 설비개체에 따른 피크감축량이 $\Delta 5\text{kW}$ 이상인 사업으로 전기절감 예상액에 따른 투자 회수기간이 3년 이상인 효율향상설비

❖ 지원절차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nrbpm.kemco.or.kr)
 - 제출처 :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

❖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대표번호 : 052-920-0111~0114

금
용

고
용

수
출

기
술
혁
신

기
타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 감축 정책지원

❖ 지원개요

-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기 위해, 폐기물, 공공·기타 부문 참여 지자체·중소기업·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배출권거래제 폐기물, 공공·기타 부문 할당대상업체 중 지자체·중소기업·중견기업
 - (지 자 체) 「지방자치법」제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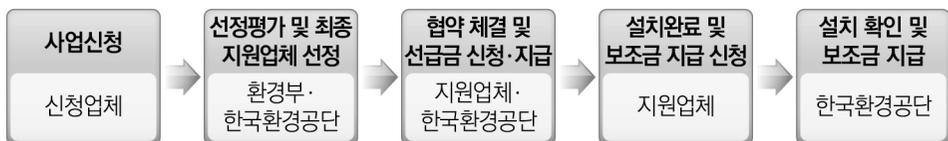
- 해당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 ※ 단,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
- 지원비율 : 설비 투자비의 50% 이내(사업장별 최대 3억원)

〈예시〉

설비투자비	보조금	자부담	비고
3억원	1억 5천만원	1억 5천만원	지원비율 한도(50%) 적용
7억원	3억원	4억원	지원한도(3억원/사업장) 적용

❖ 지원절차

- 중소·중견기업



❖ 문의

-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 배출권관리처 배출권총괄팀 : 032-590-5616

한국에너지공단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 지원개요

- 기후변화 협약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에너지 규제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참여 사업장에 대응역량향상 컨설팅을 지원

❖ 지원대상

- 산업·발전 부문 중소·중견 규모 목표관리제 또는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컨설팅 비용 전액 국가 보조(100%)
- 온실가스감축 및 제도대응 컨설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역량 향상
 - 사업장별 목표관리제·배출권거래제 제도 대응을 위한 감축아이템 발굴
 - 감축기술 적용방안 수립 및 감축수단별 활용가능 정부지원제도 연계 서비스 제공
 - 사업장 담당자 Man-to-Man 교육 실시
 - 온실가스배출량 산정 및 배출 할당량 신청 대응전략 수립
 - 중장기 예상배출량 도출 및 배출권거래제 관련 Tool 제공 등
 - 명세서, 이행계획서, 모니터링계획서 등 행정업무 교육 및 매뉴얼 제공
 - NGMS(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교육 및 사용자 매뉴얼 제공

❖ 지원절차

- 신청 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제출
 - 접수처 :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23(우정동)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 신청 서류 : 신청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대표번호 : 052-920-0111~0114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제도

❖ 지원개요

- 직무발명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보유하고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을 실시한 중소·중견기업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지원내용

- 우선심사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 4~6년차 등록료 일부감면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4~6년차 등록료에 대해 추가 20% 감면
- 인증기업 지원시책(정부지원사업에 대한 가점 부여, 1점~5점)
 - (특허청)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첨단부품·소재 IP-R&D 연계전략지원사업
 -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 공정·품질기술개발,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제품서비스기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 R&D역량 제고
 - (과기부) 글로벌 SW전문기업 육성사업

❖ 지원절차



- 분기별 1회, 연4회
- 인증기준
 - 평가항목 : 직무발명 보상규정(30점), 보상실적(40점), 합리적운용(30점)
 - 인증기준 : 심의위원회 평가점수 70점 이상
 -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

❖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 02-3459-2847, 2793
-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 042-481-5437

금융

고용

수출

기술혁신

기타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 지원개요

-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계획하거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보상 규정 마련 및 운영상의 애로 해소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직무발명제도 도입 예정, 규정 제정 중이거나 곧 시행 예정 기업
 - 직무발명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 등

❖ 지원내용

- (기초 컨설팅) 기업의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토대로 유사 기업 군을 선별하여 3~5개 기업 그룹 컨설팅
- (심화 컨설팅) 기초 컨설팅 기업 대상 요청기업에 한해 1:1 심화 상담을 통한 문제 해결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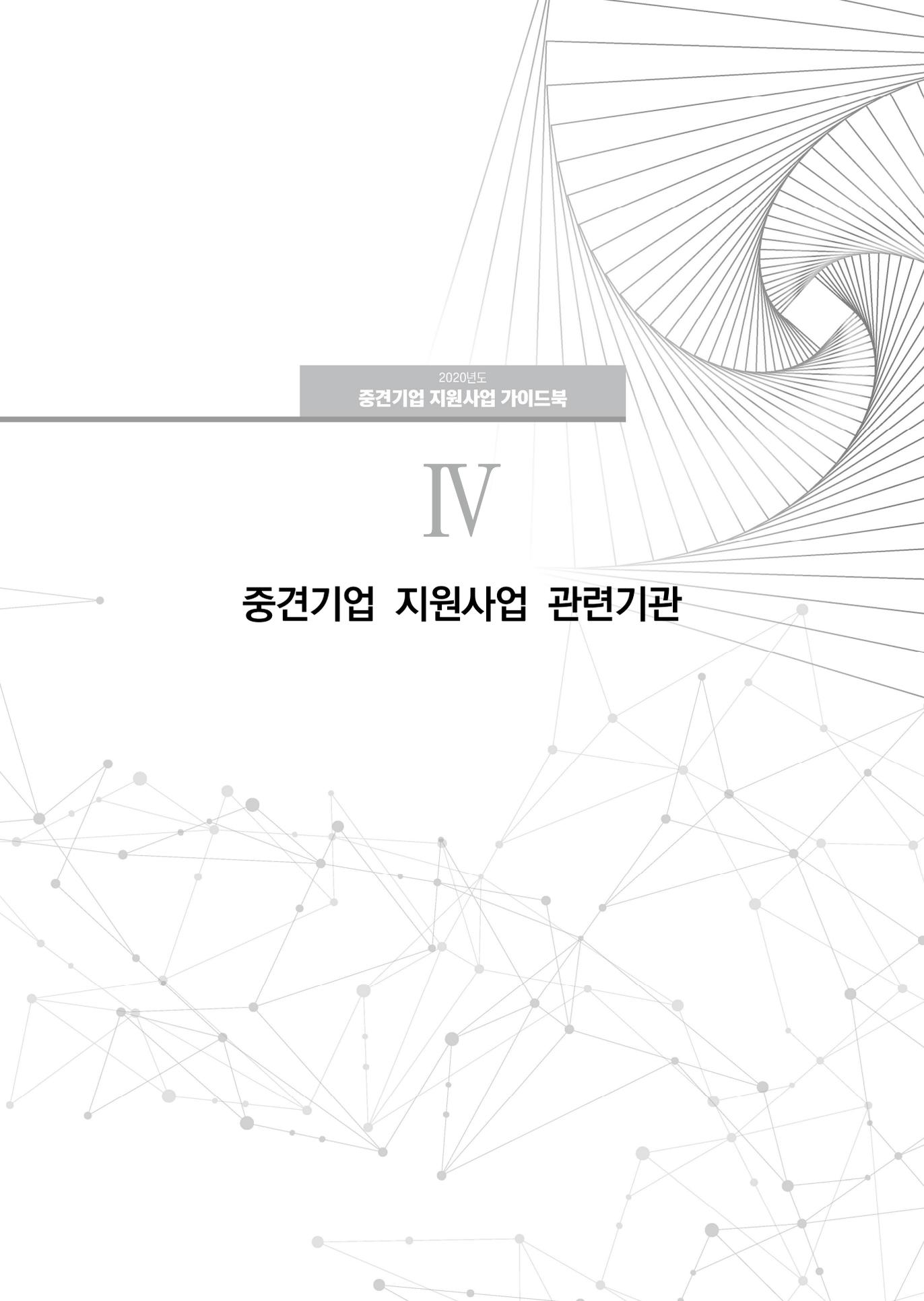
❖ 지원절차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운영 절차(수시)〉



❖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문화확산실 : 02-3459-2847, 2793
-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 042-481-5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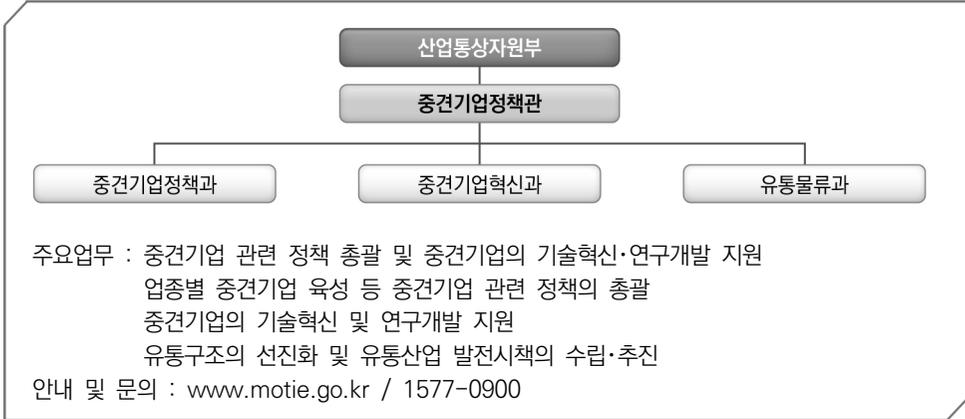


2020년도
중견기업 지원사업 가이드북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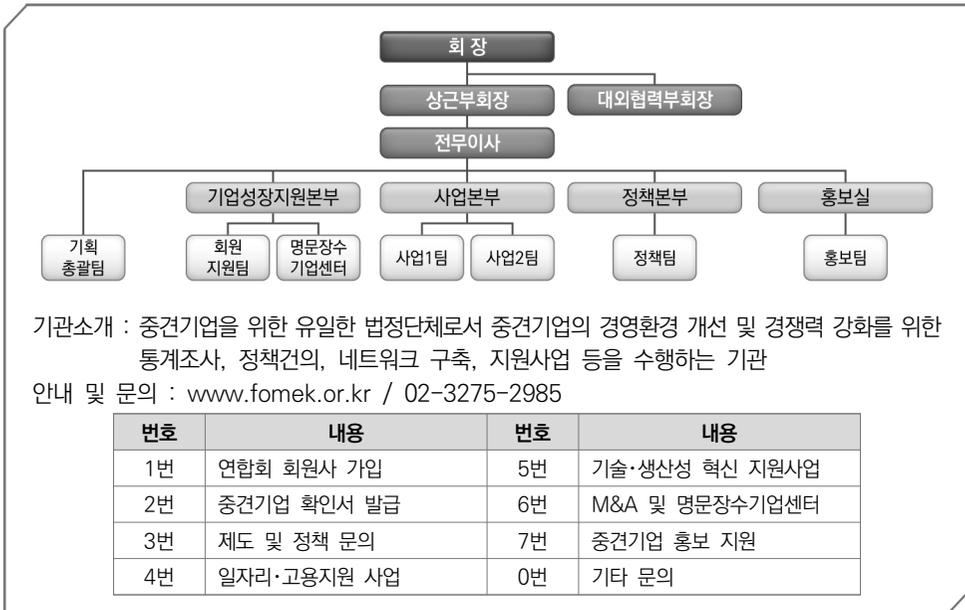
중견기업 지원사업 관련기관

1. 산업통상자원부



2. 중견기업 전문기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관소개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글로벌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무역투자진흥기관
안내 및 문의 : www.kotra.or.kr / 1600-7119

❖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기관소개 : 무역·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보험 및 신용보증 등의 제도를 수행하는 기관
안내 및 문의 : www.ksure.or.kr / 1588-3884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관소개 : 산업기술혁신 촉진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
안내 및 문의 : www.kiat.or.kr/ 02-6009-3000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기관소개 :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영 솔루션을 제공하고, 디자인 전문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기관
안내 및 문의 : www.kidp.or.kr / 031-780-2114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관소개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정보화를 통한 경영혁신을 선도하는 지원기관
안내 및 문의 : www.tipa.or.kr / 1357 또는 042-388-0100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기관소개 :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정책자금 융자, 인력양성 사업지원 등 원스톱 종합지원기관
안내 및 문의 : www.kosmes.or.kr / 1357

2020년도 중견기업 지원사업 가이드북

발행일 초판 2020년 5월
2쇄 2020년 10월

발행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T. 044-203-4367)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업본부 사업2팀
(T. 02-3275-2994 E. shin@fomek.or.kr)

인쇄 경성문화사
(T. 02-786-2999)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경제단체

FOM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의 성장 협력파트너



국내유일
중견기업
법정단체

1992년 설립

중견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우리 경제의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중견기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

2014년 법정단체로 격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7조에 근거, 법정단체로 전환 ('14.7.22.)

중견기업
권익을
대변

경제5단체 위상, 중견기업을 대표

명실공히 경제5단체로 자리매김, 국회·정부 주요회의, 대통령 수행 경제사절단, 국민초청 행사 등 중견기업을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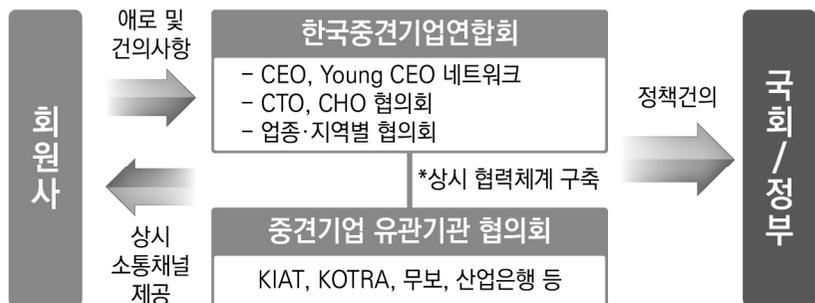
*경제5단체: 중견련,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경총, 무역협회

- 경제단체협의회 상임운영위원(경제5단체)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용자 위원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위원
-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민간위원
- 고용보험위원회,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등

국내유일
경영환경
개선

중견기업 성장걸림돌 규제 발굴/개선, 국회/정부 대응

- 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법·제도를 발굴하고 개선 추진
- 국회 간담회, 정부부처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 정책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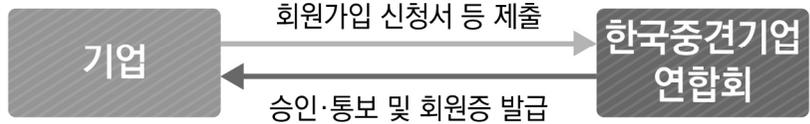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경제단체

FOM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가입 안내



회원가입 절차



구비서류: 회원가입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이력서, 회사 소개서

연회비 안내

구분	금액(만원)
정회원	300
준회원	150
특별회원	협의
신규회원 가입비(공통)	50

회원가입 문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기업성장지원본부 회원지원팀

T. 02-3275-3094, 3091

E. lim0322@fomek.or.kr

※ 상기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⑥ 6호선 대흥역 3번출구에서 도보 약 5분

⑤ ⑥ 경의중앙 공랑 5·6·경의중앙선·공랑철도 공덕역 1번출구에서 도보 약 10분



버스

지선 7016, 7613

간선 110B, 173, 604, 740

마을 마포10, 마포11, 마포12

주소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 (대흥동, 상장회사회관)

전화번호

02-3275-2985

팩스번호

02-3275-2989, 2980

2020년도
중견기업 지원사업 가이드북